

2024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PART **I**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7

PART **II**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11

PART **III** 학교보건활동 지원

1.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추진 및 평가 15
2. 보건교육 내실화 16
3. 학교보건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18

PART **IV** 학생건강관리 강화

1. 요양호 학생 관리..... 21
2.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25
3.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33
4.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38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체계 강화..... 43

PART **V** 학교보건 보고사항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56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56
3.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57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60
5.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61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62
7.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63
8.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64

PART **VI**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1.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69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71
3. 2024년 학생건강검진 비용	72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73
5.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74
6.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75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76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77
9.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78
10. 학생건강기록부	79
11.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81
12.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82
13.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안)	84

PART **VII** 기타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

- 1. 2024 보건교육 기본 계획(안)..... 91
- 2. 2024 비만 예방교육 기본 및 세부 계획(안)..... 98
- 3. 2024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안)..... 112
- 4. 2024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안)..... 118
- 5. 2024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안)..... 124
- 6. 202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안)..... 137

PART **VIII**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예시안)

- 1. 보건교육 계획(초·중·고)..... 159
- 2. 요양호학생 관리 계획..... 205
- 3. 학교 응급상황 관리 계획..... 208
-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계획..... 219
- 5. 보건실 운영 계획..... 224
- 6.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227
- 7. 학생 건강검사 계획..... 239
- 8.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255

I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

3대 역점과제



II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II.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



보건교육의 질 관리

- ▶ **보건교육 내실화**
 - 자율장학 활동 강화
 - 학교보건 인턴강사 운영
 - 학교보건법 및 보건교육과정 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보건교과 연구회 운영
 - 흡연예방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 ▶ **건강증진 학교 운영**
- ▶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
 - 보건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

건강생활 실천 확산

-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 유공자 표창
- ▶ **구강관리 강화**
 - 구강보건실 운영
 - 불소용액 양치사업 지원
 - 구강관리 유공자 표창
- ▶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보건교육 강화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결핵 예방사업
 - 취학 전 예방접종 관리
- ▶ **요양호 학생 관리**
 - 희귀·난치병 학생 지원
 - 당뇨 및 알레르기 학생 관리 지원

예방중심 건강관리

- ▶ **학생 건강검사 철저**
 - 표본학교 지정·운영
 - 별도검사 실시
 - 학생 건강검사 실시
- ▶ **학생 마약·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학교 흡연예방사업 운영
 - 학생 금연학교 운영
 - 약물(마약류 포함) 오·남용 예방 교육
 - 유공자 표창
- ▶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강화**
 -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 ▶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지원
 -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 발굴
 - 교직원 연수 지원
 - 소아당뇨 등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 지원체계 구축

III

학교보건활동 지원

1.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추진 및 평가
2. 보건교육 내실화
3. 학교보건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01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추진 및 평가

기본방침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하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되도록 수립·추진

주요 업무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은 형식적·전시성의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내용 수립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월간·주간계획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
-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보건실 운영 내용 및 게시판 운영
- 학기 중에 시행한 사업은 학년 말에 평가하고 새 학년도 시작 전에 계획 수립
-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있어 어느 한 분야의 집중 관리만으로는 정책 추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바, 보건교육 및 건강검사 등의 기본적인 학생건강관리 정책 등이 조화롭게 추진
- 학생건강증진 관련 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관리수준 향상

평가

- 학교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성취기준과 대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차기 계획 수립의 근거로 삼음
- 영역 : 학교보건운영 계획 수립, 보건교육, 보건실 관리, 학생 건강검사 등 학교보건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
- 월별, 분기별, 학기별, 학년 말 평가 영역을 구분하고 학년 말 평가에는 반드시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고려
- 평가환류 : 학교보건 영역의 평가 내용을 환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학교현장에 일반화하여 정보 공유

02

보건교육 내실화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 보건수업 중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 2022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등은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므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안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10351('23.11.27.), '2024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23.12.15.), '2024년 교육부 초·중등 분야 주요정책 안내'

주요 업무

-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

1.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2.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3.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15 개정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5.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교육청 개발 자료

-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1시간 기준 : 초(40분), 중(45분), 고(50분)

※ (중·고등학교)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요구도 증가를 고려하여 선택과목(보건)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교육청) 교육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대책 마련 및 이행

-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강화

*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지도 등에 장학지도를 할 수 있음. 장학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원의 전문성, 학교 조직 운영, 교육정책 수행 정도 등을 지도·평가하는 활동으로, 전국 학교의 교육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국가위임사무임

- 보건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수립·추진,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공유 확대,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필요시 보건 보조인력)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보건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적극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공유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저작권유익)

-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학생건강 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03

학교보건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기본방침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추진

현황

- 질병의 치료와 예방, 마약·음주·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건강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서의 학교 기능 필요성 대두
-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 업무분담 문제로 교직원 간의 갈등, 협력 미흡
- 학생 건강문제 다양한 변화에 따른 보건 수업방법 개선 요구

주요업무

- 학교보건은 보건교육, 학생 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활동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의 분담 및 관련 교직원 간의 협력체제 구축
- 36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38교), 학교보건 인턴강사 지원(130교) 등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의무제 실시
 -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이 지속적·계획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의무제 운영
 - 교원 연수 의무제는 2007학년도부터 전 교원에게 적용하며, 자율연수 및 자기개발과정의 직무연수를 제외한 전문성 향상 과정의 직무연수를 연간 최소 1학점(15시간)이상 이수(기간제 교사 포함)

IV

학생건강관리 강화

1. 요양호 학생 관리
2.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3.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4.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체계 강화

01

요양호 학생 관리

기본방침

- 학기 초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 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양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응급 상황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난치병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난치병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주요업무

- 학기 초(입학식, 개학식 직후) 전교생 건강실태조사 실시
- 전년도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증진계획 및 요양호 학생 계획 수립
- 1차 : 담임교사 면담을 통해 선별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보건실에 제출
건강실태조사서는 반드시 보호자 날인을 받도록 하며,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제출한 근거자료이므로 담임이 1년간 보관
- 2차 : 보건교사는 제출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전체를 상담한 후 선별하여 “요양호 학생 명단” 작성 후 최종 결재권자 결재
- 전체 학교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양호 학생 명단 배부 및 학생 주의 사항, 유의 관찰방법, 교사 지도 조언 등 연수 실시로 건강이상 학생 보호 철저
※ 주의 : 요양호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대상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지원방법 및 규모 : 보호자 신청,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에서 선정

○ 요양호 학생 기준

[기준]

- 계속적으로 보호 및 관찰을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
-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완치된 난치병, 수술로 인하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 경우는 제외

[예시]

- 약이나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어 병원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 현재 면역 억제제나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심혈관계 질환(심장병,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학생.
- 신장계통의 질환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 혹은 매일 투약 중인 학생.
- 간(肝)질환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B형간염 보균자.
- 만성 소모성 질환(결핵, 당뇨 등)으로 규칙적인 치료 및 투약 중인 학생.
- 뇌수술, 뇌전증(간질), 정서장애, 기타 심한 행동장애(틱장애)가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를 요하는 학생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831호, 2021. 12.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치료비 지원 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학생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

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 지원 절차)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 교육기회 균등 등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의사
2. 보건교사
3.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31호,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2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기본방침

- 마약·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현황

- 학생들의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관문

'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 ▲ 현재 음주율 : '22년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21년 대비 증가(남 2.6%p↑, 여 2.0%p↑)
- ▲ 현재 흡연율 : 일반담배는 '22년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21년과 유사, 전자담배는 액상형 남 3.7%→4.5%, 여 1.9%→2.2%, 껌연형 남 1.8%→3.2%, 여 0.8%→1.3% 으로 증가

-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제,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
-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23.10월)을 통해 학교를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시간 확대
 - ※ (이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합산 연 10시간 실시 → (개정) 전체 10시간 중 학교의 급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최소 시간 제시(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 과정 개설·운영('23.5월~)
-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관련 학교·가정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카드뉴스 등 제작·안내
- 학교에서 실시중인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조사 실시('23.9월)

(조사 대상) 전국 초·중·고 510교 11,541명(교원 533명 / 학생 11,008명)

(조사 결과) ① 교원 : 학교의 급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 필요, 담당 교원 대상 정례 교육과정 운영 필요,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은 연 2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 ② 학생 : 최근 마약류 문제가 청소년에게 매우 위협,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호기심 때문, 체험형 교육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다수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23.12.18.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예방 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

주요업무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강화

○ (학교·교육청) 모든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를 고려하여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수립

〈 교육시간 확대를 위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3.10.16) 〉

개정 전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 ※ 실시시간 :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교육청) 마약류 및 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 실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

나. 교육자료 개발·배포

○ (교육청)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하여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도 제고

○ (교육청)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교급별 예방교육 자료 활용*(연중) 및 가상현실 및 메타버스를 이용한 마약류 예방교육관 운영('23.12월~, 별도 안내 예정)을 각급 학교에 적극 안내

* 교육자료가 필요한 교원은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 가능

다. 담당교원 역량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원격)*’ 연수과정을 교육 담당 교원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실적 관리
 - *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청 연수원에 개설('23.5월~)
-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은 자격·직무연수 등에 마약류 예방교육 1개 과목 이상 개설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 별도 운영하되, 체험형 예방교육, 교과연계형 예방교육, 토론형 수업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 (교육청) 교사의 학생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 운영, 학생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 체험형 교재·교구 개발 활동 등을 적극 지원
- (교육부)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법무부 지원 법교육,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 지원 횟수 : ('22) 1,000회 → ('23) 5,300회 → ('24) 추후 안내 예정

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 (교육청)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학교 지원(보건소 등)
- (학교·교육청) 마약류와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청소년 재활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02-6929-319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게’ 접속 ▶ ① ‘다들어줄게’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 의한 오·남용 예방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마. 마약류 예방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

○ (교육청·교육부)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요령 안내 및 위험성 인식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학부모 교육 등 제공(연중)

○ (교육부)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계속)

바. 학교 금연구역 지정·운영

○ (학교)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교육청은 관내 흡연실 설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에게 학교 내에서 금연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12.7.) 제도개선 참조

○ (기타) 현재 유치원 주변 10미터까지의 금연구역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30미터까지 확대 적용 예정('24.8.17.)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개정('24.8.17. 시행)으로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구분	현재('24.8.16.까지)	향후('24.8.17.부터)
지정 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정 범위	•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정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에게 학교 내에서 금연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12.7.) 제도개선 참조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5호, 2019.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교육) 학교장은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각 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흡연 예방)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제10조(흡연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칙 등 학교규정에 흡연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금연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흡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하여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광주광역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소셜미디어 서비스,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2. 10.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976호, 2022. 10.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주거지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유해약물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94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기본방침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현황

- 「학교보건법」제14조의3(16.3.2. 개정, `16.9.3. 시행)에 따라 「학생 감염병예방 1차 종합대책(16~`20)」수립·추진
 -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대책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 마련·추진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6.12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교육자료 활용 교육 시행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환기 포함 학교시설 관리수칙 등
- 학생대상 예방교육 및 학부모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배포(17.3월)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농염)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유, 초·중·고 구분)와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용 리플릿(5개국어 번역본 포함)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수 형태(원격, 대면) 결정
-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역 관리 지침 마련·안내 실시
 - ※ 유치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20.3월 1판 마련 이후 23.8월 기준 10-1판 개정)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5월~)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학교 감염병 예방 2차 종합대책('24~'28)' 수립,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추가 개발 등

주요 업무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연수원에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운영

※ 모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 등을 연중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는 효율성을 고려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실시 예정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 1. 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교육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송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입소 전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기숙사 입소 예정 학생에 대한 결핵 검진은 무료이나, 일부 보건소는 사정에 따라 유료로 실시될 수 있으니, 사전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1.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63호, 2020. 11.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2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학생 및 교직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재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지원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63호, 202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학교의 장 주관으로 실시중인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단 발족('23.5월)
 - 학생 건강검진을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위탁 추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통합 추진
- 인스턴트 섭취율 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
 - ※ 연도별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 : ('17) 23.9% →('18) 25.0% →('19) 25.8% →('21) 30.8% →('22) 30.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검사 현황

항 목	검사 대상 (특수·각종학교 포함)	실시 기관	검사 시기
신체발달 상황검사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3월~7월
건강조사	초·중·고 전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학기초 (3월중)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료기관	연 중
별도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실시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초등학교 6학년	대한결핵협회	3월~10월

※ 시력검사는 필요 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학교 자율로 시행

가. 학교 건강검사 추진

-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3월~)〉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 (학교)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생 건강검진 기관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적 요인 여부 확인 철저

나.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철저

- (학교·교육청) 표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검진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 (교육청) 표본학교로 신규 선정된 학교 대상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 학교의 장 → 시도교육감 : 9월 30일까지, 시도교육감 → 교육부장관 : 10월 31일까지

다.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교)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검진결과 발견된 질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회신 요청 시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라.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적극 협조

-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 조정 등 추진예정(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 (교육청) 학생 건강검진 위탁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 예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협력 협조 요청
 -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24년 시범사업 추진 시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 제도개선 추진 관련 세부 일정 등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자료 제출, 예산 등) 필요

마.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 (학교·교육청)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요청
- (교육청)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

바. 실시 방법

-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 가) 검사 종목
 - (1) 신체발달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판정
 - (2) 건강조사 : 건강조사 설문지(학기초)
 - 나) 검사 시기 : 3월~7월 중
 - 다) 결과 처리
 - (1) 신체발달 : 담임교사는 검사결과를 건강기록부(NEIS포함)에 입력하고,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2) 건강조사 설문지 : 담임교사는 설문지로 조사하여 보건(담당)교사와 협의, 건강이상자(요양호 학생) 파악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활용

○ 건강검진

가)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나) 기관선정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 한다. 다만 2개 이상 선정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검진방법 :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할 수 있다.

라) 검진 결과 통보(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6항 별지 1호의5 서식, 1호의6 서식)

(1)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검진 후 30일 이내)

(가)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나)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2)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검진 후 30일 이내)

(가)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문진표 및 파일

(나)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및 파일

(다)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및 파일

○ 별도검사

- 별도검사는 학생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검사인 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 전원 검사 실시
- 유소견자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 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조기치료
- 소변검사는 성장기 아동의 소아 당뇨병 및 신장질환 등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한 성인기 질병 이환 방지
- 검사비는 해당 학생 전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지불하며 검사 결과는 학생 건강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
- 별도검사 시 출결 등의 사유로 미실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검사를 실시
- 결핵에 대한 중요성과 예방교육 실시하여 학생들의 결핵 이환율 감소 및 학생 스스로 질병예방은 물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X-선 검진 결과 유소견자(중증, 중등증, 경증)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하고, 의사진단 결과 결핵소유자(타인에 감염)는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진단보류자 재검사 실시

검사 항목	대상 학년 (특수·각종학교 포함)	검사기관	검사종류	검사비 (1인당)	검사 시기	비고
소변 검사	초 2, 3, 5, 6 / 중 2, 3 / 고 2, 3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당, 단백질, 잠혈, PH 간기능, 케톤체	1,450원	3~9월	
결핵 검사	고 2, 3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디지털 흉부 X-선 촬영	3,680원	3~9월	
구강 검사	초 2, 3, 5, 6 / 중 2, 3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4,620원	4~6월	특수 학교 무료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초등학교 6학년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척추측만증, 폐질환 등	6,960원	3~10월	교육청예산 지원

○ 건강검사의 기록

-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사(신체발달, 건강검진, 별도검사)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강기록부에 입력 및 관리 확인
- 건강검진관련 자료는 사본의 경우 1년 보관, 원본의 경우 5년 보관

○ 검사결과의 조치

-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 대책 강구
- 건강검진 결과 학생 대한 조치 :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 강구
- 교직원에 대한 조치 : 감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제1형 당뇨병*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2형 당뇨병은 주로 40대 이후 중년기 연령대에서 호발

현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학교보건법」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내 학생 “안전교육 담당부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시행
 -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에 따라 시행
- 학교장은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주요 업무

가.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 안 적극 반영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교육 여건 등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준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응급의료법」, 「119법」, 「어린이안전법」 등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 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히 검토 후 추진 필요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자의 범위〉

1. 모든 교직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 시·도교육감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실시

-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청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 교육 이수결과 관리

(1) '학교 내 자체 연수대장' 기록

(가) 심폐소생술 담당자는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이수현황을 자세히 기록·보관
(이수관련 대장, 기타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록관리)

(나) 관리대장 기록(예시)

번호	성명	연수 과정명	연수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연수시간
1	000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소방 안전본부	2000.0.0	2000.0.0	4

* 연수 기관명 : 교육을 실시(등록부 관리)한 기관명 작성

※ 참고로 제시된 학교 내 관리대장이며, 학교 내 기존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2) '학교 자체' 추진 연수

(가) 심폐소생술 연수 담당자는 등록부, 교육 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록·보관

(나) 등록부(예시)

2000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				
교육 일시/장소 : 2000. 0. 0. 14:00~17: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3) (외부기관 연수관리)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내용, 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사항 확인 후 자체보관

나.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제1형 당뇨 학생 재학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청) 학교별 제1형 당뇨 학생 현황(인원) 제출받아 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 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참고사항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응급환자 관리

○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피해의 최소화 및 학교 내 위기 관리 역량 강화

○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구성(예시)



○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역할

응급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또는 보건업무 담당교사 등 2인 이상 •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 담당
환자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따라 이송담당 교직원의 부재를 예상하여 2인 이상 • 담임교사(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건교사가 응급환자이송에 동행하는 경우, 보건실 관리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 보건실 대체인력은 보건실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숙지 대책반장이 명함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 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 응급상황 시 업무분장

구 분	환자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환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 황	의식장애 · 호흡곤란 · 약한맥박 · 심정지 · 다량출혈 · 개방골절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 · 단순골절 · 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 차 및 업무분담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파악 및 지시 · 보고 등 •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 대체 인력 배정 	
	보건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병원 이송 시 동행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담임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환자 병원 이송 협조 • 치료 후 보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 • 필요시 병원 이송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치료 후 보상 안내
	생활 지도 (학년)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 및 생활지도 •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 	
	이송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병원 이송 •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행정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 •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 응급사고 후 관리체계

- 응급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모든 사안은 『응급환자 기록지』 작성 · 보관
- ※ 기록은 추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 보관
- 담임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출장처리
- 입원 등으로 학생이 학교 복귀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치료 경과에 대해 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 응급상황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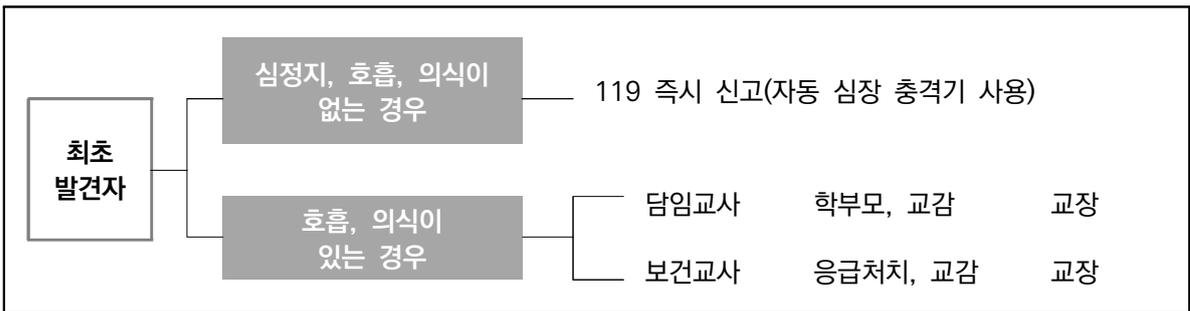
-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의식소실이 있을 경우 :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거나, 묻는 말에 횡설수설 하는 등 의식변화가 있거나,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구토 등을 보이는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얼굴이 창백해 있거나,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경우
 -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고, 외상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또는 안구 부상인 경우
 - 척추 등의 부상으로 신체 부위에 감각이상을 보이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이상인 경우
- ☞ 평소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사안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에 따라 신속조치

○ 응급증상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

1. 응급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⑦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⑧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⑨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에 준하는 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③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 혈관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⑥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

○ 응급환자 신고 및 보고체계



1) 최초 발견자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는 환자 상태가 심정지, 호흡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요청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
-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는 일차적으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건교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관리, 초기 상황을 보건교사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2)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

- 보건교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조치하고, 상태여부에 따라 신속한 응급구조 요청
- ※ 응급처치 연수 이수 교사는 보건교사를 도와 응급처치에 참여

3)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

- 담임교사는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학교나 이송병원으로 오도록 하며 계속적인 연락을 취함

4) 담임교사(보건교사)는 교감(학교장)에게 상황보고 후 현장 보조

- 담임교사(보건교사)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 교감에게 보고
- 교감은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할분담·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체계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을 지휘하고, 학교장에게 상황을 보고 및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부재에 따른 조치

- 담임교사는 응급현장의 보건교사를 보조하고, 보호자 및 학교담당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이송병원 및 환자상태 변화 등에 대해 상황 전달

5) 병원이송

- 구급차에 인계하여 환자 이송
- 담임교사(또는 학년부장교사)는 의료기관까지 동행하여 학부모에게 인계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행

※ 환자 상태가 위급한 경우 반드시 보건교사 동행

6) 병원이송까지의 과정 기록 및 보고

-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을 응급환자 기록지에 따라 자세히 기록·보관
- 사고발생 최초 발견교사(담임, 현장임장교사 등) 사안 발생 관련 내용 기록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0.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70호, 2020. 3.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 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
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
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
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5370호, 2020. 3.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 보고사항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3.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5.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7.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8.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2024년 학교보건 보고 목록

순번	보 고 사 항	지정 서식	보 고 기 한	제출 방법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서식1호	24.03.15.(금)	자료 집계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서식2호	24.05.17.(금)	
3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서식3호	24.04.19.(금)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서식4호	24.12.13.(금)	
5	표본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식 표본학교(44교)	NEIS	24.07.19.(금)	NEIS
6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 선택 현황	서식5호	24.12.31.(화)	자료 집계
7	학생건강증진 교육 추진 현황	서식6호	24.12.13.(금)	
8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서식7호	24.12.31.(화)	
9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서식8호	발생 시 유선통보 후 공문보고	

[서식 1호] 학교 ⇨ 교육청으로 공문 보고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승인완화요청사항 (해당란에 ○ ×)		초				중1		고1	
					1		4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개 기관선정	출장검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검진기관 승인 완화 요청 내용 및 사유(자세히 기술)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유를 자세히 기술												

* 출장검진 : 검진기관이 출장검진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검진하는 경우

* 출장검진 승인 요청 학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서식 2호] 학교 ⇨ 교육청으로 자료집계 보고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1. 일반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치과포함여부

2. '별도계약' 구강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비 고

* 일반검진의료기관에 구강검진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강검진기관 별도계약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4.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제1형 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교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제1형 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제1형 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4.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4.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

학년	반	이름	성별	KCD코드	항목분류	질환명(한글)

※ 희귀질환목록(질병관리청 분류기준) 참고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1. 초·중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구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구강검진만 실시한 학년의 내용 작성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2024년 보건교육 실시현황

학교급별	학교수	보건과목 선택학교수	보건교육 현황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 / 해당학년 학급수)						최소 1개학년 17차시 이상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특수									

※ 보건교육 현황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실시 학교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수 (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별 학교수(교)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합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기관명 : 교육청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초						
중						
고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0000년, 00월, 00일, (요일) 000학교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 ※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

※ 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 작성에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 *	보건소 신고일 * *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			
0000년, 00월, 00일	결핵	1	학생	2-1(1)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백일해	30	학생	1-1(10)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미정
0000년, 00월, 00일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0000년, 00월, 00일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 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 중간/최종)	조사자현황			조사결과	비고 (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0000년. 00월.00일	최초	학생	2-1	30	결핵: 0명 잠복결핵: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0명 잠복결핵: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0명 잠복결핵: 0명	지표환자 담임
0000년. 00월.00일	중간	학생	1-1 3-1 4-1	15 2 1	결핵(의심): 0명 잠복결핵: 0명	환자가 발생한 학급/ 환자의 형제
0000년. 00월.00일	최초	학생	2-3	24	결핵: 0명 잠복결핵: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VI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1.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3. 2024년 학생건강검진 비용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5.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6.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9.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10. 학생건강기록부
11.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12.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13.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안)

【참고자료 1】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㉔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전화번호: _____)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_____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 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참고자료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액소(고1 여학생)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참고자료 3]

2024년 학생건강검진 비용

★ 검진수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발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2024 1. 1. 시행) 참고

항목	초 1	초 4		중 1		고 1				
	일반	일반	비만	일반	비만	남		여		
						일반	비만	일반	비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형태(척추 측만증 검사) Adam's bending test, scoliometer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허리둘레(비만학생에 한함) - 혈압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병 리 검 사	소변(노단백, 뇨잠혈)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혈액(비만학생) - 혈당, AST, ALT -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	-	20,050	-	20,050	-	20,050	-	20,050
	혈색소(고1 여학생)	-	-	-	-	-	-	-	1,240	1,240
	결 핵 검 사 (촬 영)	14"×14"	-	-	-	9,520	9,520	9,520	9,520	9,520
		14"×17"	-	-	-	9,840	9,840	9,840	9,840	9,840
		CR* or DR	-	-	-	8,130	8,130	8,130	8,130	8,130
		Full PACS	-	-	-	9,080	9,080	9,080	9,080	9,080
Full PACS 판독의뢰		-	-	-	8,130	8,130	8,130	8,130	8,130	
계	14"×14"	18,210	18,210	38,260	27,730	47,780	27,730	47,780	28,970	49,020
	14"×17"				28,050	48,100	28,050	48,100	29,290	49,340
	CR or DR				26,340	46,390	26,340	46,390	27,580	47,630
	Full PACS				27,290	47,340	27,290	47,340	28,530	48,580
	Full PACS 판독의뢰				26,340	46,390	26,340	46,390	27,580	47,630

*결핵검사 : CR-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참고자료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2)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참고자료 5]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순환기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참고자료 6]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쉼쉼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순환기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소화기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그 밖의 증상	몸에 멍이 잘 든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퍼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허리·무릎 등이 쭈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추				중성지방	mg/dL	
눈	시력 측정	좌: 우: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mg/dL
	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간 세포 효소	AST	U/L
	귓 병			ALT	U/L	
콧 병				혈 색 소		g/dL
목 병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mm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mm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답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검진기관명	

[참고자료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 년 / 반 / 번 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치석 형성()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그 밖의 증상()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 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 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9]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 학교 보건실 사용 제한 의약품 수시 확인

- 연령대별 사용 제한 의약품 확인 후 투약
 - 예) 15세 미만 소아 제한 의약품 : 케토프로펜 및 케토프로펜리신 함유 외용제, 게보린(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
- 의약품 정보 확인 사이트 : 약품구분(전문, 일반), 부작용, 사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cm)												
몸무게(kg)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복오래달리기	회									
오래달리기-권기 (초5~고3)	1,000m(초)	분 : 초	공란							
	1,600m (중·고 / 남)	분 : 초	공란							
	1,200m (중·고 / 여)	분 : 초	공란							
스텝검사	PEI	공란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합유연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중·고)	회	공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약력	kg									
50m달리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지방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검진	검진일		공란				공란		
	검진기관		공란				공란		
구강검진	검진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사일									
검사명									
검사기관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1. 취학 전에 받은 아래의 예방접종 여부(O, X)를 써 주십시오.(1학년만 해당)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결핵 () 수두 () B형간염 : 1차() 2차() 3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1-2. 최근 1년간(2023)받은 예방접종 내용을 써 주십시오. (1학년 제외)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접종명		접종일자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최근 1년(2023)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장염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그 밖의 질환 등	최근 1년 이내 외상이나 사고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식품 알레르기				
눈·귀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약물 알레르기				
	눈병, 사시 등 안과질환				당뇨병				
피부	중이염 등 귀질환, 청력장애				결핵				
	아토피 피부병				경련이나 발작(경기)				
순환기계	그 밖의 피부질환			수술한 경험					
	심장질환			입원한 경험					
	빈혈			그 밖의 질환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탄산음료·햄버거·피자 또는 과자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이상 할 수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를 닦는다.					기분이 저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물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약물의 본래 목적과 달리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TV·인터넷	가정 및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 의 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기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건강조사 설문(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 최근 1년간(2023)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접종명		접종일자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학생이 최근 1년(2023)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최근 1년 이내 외상이나 사고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그 밖의 질환 등	식품 알레르기							
	눈·귀	시력장애		약물 알레르기							
		청력장애		당뇨병							
	그 밖의 귀 질환			결핵							
	피부	아토피 피부병		경련이나 발작(경기)							
		그 밖의 피부질환		수술한 경험							
	순환기계	심장질환		입원한 경험							
빈혈		그 밖의 질환									
고혈압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청량음료·햄버거·피자 또는 과자를 거의 매일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체중 조절을 위해 굶거나 약을 먹는다.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약물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하루일과를 잘 안배하여 자고나면 개운하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성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가정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성	지난 1년 동안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기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중·고등학교용 표본학교 건강조사표(B4용지)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행태 및 상태를 알아보고 보건교육에 활용하며, 사전 조사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본인이 작성 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경우가 있으면 해당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의학적 병력	예	아니오	진단받은 연도
선천성 심장질환			
간질			
당뇨병			
천식			
아토피 피부염			
주의력결핍장애			

2.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앓은 특별한 질환이나,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병력이 있으면 모두 써 주십시오. 문제에 따라서 학습 및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최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학교에서 응급으로 비치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4.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 종류	① 먹지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먹음
라면				
음료수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육류 (소, 돼지,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김치 제외)				

5.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표본학교 건강조사표 (중·고등학생용)

* 통계처리 되지 않음, 비실명 통계처리 대상임.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 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짹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나 구토를 자주 한다.		
정신 건강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귀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맴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지금까지 결핵성 질병 (예: 폐결핵, 늑막염, 경부림프 결 결핵 등)에 걸린 적이 있다. 최근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있다. 결핵 감염이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 결핵약을 먹은 적이 있다.		
결핵 관련	출생 이후에 가족과 동거인 중에서 결핵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		
	3년 이내에 반년이상 외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만 답변)그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까?		
예방 접종	지난 1년 이내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Td(파상풍) 접종을 받았다. (DTP가 아님)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성명		반	
성별		남 여		생년월일
7.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건강 생활 행동				
수면	하루 30분~1시간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이나 합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1 - 2일 정도 ③ 3 - 4일 정도 ④ 5일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및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쪼은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쪼은 편이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안전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가정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및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학교 생활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 생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약물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성	성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진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의사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학교 재량란)	표시: 학교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임.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교육	<p>보건교육 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교육과정 (성·약물오남용 예방·응급처치)교육 시수 반영 확인 • 보건교육 실시(1개 학년 이상 17차시) • 기타 학년의 비정규교육(필요시) • 교직원 및 학부모 보건교육 • 보건교육관련 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등 • 보건계시판 관리(온오프라인) <p>교과서 선정 업무 협조</p> <p>보건교육 자료의 확보 및 제작,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선택교과 (중학교 선택교과 및 고교학점제 운영 시) • 교과서 선정 • 교육계획, 평가계획 수립 후 연구부 자료 제출 • 필요시 학부모 공개수업 준비 • 보건교육 자료 제작 및 개발 • 선택교과 시 모든 학생 대상 생활기록부 작성(1500byte) • 창체(자율) 시 활동 주제, 특기사항 입력 <p>학생 보건 동아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 매주 동아리 활동 구상 및 운영 후 평가 • 축제 부스 프로그램 구상 및 운영 • 생활기록부 동아리 특기사항 입력(1500byte)
공통	보건실 관리	<p>보건실 방문환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학생 문진 및 건강사정 • 건강문제에 따른 의약품 투약 및 부작용 모니터링 • 보건실 내 안정실 이용 학생 증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활력징후 모니터링 • 병원 의뢰 여부 판단 • 병원 의뢰시 담임교사 연락(또는 보호자연락) • 보건일지 작성 및 관리 • 입실확인증 등 관리 • 입실 규정 및 출결 처리 연계 협조 <p>응급환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및 시행 • 응급환자 건강사정 • 응급처치 및 필요시 119신고 •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교직원 연수 • 기타 응급환자 관리계획에 따른 업무 • 응급환자이송 기록지 작성 및 관리 <p>의약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방문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따른 필요 약품 파악 • 필요의약품 품의 및 신청 • 구비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관리 •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 약품사용 기록 <p>의료기기 비품 관리 및 소독</p>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공통	요양호 학생관리	전교생 건강상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초 전교생 건강상태 조사 실시 •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요양호 학생 선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조사서를 바탕으로 건강상담 • 건강상태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반영하여 요양호 학생 선정 • 학교생활 시 주의사항 및 의료서비스 관련 학부모 상담 • 요양호 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 요양호 학생 정기 건강상담 및 기록 • 요양호 학생 관리대장 작성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 (1)	연간 계획 수립	학교보건 연간계획 수립 [보건(2)의 협조를 받아 보건(1)이 최종 수립] • 보건실 운영 계획 • 학생 건강검사 계획 • 요양호 학생 관리 계획 • 응급상황관리 계획(응급처치·이송관리·심폐소생술포함) •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 감염병 예방 계획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계획 • 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계획 • 체형 불균형 관리 계획 • 당뇨학생 관리 계획(해당 학생 재학 시) • 보건교육 계획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보건 부분 (연구부 협조) 학교정보공시(보건 부분) 입력 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조정	보건 (2)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 •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 예방접종 관련 업무 (신입생 예방접종내역 확인 포함) 감염병 발생 시 대응 • 발생 현황 모니터링 • 매뉴얼에 의거 유행여부 판단 •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및 나이스 보고 • 교내 감염병 관리조직의 활성화 • 보건소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 역학 조사 시 협조 감염병 보조 인력 관리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및 관리 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업무 • 검진일정 조정 • 검진 실시 및 결과 안내 • 미검자 추후 검진방법 안내 기타 감염병 관련 업무
	성 교육 관련 업무	학생 성교육 • 학년별 성교육 시수 반영 확인 •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시수 반영 확인 • 필요 시 성교육 전문강사 초빙 성관련 업무 • 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계획 수립 • 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지침 수립 • 성 고충 상담원 구성 및 성 고충 상담창구 운영 • 학교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협조(교육, 회의 참석) • 성 고충 심의 위원회 구성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보고(성 관련 부분) • 교직원 성 관련 의무연수 추진(3시간) • 학부모 연수 및 가정통신문		건강 증진 관련 사업	건강증진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예산 관련 목적사업비 운영 • 관련 연수 참석 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사업 체형 불균형 관리 사업 당뇨학생관리(해당 학생 재학 시) 선정시 아래의 사업 추진 • 건강검사 표본학교 • 건강증진학교 운영 • 아동 구강 실태조사 •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기타 건강증진 관련 사업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 (1)	흡연 예방 사업	학교흡연예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예방사업 계획 및 추진 • 실태조사(3월 건강조사 포함 가능) •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 외부교육 인력 관리(강사초빙) - 체험부스 운영 제반사항 • 학교흡연예방사업 실적입력 	보건 (2)	건강 검사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선정 및 안내 • 기관선정 업무 (필요 시 완화 승인 요청, 학운위 상정 등) •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별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검사(초2,3,5,6/ 중2,3) • 소변검사(초2,3,5,6/ 중2,3 /고2,3) • 결핵검사(고2,3학년) • 척추측만증 진단검사(초6) • 일정 조정 및 실시/미검진학생 관리 건강검사 결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유소견자 추후관리 • 별도검사 유소견자 추후관리 • 건강검사 관련 결과 보고
	기타 명시되지 않는 보건업무	교육청 긴급 편성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사업 관련 서류 제출 및 • 예산 조정 업무 각종 위원회 참석 (학교폭력전담기구, 성고충심의위원회 등) 보건관련 현안 조사 등 부담임 업무 (해당학교) 희망교실 업무 (희망시) 생리대 사업(현재 중3·고교 여학생만 해당) 헌혈 사업(현재 고교만 해당) 보건 교생실습(성교육실시)		건강 기록부 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인적사항 생성 • 건강기록부 수시 점검 • 학년 말 건강기록부 마감 및 상신
				교직원 심폐 소생술	교직원 심폐소생술 계획 수립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및 기관선정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및 결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자 명단 관리 • 미이수자 추후 이수 방법 안내 • 교육 실적 관리 및 보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매월)

VII

기타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

1. 2024 보건교육 기본 계획(안)
2. 2024 비만 예방교육 기본 및 세부 계획(안)
3. 2024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안)
4. 2024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안)
5. 2024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안)
6. 202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안)

근거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3 2024년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안내[교육부]

(모든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4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건교육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요

1 목적

-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 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학교보건 인턴강사)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 보건교육 시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2 실태

-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비만·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알레르기성질환 및 교육관련 문제가 대두
-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질환(아토피·알레르기 등) 문제 대두
-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 유통 및 기온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
-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피해 문제 대두

3 추진방향

-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세부 추진 계획

1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성장단계에 맞는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강화
 - ※ 연령대별 건강행태 변화 등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중심으로 집중교육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 모든학교에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 보건교육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 안내하고 보건교육 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 관리를 강화
- 초·중·고생 건강증진 교육시간(관련법령, 지침 등)
 - 초등학교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20(2017.1.9.))
 - 보건교과를 선택한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성교육, 금연, 응급심폐소생술, 정신건강 등을 모두 보건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보건교육 실시
 - 보건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중·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법령에서 정한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법령과 지침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
 - ☞ 성교육 15시간(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법령 및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성폭력예방교육(3시간)포함,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 심폐소생술「학교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교직원 :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2 (‘16.12.20. 신설 ‘17.3.21. 시행))
 - 학생 : 보건교육, 안전교육 연계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교직원 :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이론교육(2시간) + 실습교육(2시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 ☞ 질병예방, 신종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등을 편성·운영(학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 ☞ 보건교육의 체계적 운영(학교보건법)
 - ☞ 금연·약물 오·남용예방 10시간(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별표6)
 - ☞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폭력·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응급처치영역 내용체계안) 학교 교육 계획 반영

2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주요 건강문제, 생활환경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 중심으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지원
- 기존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분석결과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3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연수대상 확대 및 연수과정 다양화
 - ※ 학생건강증진 관련 교장(교감), 담임교사, 관련교과, 신규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참여 확대
-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생건강 관련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 ※ 연수과정 개설 및 개설 예정 현황
 - 연수과정 개설 현황 : 감염병 온라인 연수(중앙교육연수원), 약물오·남용 연수(식약처), 흡연예방 담당교원 온라인 연수(중앙 교육연수원), 건강증진학교 온라인 연수(교육부)
 - 연수과정 개설 예정 현황 : 학교보건활성화를 위한 보건교사 직무연수(8월)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강사 양성 과정 90명)
- 보건교과연구회 운영(3팀), 흡연예방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3팀)
- 효율적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관련교과 간 협조 강화

4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합동 홍보체계 및 지원 강화(시청, 각구청 보건소,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 ※ 예) 개인위생, 감염병, 흡연, 신체활동, 시력 관리 등
-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 가정통신문 외에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학교 단위 홍보 방식 다양화 지원 강화
 - ※ 학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개발 지원
 - ※ 취학 전 예비 학부모 대상 홍보
 - 가정 내 자녀건강 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

5 보건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인턴강사) 배치(초,중,고,특수 학교 130개교 지원)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보건수업 중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효과

지금까지	앞으로
성장단계 및 연령대별 건강행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미흡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ackground-color: #8bc34a;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보건교육</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8bc34a;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건강증진 교육 실태분석 - 연령대별 건강행태 변화 고려 건강지식 교육 - 관련교과 간 연계 강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합동으로 교육자료 개발 지원 ※ 주요 이슈 및 미래예측 문제 예방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등으로 연수 참여 확대로 전체 교원 전문성 제고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 학부모 홍보기반 마련 </div> </div>
교육현장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 교육자료 부족	
일부교사 중심의 학생 건강지도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 홍보 미약 (산발적, 가정통신문·리플릿 중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9. 25.] [광주광역시조례 제5528호, 2020. 9. 2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
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유관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28호,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2

2024 비만 예방교육 기본 및 세부 계획(안)

추진배경

□ 실태 및 원인분석

실 태	원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제18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결과 광주학생 비만율 12.7%(전국 12.1%) 과체중률 10.4%(전국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칙한 식사(아침식사 결식률의 증가 등) •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라면등의 음식 선호 • 부족한 수면시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비만 율 등 실태 조사 - 비만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연수 및 홍보 -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적정시간 확보 - 비만 예방교육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추진 과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건강증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 건강증진 학교 선정 및 운영 컨설팅 • 학교체육 활동 운영 및 컨설팅 • 학생 비만 실태 조사 • 학교 비만예방 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유관 전문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 학생건강증진캠프(비만예방 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비만 실태 조사 • 보건교육과정 운영 • 건강검사 실시 • 교과통합 수업으로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 자율체육활동 운영 • 스포츠클럽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학교 운영 •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 • 교사 연구회 운영 (건강증진학교 연계) • 우수사례 공유 및 배포

추진목표

비 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

목 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



핵심 영역	주요 추진 과제
비만예방 교육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비만 실태조사 ▶ 건강검사 실시 ▶ 보건교육과정 운영 ▶ 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비만 예방 교육 사업 공유 및 협조 ▶ 학생 건강증진(비만예방교육)캠프 운영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비만예방 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 교사 연구회 운영
건강증진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우수사례 공유 및 배포 ▶ 교사 연구회 운영(건강증진학교 연계)

근거

□ 교육기본법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 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3조의1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5.)

중점추진과제

- 학생비만 실태 조사
- 비만 예방교육의 활성화
- 건강증진학교 운영
-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평가 계획

-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및 결과 평가
 - 학생 비만을 현황 및 변화 추이 평가
- 제18차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를 통한 비만을 실태 및 원인분석
-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 비만예방교육 실시 현황
- 건강증진학교 운영 결과

기대 효과

- 비만 예방교육의 활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 건강의 틀 마련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
- 비만 예방 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비만 예방 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

2024 학교 비만 예방교육 세부 계획(안)

학교 비만 실태 조사 및 건강검사 실시

1 학생 건강관리 강화

가. 최근 3년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학생 비만율)

(단위 : %)

구분	2022			2021			2020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비만율	15.8	9.4	12.7	17.4	10.1	13.7	12.9	9.1	11.0

나. 학생들의 비만도는 전년대비 1.0%p 감소,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비만율이 더 감소할 수 있도록 학생 신체활동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등의 노력 필요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가. 기본방침

- 1)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2)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나. 현황

- 1)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개정된「학교보건법」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
- 2) 학생 건강검사 현황

항 목	검사 대상 (특수·각종학교 포함)	비용	실시 기관	검사 시기
신체발달 상황검사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3월~7월
건강조사	초·중·고 전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학기초 (3월중)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참고자료 3]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료기관	년 중
	초·중 : 전교생 구강 건강검진			
별도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실시			

다. 추진방향

1) 학교건강검사 추진

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실시(학교건강검사 규칙 제2조)

※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시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방안(선정기준 마련 등), 검사 결과 건강이상자 최종 확인 및 추후관리, 건강검사 결과 기록 관리 등

나) 「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다) 학교장은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및 신체발달 상황 등)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2)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제3항)

※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 완료

나)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라. 검사항목

1) 신체의 발달상황 : 키·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 대상학생은 검진기관에서 측정)

2) 건강조사 :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 생활, 텔레비전, 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 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거 교직원

이 실시,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 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도 문진표 작성으로 같음할 수 있음.

- 3) 건강검진 :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4) 별도검사 :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마. 실시방법

1)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가) 검사 종목

- (1) 신체발달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판정
- (2) 건강조사 : 건강조사 설문지(학기초)

나) 검사 시기 : 3월~7월중

다) 결과 처리

- (1) 신체발달 : 담임교사는 검사결과를 건강기록부(NEIS포함)에 입력하고,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2) 건강조사 설문지 : 담임교사는 설문지로 조사하여 보건(담당)교사와 협의, 건강이상자(요양호 학생) 파악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활용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1 보건교육 과정 운영

가. 추진 근거 및 현황

- 1) 「학교보건법」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2)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적체험활동 및 보건 과목 선택운영

나. 추진방향

- 1)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초등학교는 5, 6학년 권장)은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체계적 운영
- ※ 일회적·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업시수 확보

- 나) 학교장은 학교 보건교육 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안내하고, 보건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관리 강화
- 2) 학교장은 각 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가)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나)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영양교육 과정 운영

가. 추진방향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계획’ 반영 및 실시

- 1)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나트륨·당류 저감화,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2)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 (월 2회 이상)

나. 교육내용

- 1)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 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2)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안 사먹기, 나트륨 줄이기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3)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4)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 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 5) 트랜스지방 제한 및 유해식품에 한 교육·홍보 강화
 -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는 요리방법 강구
 - 튀김요리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식물성유지를 사용
 - 냉동·완제품 및 가공식품 사용을 자제하고 전통 식문화를 반영
 - 튀김요리보다는 찌거나 굽는 요리방법 선택
 - 부정·불량, 유해식품 매식근절을 위한 학생교육 및 학부모 홍보 실시

다. 교육방법

- 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식생활 안전교육' 실시
- 2) 초등학교 영양 및 식생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3) 급식시간 전·후 시간 등을 활용한 방송 교육 및 순회교육
- 4) 가정통신문 활용, 학교홈페이지 학교급식게시판을 이용

3 체육교육과정 운영

가.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육 영역 운영 내실화

- (체육수업 시수확보)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향

-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 있음
- ※ 체육 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활동을 동시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 가능한 시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결정
-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당 또는 학년당 전체 시수 범위 내에서 조정 *(자유학기) 51시간 이내, (자유학년) 85시간 이내

- (자유학년제 체육프로그램 개설) 체육계열 진로 활성화, 교과 융합 등 다양한 자유학년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유학년 체육 영역 운영 내실화

- ※ (진로탐색 활동) 체육 분야 직업군 탐색 및 현장 탐방
- ※ (주제선택 활동) 체육 관련 융합 프로그램 적용
- ※ (예술·체육 활동) 체육 활동 중심 자율과정 편성
- ※ (동아리 활동) 다양한 체육 동아리 개설 및 참여 확대

- (학생 수요 고려)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유학년제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설·운영
 - 사전 조사를 통한 학생의 선호 종목 및 학생 중심 활동의 자유학년제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율 확대
- (자유학년제 체육활동 체험 장소 확충) 체육교육협의체를 통한 지역 연계 자유학년 체육활동 체험처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 (체육 분야 진로 탐색) 체육진로검사도구* 활용 및 체육 진로 프로그램 수업 구성을 통해 체육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 있음
- ※ 체육 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활동을 동시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 가능한 시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결정
-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당 또는 학년당 전체 시수 범위 내에서 조정 *(자유학기) 51시간 이내, (자유학년) 85시간 이내

* 체육진로검사도구(중앙대 학교체육연구소 개발) 활용

※ e-school 체육계 진로 프로그램 적극 활용(<http://ms.e-school.or.kr/special.do>)

나. 고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지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체육활성화 선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고교리그 확대
 - (우수 사례 확산) 선진국 고등학교 학교체육 활동 사례 및 국내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통해 체육활동의 중요성 강조 및 활성화 추진
- 교육과정 내 체육 활동 확대
 - (체육수업 점검 철저) 현행 체육교과 10단위, 6개 학기 편성 및 운영에 대해 매년 2회(3월, 9월) 실제 수업운영 여부 점검 강화
 - (체육활동 확대) 고등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체육활동 확대 검토

1 기본방침

- 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나.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2 현황

가.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1)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평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2)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나. 학생건강 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1)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2)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다. 교육부 건강증진학교 운영

- 1) '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2) '12~'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85개교 운영)

3 추진방향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1)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2) 단위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 독려

나. 건강증진 교육 실시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1) 각 급 학교는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지자체(보건소, 공공기관 등 포함),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2)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색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다.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교육 역량 강화 지원

- 1)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교육 관련 커리큘럼 포함
※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
- 2) 건강증진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 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라. 건강증진교육 운영 방식에 따른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보급

- 1)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
- 2) 우수사례 운영 학교·담당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상 등 시상 예정
- 3) 워크숍,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운영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 학교 일반화 추진 및 비만 예방교육교육관련 홍보
-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관련자료 지속 안내·보급

마. 학생 건강증진 캠프 운영

- 1) 대상 : 초, 중등학교 희망학생 대상
- 2) 운영 내용 : 보건, 체육, 영양 교육을 접목한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비만 및 건강증진 캠프 운영
- 3) 운영 기간 : 여름방학기간(7~8월)
- 4) 운영 인원 : 40명 운영 예정

비만예방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1 기본방침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추진

2 현황

- 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건강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서의 학교 기능 필요성 대두
- 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 업무분담 문제로 교직원 간의 갈등, 협력 미흡
- 다. 학생 건강문제 다양한 변화에 따른 보건 수업방법 개선 요구

3 추진방향

- 가. 학교보건은 보건교육, 학생 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활동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의 분담 및 관련 교직원 간의 협력체제 구축
- 나. 학교보건 인턴강사가 배치되지 않은 과대학교, 보건교과 선택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조치
- 다. 보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의무제 실시
 - 1)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이 지속적·계획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의무제 운영
 - 2) 교원 연수 의무제는 2007학년도부터 전 교원에게 적용하며, 자율연수 및 자기개발과정의 직무연수를 제외한 전문성 향상 과정의 직무연수를 연간 최소 1학점(15시간)이상 이수(기간제 교사 포함)
 - 3) 의료인 보수교육과 연계(연간 이수시간 8시간) ⇨ 6월 시행 예정
- 라. 보건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1)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업무 담당자(신청자)
 - 2) 시기 : '22년 7월~8월 예정
 - 3) 내용 : 학교보건관리,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등

평가 계획

-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및 결과 평가
 - 학생 비만율 현황 및 변화 추이 평가
- 2. 제19차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를 통한 비만율 실태 및 원인분석
- 3.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4. 비만예방교육 실시 현황
5. 건강증진학교 운영 결과

기대효과

1. 비만 예방교육의 활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 건강의 틀 마련
2.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
3. 비만 예방 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비만 예방 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126호, 2018. 11.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 및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이 비만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비만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등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5126호,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

2024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계획(안)

근거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024년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교육부]

(모든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4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건교육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제4조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요

1 목적

-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
-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및 홍보

2 상태

-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짐
- 신체활동 부족, 바르지 않는 자세가 지속되면서 불균형 체형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최근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불균형체형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향 임
-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2, 3학년 흉부 X선 검사를 통한 척추측만 학생 현황

학년	성별	검진대상	검진인원	척추측만 학생 수	비율
고2	남	7,026	6,749	127	1.9
	여	6,533	6,275	365	5.8
	계	13,559	13,024	492	3.85
고3	남	6,722	6,262	120	1.9
	여	6,201	5,817	260	4.5
	계	12,923	12,079	380	3.20
합계	남	13,748	13,011	247	1.9
	여	12,734	12,092	625	5.1
	계	26,482	25,103	872	3.5

3 추진방향

- 초등학교 6학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 학생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학교 교육과정 내 체육활동 확대
- 체형불균형 예방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세부 추진 계획

1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성장단계에 맞는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강화
 - ※ 연령대별 건강행태 변화 등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중심으로 집중교육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 모든 학교에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 보건교육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 안내하고 보건교육 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 관리를 강화

2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주요 건강문제, 생활환경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 중심으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지원
- 기존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 ※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 관련 문제(과몰입·중독,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시력·청력 저하 문제 등),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 등 추가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3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연수대상 확대 및 연수과정 다양화
 - ※ 학생건강증진 관련 교장(교감), 담임교사, 관련교과, 신규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참여 확대
-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생 건강 관련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 보건교과연구회 운영(1팀)
- 효율적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관련교과 간 협조 강화
 - ※ 교내 학생건강 정보 및 예방교육 자료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영양·체육·상담 교사 등과 협의체계 강화
 - ※ 학교 내 건강증진부, 건강·안전부 등 건강교육 주관 조직·협의체 운영 활성화

4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합동 홍보체계 및 지원 강화(시청, 각 구청 보건소,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 ※ 예) 바른자세, 인터넷 사용 등
-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 가정통신문 외에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학교 단위 홍보 방식 다양화 지원 강화
 - ※ 학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개발 지원
 - ※ 학부모 대상 홍보
- 가정 내 자녀건강 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

5 학생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활성화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강화

5 보건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인턴강사) 배치(초, 중, 고, 특수학교 130개교 지원)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보건수업 중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7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척추 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 검사방법 : 결핵 등 호흡기 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사와 연계한 흉부 엑스선 검사 실시
- 소요예산

항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초등학교 6학년 검사비	15,200명×6,960원	105,792,000원	

※ 2023년도 건강보험수가 6,960원 적용(매년 건강보험수가 비례 산정)

기대효과

1. 체형불균형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
2.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으로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
3.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4. 불균형체형 예방 활동과 해소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
5. 척추측만증 조기 진단검사로 지속적인 추구관리 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1. 4.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670호, 2021. 4.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불균형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인 상태(일자 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 대상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70호,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3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제4조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요

1 목적

-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
-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
- 당뇨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홍보

2 실태

〈소아당뇨 학생 재학 현황 (‘23.4.1 기준)〉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154	27	30
중	92	33	47
고	68	48	80
특수	5	3	5
계	319	111	162

3 추진방향

-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 학생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세부 추진 계획

1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등 교육자료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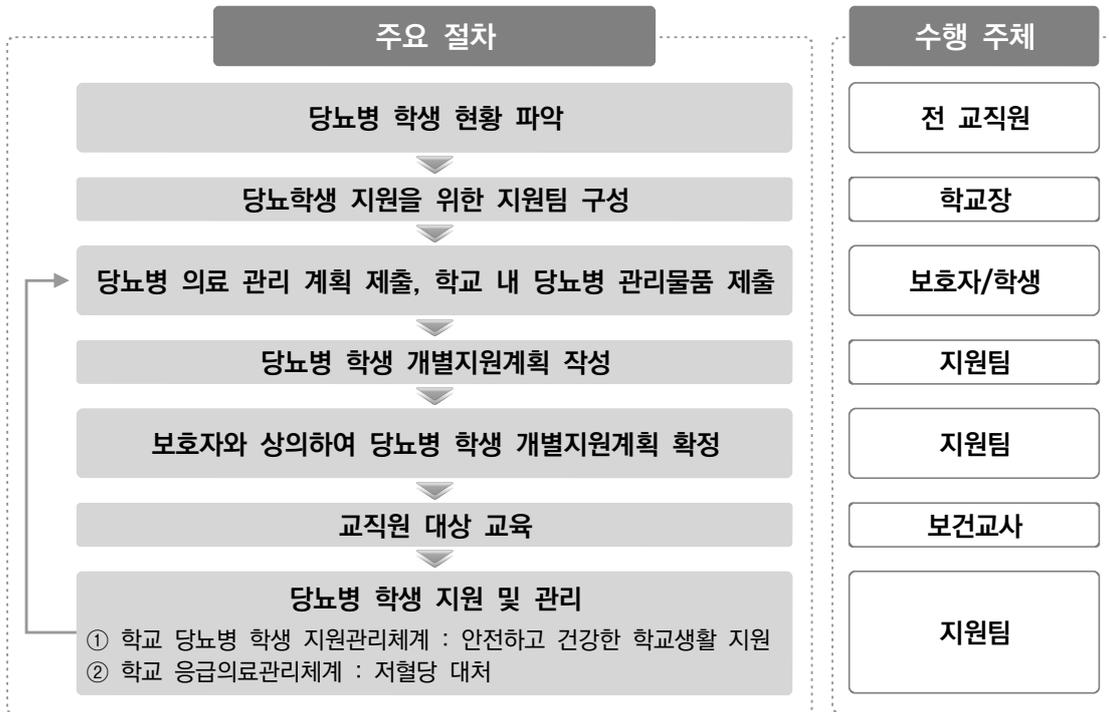
2 학생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 학생 건강검사 추진

	대상	항목	비고
학생 건강검진	초1·4, 중1, 고1, 특수학교 해당 학년	근, 골격 등 14개 항목	
학생 별도검사	초2·3·5·6, 중2·3, 고2·3 특수학교 해당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당뇨병 학생 지원 절차



○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컨설팅 실시

- 혈당 측정계획 (혈당측정 장소, 시간, 학생의 자기관리기술, 혈당측정기 정보)
- 인슐린 주사 지원계획 (주사장소, 시간, 용량결정, 주사투여, 주입방식)
- 저혈당시 응급처치 계획
- 당뇨병 관리물품 목록 및 보관장소
- 지원팀과 교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

○ 급식, 체육활동, 현장학습 시 유의사항 등 학교 구성원 공유

○ 당뇨병 학생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권리 존중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보조인력 지원(학교보건인턴강사)

○ 당뇨병 학생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을 이해·준수

2017년 11월 28일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형 당뇨병 어린이에 대한 보호규정이 마련, 저혈당 쇼크가 있을 때 당뇨병 학생에게 글루카곤 투여를 하는 내용 추가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
2.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등의 보건교육으로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
3. 당뇨병 학생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당뇨병 학생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89호, 2020. 12.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7.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89호,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안)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1 근거

-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2 배경

-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미흡
-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잘못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응급환자의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 발생
- 응급처치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급하고 활성화시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일차 반응자의 전문성 향상

3 목표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구비업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학생, 교직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일차 반응자의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응급환자의 방치 시간을 줄이고 2차적 손상을 예방하여 심신상에 중대한 위해 방지
-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
-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1 교육 협력 체계 유지

- 응급의료체계는 '현장 - 이송 - 응급실 - 최종 치료'까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이중 현장에서의 초기 응급처치가 환자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직원 및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협조

2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		
380-4396		613-808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부소방서 606-4233	서부소방서 613-8572	남부소방서 613-8608	북부소방서 613-8765	광산소방서 613-8883
[119안전센터] 대인: 606-4203 용산: 606-4243 지산: 606-4258	[119안전센터] 화정: 606-4255 염주: 606-4317 금호: 606-4330 풍암: 606-4359 상무: 606-4343	[119안전센터] 송하: 606-4370 월산: 606-4413 봉선: 606-4623	[119안전센터] 문흥: 606-4463 임동: 606-4503 우산: 606-4518 일곡: 606-4533 두암: 606-4763 동림: 606-4563	[119안전센터] 송정: 606-4643 월곡: 606-4658 비아: 606-4673 신가: 606-4688 첨단: 606-4701 평동: 606-4718

-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체계

자치구	응급의료지원센터	비고
동구	▲ 전남대학교병원(220-5893) ▲ 조선대학교병원(220-3373)	
서구	▲ 미래로21병원(450-1000) ▲ 광주한국병원(380-3000) ▲ 선한병원(466-1000) ▲ 상무병원(600-7000) ▲ 서광병원(600-8000)	
남구	▲ 동아병원(650-2500) ▲ 광주기독병원(650-5000) ▲ 광주씨티병원(460-7000)	
북구	▲ 해피뷰병원(519-9000) ▲ 운암한국병원(608-8000) ▲ 광주현대병원(570-0336) ▲ 광주병원(260-7000) ▲ 광주일곡병원(608-7013) ▲ 광주희망병원(608-6000)	
광산구	▲ 신가병원(610-8702) ▲ 광주열린병원(610-9000) ▲ KS병원(975-9000) ▲ 광주수완병원(958-1110) ▲ 송정사랑병원(949-9000) ▲ 하남성심병원(953-6000) ▲ 광주보훈병원(602-6021) ▲ 첨단종합병원(601-8084)	

1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적극 반영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 완료 후에는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내부결재) 실시

□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방법 적극 검토·추진

□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 발굴

-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대상자를 격려함으로써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을 제고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 schoolhealth.kr)”의 심폐소생술 사례 메뉴를 활용하여 실천 사례 접수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학교보건법」제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수학여행 안전요원(신규,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 안전교육 등 직무연수 시 심폐소생술 실습(2시간)을 포함한 과정이 있는 경우
 - 기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관련 연수 이수(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시)
-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 당해 연도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29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교육 공간의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토 후 추진

□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 용		시간	강 사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 보건교사(간호사)의 경우,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소지자, BLS(Basic Life Support) Provider, BLS(Basic Life Support) Instructor, 교육청 주관 응급처치전문요원 연수 이수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를 할 수 있음
- 일반 교직원의 경우, 강사 다)항에 해당되는 경우 강사로 활동 할 수 있음

□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개설(추후 공문 시행)**

□ **교육결과 처리(모든 학교 해당)**

- 교육 이수결과 관리 : 학교별 이수자는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2024학년도 교직원 심폐소생술 관리대장(예시)

관리 번호	성명	연수 과정명	연수기관명		연수 실시일	연수 시간
			학교자체	외부기관명		
1	000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대상인원		명	교육이수 인원	명	미이수인원 (사유)	

※ 참고로 제시된 예시는 학교 내 관리대장이며, 학교 내 기존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학교 자체' 진행 연수는 증빙자료(내부결재)를 반드시 기록·보관

※ 증빙자료 : 등록부,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2024학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				
교육 일시/장소 : 2024. 4. 1. 14:00 ~ 17: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 특수 분야 직무연수 지정기관에서 연수 이수한 경우, 운영기관에서 나이스 등재

○ 매년 교육대상이 전체 교직원으로 변경되어 개별 나이스 등재는 입력하지 않음

3 응급장비 사용 교육 실시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실적 자체 보관(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1 응급장비 설치 안내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

-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건물에서 설치 건물까지 5분 이내에 기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는 경우 미설치건물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건물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야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잦은 기관은 야외 교육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참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것
- 자동심장충격기는 기관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시설의 입구, 엘리베이터 근처 등)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기관

-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관할 산하기관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 설치기관의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 (정·부) 지정
 -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 관리책임자의 역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 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 사용내역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 소요 예산

-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 예산 : 33,960천원(강사인력풀위탁운영비, 강사수당 등)
 - 2024년 10~11월 중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세부 계획 수립·추진 예정

3 응급장비 관리 안내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이용 점검 등록

The screenshot displays the E-Gen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E-Gen' logo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service tiles: '응급실 찾기' (Emergency Room Finder), '병원·약국 찾기' (Hospital/Pharmacy Finder), '민간구급차 검색' (Private Ambulance Search), '자동심장충격기' (AED), '공직생활 정보게시물' (Public Service Information), and 'NEMC 엔트넷' (NEMC Intranet). A detailed view of AED equipment information is shown below, with a table listing installed AEDs. The table has columns for '장비명' (Equipment Name), '관리지역' (Management Area), '사용이력' (Usage History), and '등록응급의료예안' (Registered Emergency Medical Case). The table lists two AEDs: '강혜식장' (Kang Hye-sik) and '분관1층 로비' (Bun-gwan 1st Floor Lobby). The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AED List) section is circled in red and labeled with a '3'. The '자동심장충격기' (AED) tile is labeled with a '2'. The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 (AED Maintenance Management) button is labeled with a '1'. The '장비정보' (Equipment Info) and '사용이력' (Usage History) tabs are labeled with a '4'. The '+ 점검일자 등록' (+ Register Check Date) button is labeled with a '5'.

- 1 응급의료정보제공(E-gen)(<http://www.e-gen.or.kr>) 별도 로그인 버튼 클릭
- 2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 3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 4 AED 장비정보·점검이력 및 사용이력 구분
- 5 점검이력 메뉴 : 점검일자 등록 및 점검이력 검색 및 선택 화면

□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이용 점검 등록

※ 점검이력 화면구성 및 등록·검색 방법은 모바일 앱(app) 사용법과 동일

1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별도 로그인 버튼 클릭

2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3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4 AED 장비정보·점검이력 및 사용이력 구분

5 점검이력 메뉴 : 점검일지 등록 및 점검이력 검색 및 선택 화면

[참고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이론적 배경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전원을 켜다.
- ② 두 개의 패드를 기계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부위 피부에 단단히 부착한다. (환자의 옷은 벗기고,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 ③ 자동심장충격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접촉을 피하고 기다린다.
- ④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심장충격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후 '제세동(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버튼을 누른다.
* '심장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시, 그 즉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 ⑤ 제세동(심장충격) 시행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참고]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0.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70호, 2020. 3.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 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
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
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
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5370호,2020.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6

202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안)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자 예방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추진 근거 및 목표

1 근거

- 「학교보건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2 목표

-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이환 예방
- 학교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유행 확산 방지
-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또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

2 추진 방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유행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일선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갖춘 체계적인 대응
-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와 기관별 역할 구분
 - 대응체계를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와 국가위기 상황으로 구분
- 감염병 대응 체계 범위의 확장과 감염병 대응 조직의 강화
 - 대응체계를 감염병의 예방단계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 세분화
 - 학교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 향상

- 보건학적 고위험군 및 사회적 취약계층, 특수학교(특수학급) 등 특수상황 고려
- 유행단계별 업무흐름도 및 판단 기준, 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 등교 중지, 휴업, 휴교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학교 내 평상시 대비

1 평상시 대비(예방단계)

- 상황 :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 내용 :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조직 구성, 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수행

2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예방접종 관리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
- 수동감시 체계 운영 :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병 발생단계 업무 흐름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
- 일시적 관찰실 지정 :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격리하여 관찰하는 학교 내 공간 지정
- 방역 활동 : 방역물품 비축, 방역(소독) 실시

3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 목적
 -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각 구성원의 역할 강화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

○ 필요성

- 학생 감염병 담당자의 역량 강화
- 학교 감염병 관리를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계획하고 구성원 역할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교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필요

○ 훈련내용 및 방법

- 참여자 : 모든 교직원 참여 원칙
- 훈련시기 :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훈련 진행
- 방법
 - 훈련 당일 조별로 특정학생 감염병 발생의 단계별 시나리오가 기입되어 있는 훈련용 workbook을 제공, 대응단계에 따라 구성원 역할 논의 및 대응방법 모색(도상훈련)
 - 학교별 자체 모의훈련 시 교육청 단위 모의훈련에 참석하였던 학교별 대표 구성원이 모더레이터 역할 진행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1 대응단계(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

단계	상황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후속 조치
대응 제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유증상자 발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 대응 제2단계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예방단계
대응 제2단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	⇒ 대응 제3단계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예방단계
대응 제3단계	동일학급에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 충족	기존의 모든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복구단계

2 복구단계(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 유행종료 판단과 보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 유행 종료 기준

- 학교 내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름

□ 사후조치 실시

- 수업 결손 보충
- 심리 지원

□ 유행 종료 선언: 예방단계로의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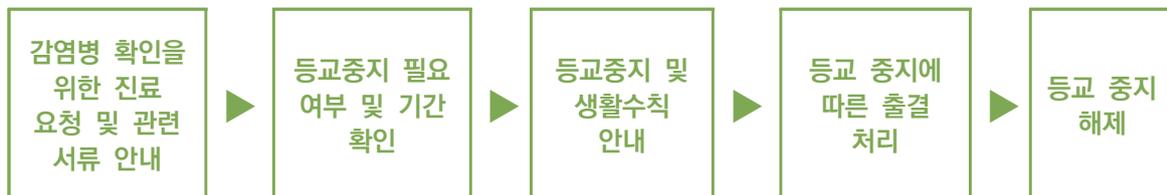
3 등교 중지

□ 등교중지 원칙과 절차

○ 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동안 등교중지 실시(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 인정
-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 실시

○ 실시 절차



○ 등교 중지 학생의 관리

- 학습 및 생활 지도 계획 수립
- 학습 지도
- 생활 지도

○ 학교에서의 나이스(NEIS) 보고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단계	학교 상황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교육부
예방 단계	평소수준*	수동감시체계 운영	수동감시체계 운영	수동감시체계 운영
		-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 구축	교육부 학생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구축
		협조체계 구축 (보건소)	협조체계 구축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응 제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대응 제2단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의심)환자 존재	시·도 교육청 보고	교육부 보고	-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대응 제3단계	1개 교육기관 「유행의심」 상황	시·도 교육청 보고	교육부 보고	-
		감시체계 강화	감시체계 강화	-
	관내 교육기관 「유행의심」 상황 추가 발생	시·도 교육청 보고	교육부 보고	타시·도 교육청 정보 제공
		「학교유행경보」 발령 검토 요청	「학교유행경보」 검토 및 발령	-
	유행 확산	협조체계 강화 (보건소)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 운영	교육부 학생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운영
복구 단계	유행 종료	감시체계 강화 해제	감시체계 강화 해제	-
		「학교유행경보」 해제 검토 요청	「학교유행경보」 해제	-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1 지역 유행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 관내 학교의 「유행의심」 상황 발생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함

□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시 강화

○ 교육부에 「유행의심」 학교 발생과 감시 강화 조치 보고

○ 감시 강화 지역의 모든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에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감염병(의심)환자 발생 보고를 독려함

○ 학교 별 해당 감염병(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산하 교육지원청 보고 및 나이스(NEIS)를 통해 매일 파악함

○ 「학교유행경보」 발령 필요성 검토 요청 : 동일 감염병의 「유행의심」 학교가 추가 발생한 경우 검토함

2 「학교유행경보제」 운영

- 관내 학교의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대응하여 전파 차단
- 관내 학교에 대한 능동감시 결과 최초 발생 학교를 포함하여 2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유행의심」상황이 확인된 경우 「학교유행경보」발령 검토
 - 시·도 교육청은 「학교유행경보」를 발령하고 교육부에 보고함
 - 교육지원청은 「학교유행경보」를 지역 내 학교에 전파함
 - 해당 학교들은 학교 내 감시를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하고, 보건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실시함

3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과 운영

구분	구성
교육청	교육청 담당자
학교	학교 현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방역당국	시청 보건(감염병)업무관련부서, 감염병관리본부 등
민간전문가	소아청소년과/감염내과/정신건강의학과/예방의학/교육 전문가 등

- 교육청 단위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시 협의체 구성
- 교육청 단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지역 내 유행발생 학교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역학조사, 휴업 및 휴교 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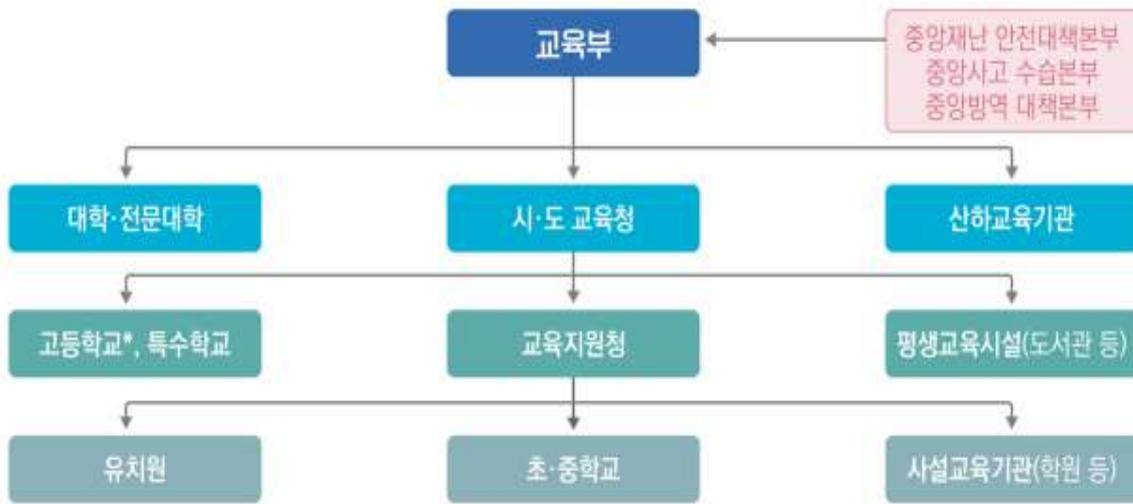
□ 지원체계 구축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역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 지역 단위에서 보건(담당)교사, 관리자 등 연수교육을 실시함
- 평상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주관하여 실행함
- 관내 학교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
- 「유행의심」 학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함
- 원격수업 및 휴교에 따른 수업결손 대책 및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 안내

국가의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 및 대응

1 관련 정보 전파 체계

-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산하 교육기관에 관련 정보를 배포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고등학교에 정보를 전파함.

2 교육행정기관 대응조직 및 역할

□ 대응조직 구성

-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조직을 구성함

단 계	운 영	단장(지휘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관심(Blue)	필요 없음	-	-
주의(Yellow)	구성	학생건강담당국장	교육국장
경계(Orange)	확대	학교정책실장	부교육감
심각(Red)	확대	교육부 차관	교육감

감염병의 종류와 확산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국가위기 상황 시 교육청 대응 조직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시 분할·편성하여 운영

3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 예방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평상시	없음	일반적 대비 / 대응체계 구축

○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을 구성
- 방역당국(시·도 보건업무관련부서/지역 감염병관리본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 소통채널 구축

영역	세부 항목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대응 체계 구축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배포	배포	배포	-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	구성	구성	-	-
	방역당국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구축 시·도 감염병 관련조직	구축 (보건소)	구축 (보건소)
소통 채널 구축	학부모 대상 소통채널	구축	협조	협조	협조
	언론 대상 소통채널	구축	구축	-	-

□ 국가위기 제1단계: 관심(Blue)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세계보건기구: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환자발생 감시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산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예방활동 • 방역당국과 협조체계 점검 •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현황(방역물품 등) 파악 • 모의훈련 실시

○ 대응체계 구축

- 방역당국(시·도 보건업무관련부서/지역 감염병관리본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
-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의 현황(방역물품)을 파악하도록 요청
-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주관하여 실행. 단, 평상시 모의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감시체계 운영

- 감시체계의 운영 방안과 해외 출·입국자 관리 방안을 산하교육기관에 배포

○ 각종 예방 활동 강화

-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행동수칙, 학교용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 국가위기 제2단계: 주의(Yellow)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 (세계보건기구 : '감염병 주의보' 발령) 	해당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 대책반 구성·운영 • 환자발생 감시체계 운영 •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 위기소통채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대응체계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 교육청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및 비상대책반 운영 인력 추가 배치
- 교육청 비상대책반



※ 교육청 비상대책반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리 편성할 수 있음

- 교육청 비상대책반 운영기간: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주의’, ‘경계’ 발령 시
-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시 비상대책반 확대 운영(대책반장: 부교육감→교육감)
- 교육청 비상대책반 역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대책수립 및 추진/환자발생(격리자), 휴업 현황 파악 및 대응/시청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긴밀한 협조 등
- 학교 감염병 확진자 발생 긴급대응팀 구성 및 운영
- ※ 긴급대응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조사 등 신속한 현장지원을 위해 운영

긴급상황 발생 시 보건인력 지원 방안(예시)

- **보건인력의 한시적 지원(시·도 교육청 단위)**
 - 지원 대상 : 보건교사 미배치교, 과대학교 및 감염병 환자수가 많은 학교
 - 지원 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으로 함.
 - 배치 방법 : 해당 감염병과 수행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
- **수업보조인력의 한시적 지원(시·도 교육청 단위)**
 - 교직원이 확진·격리되었을 때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업보조인력 확보
- **관리자, 담임교사, 보건(담당)교사 등 교육구성원별 역량 강화**
 - 시·도 교육청 단위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

- 교육청의 비상 조직체계 정비(업무연속성계획 수립)

○ 감시체계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은 필요시 감시를 강화

- 대상 지역: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발생한 지역으로써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
- 강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음
-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함.
- 결과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 국가위기상황에 따른 환자 발생 지역 및 이외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산하 교육기관에 교육부 및 방역당국의 각종 지침 준수사항을 안내

○ 위기소통채널 확보 및 운영

-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의 교환으로 대내외 신뢰 구축
- 유관기관 간 양방향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극복
-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확보
-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 국가위기 제3단계: 경계(Orange)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해당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 대책반 확대 운영 • 감시 강화 지역 범위 및 대응 방안 결정 • 감염병 대응 지원(방역물품 등) 보급 및 확충 •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 • 휴업 및 휴교 검토 • 학교 교육과정(현장체험 학습 등)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 전파 		

○ 대응체계 운영

- 시·도 교육청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 필요 시 환자 발생 지역에 보건인력을 지원
-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을 지원

○ 감시체계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은 감시를 강화
 - 대상 지역: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지역
 - 강화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동일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음
 -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
 - 결과 보고: 학교→교육지원청→시·도 교육청→교육부
-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정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 환자 발생 지역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산하 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

○ 휴업 및 휴교의 검토

- 특정 지역에서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업/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음

○ 위기소통채널 운영

-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운영
-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 각종행사 운영

- 환자 발생 지역

- 산하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단체활동의 금지 명령을 검토
-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검토
-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하여야 함
-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 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
- 환자 미발생 지역
 - 산하 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자제 요청

□ 국가위기 제4단계: 심각(Red)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 및 대응 강화 • 감염병 관리 현황 모니터링 (예방교육, 위생관리, 방역 등) •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지침」 준수 • 교육청 대책반 확대 운영 • 감염병협의체(필요시) 협력 강화 •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 • 휴업 및 휴교 검토 • 학교 교육과정(현장체험 학습 등)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대응체계 운영

- 시·도 교육청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
- 관내 지역에 감시 강화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검토

○ 감시체계 운영

- 대상 지역: 전체 지역
-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는 「학교유행정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
- 결과 보고: 학교→교육지원청→시·도 교육청→교육부

○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을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함.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

- 산하 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
- 환자 미발생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 수준 유지 및 예방교육 활동

○ 휴업 및 휴교의 검토

-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휴업 또는 휴교 명령을 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자문조직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 위기소통채널 운영

- 시·도 방역당국과 소통채널을 강화
-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자제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름
-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 각종행사 운영

- 전국의 산하 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자제를 안내함

※ 신종감염병 유행 상황 시 각종 행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 검토
-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
-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

□ 복구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 유행 종료	산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보완 • 복구 • 감시 활동 유지

○ 대응체계 평가

- 대책본부 운영 종료 및 대응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 복구활동

- 교육(지원)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심리회복을 위한 자체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예산지원

1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접 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A형간염	피로감, 발열, 오한, 복부 불쾌감, 오심, 구토	임상증상 시작되기 2주전~황달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 1주일	황달 증상 이후 7일간(황달증상 없으면 입원일로부터 7일간)	15-50일 (평균 28일)	○	○	X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등	항생제 치료 후 48시간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4일	○	○	X
B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증세, 황달, 근육통	일상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60-150일 (평균 90일)	X	X	X
C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증세, 황달, 근육통	증상 나타나기 1주~수 주일 전부터 전파 가능	등교 중지 안 함.	15~150일	X	X	X
감기균	발열,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 중지 안 함.	병원체마다 다양 (보통 2-14일)	X	○	○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	○	○
공수병	공수증, 불안감, 두통, 발열, 중추신경계증상	이환기간 내내	이환기간 내내	20-90일 (평균 30-60일)	X	○	X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8-48시간	○	○	X
급성 출혈열균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출혈 경향	병원체마다 다양	이환기간 내내	병원체마다 다양	○	○	○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	○	X
뇌수막염	발열,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	○	○
덴기열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14일 (평균 4-7일)	X	X	X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조류인플루 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이 있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3-10일 (평균 7일)	○	○	○
두창 (천연두)	고열, 허약감, 오한, 두통, 반점, 구진상 발진	발열 시작부터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12-24일 (평균 7-17일)	○	○	○
디프테리아	발열, 인후와 편도 발적, 인후 부위 위막, 림프절 종대	치료받지 않는 환자는 감염 후 약14일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2일	14일 간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2-6일	○	○	○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라임병	유주성 홍반,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X	X	X
레지오넬라증	폐렴형(발열, 오한, 마른기침), 독감형(권태감, 근육통, 발열, 오한)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0일 (평균 10일)	X	X	X
렙토스피라증	대부분 가벼운 감기증상, 5~10%에서 황달, 신부전 등의 중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평균 5-7일)	X	X	X
말라리아	주기적인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7일 (평균 15일), 6~12개월	X	X	X
발진열	발진, 발열, 오한, 근육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18일 (평균 10일)	X	X	X
발진티푸스	오한, 고열, 두통, 근육통	몸이 또는 머릿니가 있는 경우	몸이 또는 머릿니를 제거할 때까지	6-15일 (평균 7일)	O	O	X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O	O	O
보툴리눔 독소증	뇌신경 마비, 대칭적이며 하부로 진행되는 이완성 신경마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72시간	X	X	X
브루셀라증	발열, 발한, 두통, 요통, 위장관계, 골격계, 신경계 증상	성접촉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2-4주	X	X	X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감염 전 기간 동안 가능하며 대개 며칠에서 몇 주	등교 중지 안 함.	6시간-10일 (평균 6-48시간)	O	O	X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O	O	O
세균성이질	발열, 복통, 구토, 뒤무직을 동반한 설사	발병 후 4주 이내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12시간-6일 (평균 2-4일)	O	O	X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O	O	O
수막구균성 수막염	두통, 발열, 경부 경직, 오심, 구토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10일 (평균 3-4일)	O	O	O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이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생성될 때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3-7일	O	O	O
신증후군 출혈열	발열, 오한, 근육통 → 저혈압 → 핏뇨 → 이뇨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3주	X	X	O
요충증	항문주위 가려움증, 굵은 부위 발적, 종창, 습진	치료를 통해 모든 충체를 제거하기 전까지	등교 중지 안 함.	1-2개월	O	X	X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접 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웨스트나일열	두통, 식욕감퇴, 근육통, 구역, 구토, 발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X	X	X
유비저	국소 감염, 급성 폐감염, 만성 화농성 감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일, 수년까지 가능	O	X	X
유행성각결막 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5-7일	O	O	X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염 발현 3일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14-18일)	O	O	O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1-4일 (평균 2일)	X	O	O
일본뇌염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7-14일	X	X	X
장관 감염병균	발열, 복통,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 중지는 의미없음	질환마다 다양	X	O	X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복통, 수양성 설사, 혈성 설사, 발열, 구토	발병 후 1주(최대 3주)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2~8일	O	O	X
장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이환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3-60일 (평균 1-3주)	O	O	X
중등호흡기증 후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오한 인후통	이환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2-14일 (평균 5일)	O	O	O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급성 호흡기 증상	주요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동안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판명될 때 까지	2-10일 (평균 4-6일)	O	O	O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고열, 구역,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일-2주	X	X	X
진드기매개뇌 염	발열, 권태감, 근육통, 오심, 구토 → 신경계 증상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4-28일 (평균 8일)	X	X	X
쯔쯔가무시증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가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8-11일	X	X	X
콜레라	수양성 설사, 복통, 구토, 팔다리 저림.	대변 검체에서 양성인 기간 (보통 회복 후 며칠정도)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6시간~5일 (평균 2-3일)	O	O	X
큐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복통	성접촉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X	X	X
크로이츠펠츠 - 야콥병	아급성 진행성 치매, 근경련, 기억력과 공간 지남력 장애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물	등교 중지 안 함.	수개월-수년	X	X	X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단저	피부단저(구진, 수포성 궤양), 폐단저(호흡기 증상), 장단저(소화기 증상)	이환기간 내내	이환기간 내내	1일-60일 (평균 1일-7일)	0	0	0
파라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이환기간 내내(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1-3주	0	0	X
파상풍	경부경직, 연하곤란, 근육수축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일-수개월 (평균 3-21일)	X	0 (개방성 상처인 경우)	X
페스트	림프절형(오한, 발열, 근육통), 폐렴형(오한, 발열, 기침, 객담), 패혈증형(오심, 구토, 설사)	이환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6일	0	0	0
페렴구균	폐렴(고열, 오한, 객담, 기침), 급성중이염(귀통증, 이명, 두통)	불명확(호흡기 분비물에 균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3일	X	0	0
폴리오	발열, 권태감, 인후통, 뇌수막염, 이완성 마비	바이러스 노출 후 3-6주까지	입원 후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의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결과가 2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7-14일	0	0	X
풍진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 증상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긴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14-23일 (평균 16-18일)	0	0	0
한센병	나종형(소결절, 구진, 반점, 미만성 침윤), 결핵형(몇개의 피부병변, 말초신경염)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	3-5년	0	0	X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5일 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7-18일 (평균 10-12일)	0	0	0
황열	발열, 두통, 권태감 → 10~20%에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6일	X	X	X

- 1) 전파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으로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의 환자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작성함.
- 2) 등교 중지 기간은 휴일을 포함
- 3)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징후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 4)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 의심 학생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격리하여 관찰하는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1.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63호, 2020. 11.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2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학생 및 교직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재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지원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5563호, 202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VIII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예시안)

1. 보건교육 계획(초·중·고)
2. 영양호학생 관리 계획
3. 학교 응급상황 관리 계획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계획
5. 보건실 운영 계획
6.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7.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8.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학교 여건에 따라 작성 가능

※ 작성된 자료는 **예시 자료**임(수정·삭제·추가 가능) 작성 후 삭제

보건교육 계획(초등학교)

목적

- 건강의 가치를 알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관리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교육부 고시 제2008-148호를 통해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발표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41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안전·건강 교육이 포함(초등), 중·고등학교 '보건' 선택과목 운영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 4조 ②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보건교육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기본 방침 및 추진방향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 보건수업 중 학생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1시간 기준 : 초(40분), 중(45분), 고(50분)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교육청) 교육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대책 마련 및 이행

-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보건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수립·추진,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공유 확대,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필요시 보건 보조인력)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보건교과(교육) 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적극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공유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저작권재산권 유의)

-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학생건강 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학교보건업무 대행자 및 업무(예시)	
1. 학교보건업무 대행자	
실무자	대행자
보건교사	1순위: 업무대행자
	2순위: 교감이 지정하는 업무대행자
2. 대행자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보건교사가 부재 사유로 시간강사(기간제 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대행자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방문 학생 간단한 응급조치 - 교내 조치가 어려운 아픈 학생은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 후 병원 진료나 귀가 조치 	
3.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부재 시에는 학생들이 교무실을 이용하도록 안내 • 보건교육 시 응급환자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보건수업 시간을 미리 안내하고, 필요시 교무실 내 응급함을 이용하도록 안내 - 보건 수업 중 응급환자 발생으로 보건수업이 중단될 경우 교감은 대체인력(ex. 담임교사)을 확보하여 보건교사가 응급처치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원 - 보건 수업 시간은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이 적은 시간대로 확보하여 응급환자 관리의 결손 최소화 - 가급적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확보하여 보건수업 시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함 	

세부 추진 계획

○ 초등학교 5학년 보건수업 계획서(예시)

-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를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월/일	차시	영역	관련교과 및 단원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지도교사	
	1	1.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체육 1.건강증진	건강과 생활습관	보건수업의 의미와 수업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다. 건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보건	
	2		체육 2.생활주기	우리 몸의 생체리듬	생체리듬과 건강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생체리듬에 맞춘 일과를 계획할 수 있다.	보건	
	3		체육 2.생활주기	척추건강 지키기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척추건강에 좋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	보건	
	4		체육 3.질병예방	소화기 건강과 식습관	소화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보건	
	5		체육 3.질병예방	건강한 치아	치아우식증의 원인과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보건	
	6	2.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체육 1.약물.담배.술	약의 올바른 사용	약의 의미와 역할을 말할 수 있다. 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보건	
	7		체육 1.약물.담배.술	흡연의 피해	담배의 주요성분을 알고, 흡연의 피해를 설명 할 수 있다.	보건	
	8		체육 1.약물.담배.술	간접흡연 예방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고, 간접흡연 예방법을 말할 수 있다.	보건	
	9		체육 2.성건강	우리 삶과 함께하는 성	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다른 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약속할 수 있다.	보건	
	10	3. 안전과 응급처치	체육 2.성건강	사춘기 신체와 심리의 변화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사춘기 변화에 따른 대처방법을 말할 수 있다.	보건	
	11		체육 2.성건강	생리현상과 건강과리	사춘기 남녀의 생리현상을 알고 관리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보건	
	12		체육 2.성건강	경계 존중과 동의	경계의 뜻과 경계 침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경계존중과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보건	
	13		체육 2.성건강	성폭력 예방과 대처	성폭력 위험 상황을 말할 수 있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보건	
	14		체육 3.정서.정신 건강	소중한 나의 자존감	자아존중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보건	
	15	4.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체육	2.응급처치	생활 속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보건
	16			2.응급처치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심폐 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올바르게 시연할 수 있다.	보건
	17		체육	1.건강권	건강할 권리를 찾아서	보건의료 기관의 종류와 이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미디어가 건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보건

○ 초등학교 6학년 보건수업 계획서(예시)

월/일	차시	영역	관련교과 및 단원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지도교사	
3	1	1.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체육	1.건강 증진	성장 발달과 건강검사	성장발달의 의미를 알고 건강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나의 성장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건
	2		체육	2.생활 주기	척추를 건강하게	척추의 건강을 이하여 바르게 앉는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실천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보건
	3		체육	3.질병 예방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신체상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상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보건
4	4		체육	3.질병 예방	면역과 건강	면역과 건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탐색할 수 있다.	보건
	5		체육	1.약물 담배술	잘 사용하면 약, 잘못 사용하면 독	약물 오남용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약물오남용 예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보건
	6		체육	1.약물 담배술	담배 거절하기	흡연의 문제점을 알고,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흡연을 권유받은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다.	보건
	7		체육	1.약물 담배술	음주 예방	술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음주 예방과 대처 방안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보건
5	8	2.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체육	2.성과 건강	건전한 이성교제	남녀의 성의식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성 교제 시 예절을 알 수 있다.	보건
	9		체육	2.성과 건강	여자처럼, 남자처럼을 나답게	성역할과 시대에 따른 성역할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보건
	10		체육	2.성과 건강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보건
6	11		체육	2.성과 건강	성 상품화와 음란물	음란물과 성 상품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음란물과 성 상품화의 폐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보건
	12		체육	3.정서 정신 건강	자아존중감	자신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작성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보건
	13		체육	3.정서 정신 건강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스의 원인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	보건
7	14	3. 안전과 응급처치	체육	1.생활 안전	학교폭력 예방	학교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보건
	15		체육	2.응급 처치	생활 속 응급처치	염좌, 탈구, 골절의 응급 처치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화상의 응급 처치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보건
	16		체육	2.응급 처치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심폐 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시연할 수 있다.	보건
	17	4.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체육	2.건강 문화	올바른 건강문화 선택	올바른 건강문화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	보건

○ 학생 성교육 계획서(예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법령 및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표준안에 따른 15시간을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하여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협력하여 실시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추진 계획」에 의거 성교육 집중 이수학년(저학년 1개 학년, 고학년 1개 학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숙박형 체험활동 등 교외활동 전 담임교사에 의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1학년 성교육 세부내용

월	주	학습주제	주요 학습내용	교과/창·체 (단원, 차시)	반영 방법	차시	비고
3	5	의사표현	이성친구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의사표현하기	슬생 (봄1.학교에 가면)	연계	1/15	
	5	친구의 성과 예절	이성친구와의 상황별 인사말 이해하기	즐생 (봄1.학교에 가면)	연계	2/15	
4	6	존중하는 태도	동성, 이성 간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 실천하기	즐생 (봄1.학교에 가면)	연계	3/15	
	6	이성친구와의 관계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 받아들이기	바생 (봄1.학교에 가면)	연계	4-5/15	
	8	몸의 구조와 생명의 소중함	생명은 소중해요(생명의 탄생)	바생 (봄-2.도란도란 봄동산)	연계	6/15	
	9	자라나는 우리 몸	내 몸의 성장과 변화 알기	창체(자율)	단독	7/15	
5	10	소중한 나의 몸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창체(자율)	단독	8/15	
	12	성폭력 예방	낯선 사람 접근 시 대처법	창체 (안전-3.소중한 나)	단독	9/15	
	12	가족의 성과 예절	가족 구성원 성별에 따른 예절	슬생 (여름-1.우리는 가족입니다)	연계	10/15	
	13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슬생 (여름-1. 우리는 가족입니다)	연계	11/15	
	13	성폭력 예방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 방법 알기	창체(자율)	단독	12/15	
	14	성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법 익히고 실천하기	창체(자율)	단독	13/15	
6	17	성평등	가족 행사를 함께해서 좋아요	슬생, 즐생 (여름-1. 우리는 가족입니다)	연계	14/15	
7	21	성폭력 예방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알기 (상대방으로부터 싫은 느낌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창체(자율)	단독	15/15	

총 합계- 15시간

2학년 성교육 세부내용

월	주	학습주제	주요 학습 내용	교과/창·체 (단원, 차시)	반영 방법	차시	비고
3	2	침착하고 슬기롭게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창체-안전 3-(1) 1/2	단독	1	
3	3	소중한 나의 몸	몸의 생김새 알아보기	슬생 봄-1. 4/13	연계	2	
3	4	소중한 나의 몸	생명의 소중함 알아보기	슬생 봄-1. 5/13	연계	3	
3	4	내 마음을 표현해요	상황이나 마음을 자세히 표현하기	국어 1-3. 8/11	연계	4	
3	5	자라나는 우리 몸	나의 출생 과정과 내 몸의 성장 변화 알기	창체 자율	단독	5	
4	1	자라나는 우리 몸	남녀의 신체적 특징과 생활방식 차이 알기	창체 자율	단독	6	
5	1	자라나는 우리 몸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창체 자율	단독	7	
5	2	나를 지켜요	나쁜 접촉 시 나를 지키는 방법 알기	창체-안전 3-(3) 2/4	단독	8	
5	3	다함께 안전한 세상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알기	창체 자율	단독	9	
5	3	사이좋은 가족과 친구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상황에 따른 역할변화 알기	슬생 여름-1. 7/14	연계	10~11	
5	3	다함께 안전한 세상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 알기1	창체 자율	단독	12	
5	4	사이좋은 가족과 친구	친구의 의미와 생각의 차이 존중하기	슬생 여름-1. 11/14	연계	13	
5	4	다함께 안전한 세상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 알기2	창체 자율	단독	14	
6	1	사이좋은 가족과 친구	가족에 대한 예절 지키기	슬생 여름-1. 13/14	연계	15	

총 합계- 15시간

3학년 성교육 세부내용

월	주	학습주제	주요 학습내용	교과/창·체 (단원, 차시)	반영 방법	차시	비고
3	1	성이해	우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친구사이의 신체 접촉 범위 알아보기)	도덕 / 1. 나아 너, 우리 함께(1/4)	연계	1/17	
3	2	성이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들과 남자 친구 유, 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나누기)	도덕 / 1. 나아 너, 우리 함께(2/4)	연계	2/17	
3	3	성이해	친구 사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보아요. (이성 친구들에게 지켜야 할 예절 알기)	도덕 / 1. 나아 너, 우리 함께(3/4)	연계	3/17	
3	4	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낯선 사람 조심하기)	창체	단독	4/17	
4	5	성폭력	성폭력예방 이성 친구간의 예절 알고 높임말 사용하여 대화하기	국어 / 3. 알맞은 높임표현(5/9)	연계	5/17	
4	8	성폭력	성폭력 예방법을 알려주는 편지쓰기	국어 /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6/9)	연계	6/17	
5	9	성이해	동물의 암수에 따른 생김새와 역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비교하기)	과학 / 3.동물의 한 살이(2/11)	연계	7/17	
5	9	성이해	화목한 가정을 알아보아요 (가족과 성폭력,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도덕 / 3. 사랑이 가득한 우리집(1/4)	연계	8/17	
5	10	성이해	가족 사랑을 실천해요 (내 몸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가족 사랑 실천하기)	도덕 / 3. 사랑이 가득한 우리집(2/4)	연계	9/17	
5	12	성이해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살이 알아보기 (아기의 탄생과 성장 알아보기)	과학 / 3.동물의 한 살이(8/11)	연계	10/17	
7	18	성이해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SNS 사용시 친구사이 예절 지키기)	사회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10/17)	연계	11/17	
7	19	성이해	성장에 따른 변화 확인하기	체육 / 1-1.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요(2/9)	연계	12/17	
7	19	성폭력	대중매체 속 성폭력의 실제 사례	체육 / 1-1.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요(3/9)	연계	13/17	
7	21	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싫은 느낌 단호하게 표현하기)	창체	단독	14/17	
9	3	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상황별 성폭력 예방법 알기)	창체	단독	15/17	
10	10	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알기)	창체	단독	16/17	
11	11	성이해	생명의 소중함 알아보기 (내 몸을 아낌으로써 생명의 소중함 느끼기)	도덕 /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1/4)	연계	17/17	

총 합계- 17시간

4학년 성교육 세부내용

월	주	학습주제	주요 학습내용	교과/창·체 (단원, 차시)	반영 방법	차시	비고
3	3	양성평등	남녀 간의 음의 높낮이 차이를 살펴보기	음악 (1. 음악이 좋아요, 방울꽃, 1/2)	연계	1	
3	3	양성평등	남녀 간의 음의 높낮이 차이를 이해하고 노래 부르기	음악 (1. 음악이 좋아요, 방울꽃, 2/2)	연계	2	
7	21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기	창체 (자율)	단독	3	
5	11	양성평등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동하여 농구하기	체육 (3. 경쟁(영역형 경쟁) 01 손으로 공을 다루어요, 13-15/15)	연계	4-6	
6	15	성폭력	성희롱의 종류 및 예방법 알아보기	창체 (자율활동)	단독	7	
9	2	양성평등	이성 간에 지켜야 할 예절 알아보기	도덕 (2. 공손하고 다정하게, 2/4)	연계	8~9	
9	3	양성평등	이성 간에 지켜야 할 예절 실천하기	도덕 (2. 공손하고 다정하게, 3/4)	연계	10	
11	11	성폭력	성폭력의 유형과 대처방법 알아보기	창체 (자율활동)	단독	11	
10	9	양성평등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동하여 축구하기	체육 (3. 경쟁(영역형 경쟁) 02 발로 공을 다루어요, 12-14/15)	연계	12~14	
10	9	양성평등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동하기	도덕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4/4)	연계	15	
총 합계- 15시간							

5학년 성교육

월	주	학습주제	주요 학습내용	교과/창·체 (단원, 차시)	반영 방법	차시	비고
3	3	인간발달	■ 내 몸과 마음의 성장·변화 이해 -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실과 (1단원, 6/18)	연계	1/15	
3	3		■ 사춘기의 생식기관의 이해 - 사춘기의 성	실과 (1단원, 7/18)	연계	2/15	
3	4		■ 태아의 발달과 출산 - 출산과정의 이해	실과 (1단원, 8/18)	연계	3/15	
4	1		■ 사춘기의 이해 - 건강한 사춘기 보내기	체육 (1단원, 2/11)	연계	4/15	
4	1		■ 사춘기와 성장 -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 알아보기	체육 (1단원, 3/11)	연계	5/15	
4	1		■ 사춘기와 성장 - 소중한 나의 몸을 스스로 관리하기	실과 (1단원, 9/18)	연계	6/15	
11	1	인간관계	■ 결혼과 행복한 가정 - 성역할의 의미와 역할분담	창체 (자율)	단독	7/15	
3	3	대처기술	■ 효과적인 의사소통 -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하기	국어 (1단원, 7/10)	연계	8/15	
3	3		■ 효과적인 의사소통 -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국어 (1단원, 8/10)	연계	9/15	
4	3		■ 효과적인 의사소통 - 나 전달법으로 대화 나누기	도덕 (2단원, 2/4)	연계	10/15	
9	3		■ 갈등을 해결하는 도덕적 방법 - 상황에 맞는 거절과 도움 요청	도덕 (5단원, 4/6)	연계	11/15	
9	3		■ 효과적인 의사소통 -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도덕 (5단원, 5/6)	연계	12/15	
11	3	사회와 문화 (성폭력)	■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과 대처 - 성폭력의 문제점 및 발생 장소 및 예방과 대처법	창체 (자율)	단독	13/15	
11	4		■ 강요된 행동과 성폭력의 대처 - 성폭력의 상황별 예방과 대처	창체 (자율)	단독	14/15	
11	5		■ 강요된 행동과 성폭력의 대처 - 성폭력 가해자의 특징과 음란물의 위험성	창체 (자율)	단독	15/15	
총 합계- 15시간							

6학년 성교육 세부내용

월	주	학습주제	주요 학습내용	교과/창·체 (단원, 차시)	반영 방법	차시	비고
3	1	성교육	소중한 나-자아 존중감 향상 시키기	도덕 (1단원, 1/4)	연계	1	
3	1	성폭력예방	성폭력의 의미 알아보기	창체 (자율활동, 1/3)	단독	2	
3	3	성폭력예방	성폭력의 종류 알아보기	창체 (자율활동, 2/3)	단독	3	
3	4	성폭력예방	성폭력 예방법 알아보기	창체 (자율활동, 3/3)	단독	4	
5	1	성교육	절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 - 성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도덕 (3단원, 1/4)	연계	5	
5	2	성교육	절제하는 마음 키우기 - 또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도덕 (3단원, 2/4)	연계	6	
6	1	성교육	상대방의 입장 되어 생각해보기	국어 (9단원, 4-5/9)	연계	7~8	
6	2	성교육	성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할 일	도덕 (4단원, 1/4)	연계	9	
6	3	성교육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원리 익히기	도덕 (4단원, 2/4)	연계	10~11	
6	4	성교육	양성평등에 관한 글쓰기	도덕 (4단원, 3/4)	연계	12	
11	2	성교육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도덕 (6단원, 1/4)	연계	13	
11	3	성교육	지구촌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덕 (6단원, 2/4)	연계	14	
11	4	성교육	다양한 문화 이해하고 나누기	도덕 (6단원, 3/4)	연계	15	
총 합계- 15시간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예시)

- 마약류 및 금연·약물 오남용예방 10시간(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을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담임, 교담, 보건교사가 협력하여 실시한다.
-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폭력·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응급처치 영역 내용 체계안)에 준하여 실시한다.

학년	차시	영역	관련 교과	단원	주제 및 학습내용	담당
1	1	약물오남용 예방	봄	2. 새싹 - 생명은 소중해요	- 작은 생명 보호 실천하기 - 폐의약품을 바르게 버리는 방법	담임
	2	약물오남용 예방	학교	1. 우리학교 - 학교의 이곳저곳을 찾아서	- 보건실의 위치와 하는 일 - 안전한 약의 보관	
	3	약물오남용 예방	이웃	1. 가게 - 어디에서 살까요	- 우리 동네 약국의 위치와 하는 일 - 몸이 아플 때 증상 표현하기	
	4	약물오남용 예방	가을	2. 추석 - 나의 추석	- 명절에 아팠던 경험 나누기 - 증상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요	
	5	흡연 예방	가족	1.우리가족 - 우리 가족 이야기	- 가족의 소중함 - 흡연하는 가족을 설득하기	
	6	흡연 예방	여름	1. 여름이 왔어요 - 여름철 건강 지키기	- 여름방학 동안 지킬 일 - 간접흡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	
	7	흡연 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의 피해 알아보기 - 흡연예방 뮤지컬 시청하기	보건
	8	음주 예방	여름	1. 여름이 왔어요 - 배려하는 여름 생활	- 음주운전의 피해	담임
	9	음주 예방	국어1-가	4. 기분을 말해요	- 술 마신 어른을 볼 때 나의 기분 표현하기	
	10	마약 예방	이웃	1. 이웃 - 함께 배려해요	-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알기 - 마약의 사회적 피해 알기	
학년	차시	영역	관련 교과	단원	주제 및 학습내용	담당
2	1	약물오남용 예방	나	1. 나의 몸 - 내 몸을 깨끗이 해요	- 손씻기의 중요성 - 안약을 넣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이유	담임
	2	약물오남용 예방	나	1. 나의 몸 - 내 몸이 아파요	- 몸이 아플 때 행동요령 - 몸이 아플 때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3	약물오남용 예방	나	1. 나의 몸 - 병원에 가요	- 병원의 종류와 하는 일 - 일상생활에서 다쳤던 경험과 적절한 치료방법 나누기	
	4	약물오남용 예방	나	1. 나의 몸 - 병원 놀이	- 병원의 진료과정 - 처방전에 담긴 내용	
	5	흡연 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의 피해 알아보기 - 흡연예방 뮤지컬 시청하기	보건
	6	흡연 예방	국어2-2 (가)	1. 생각을 나타내어요	- 간접흡연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어른에게 편지쓰기	담임

	7	흡연 예방	나	2. 나의 꿈 - 나는 특별해요	-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한 노력들 - 청소년기 흡연 유혹 거절하기	
	8	음주 예방	국어2-1 (나)	7. 이렇게 생각해요	-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금주해야 하는 까닭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9	마약 예방	국어2-1 (나)	7. 이렇게 생각해요	- 마약의 사회적 피해 알기	
	10	음주 예방	국어2-2 (나)	8. 의견이 있어요	- 음주운전하는 어른에게 부탁하는 글 쓰기	

학년	차시	영역	관련 교과	단원	주제 및 학습내용	담당
3	1	약물오남용예방	체육	1. 건강활동	- 가정 안전사고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 우리집 구급약품의 유통기한 확인하기	담임
	2	약물오남용예방	체육	5.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약물남용 예방하기	
	3	약물오남용예방	도덕 -1학기	5. 내 힘으로 잘해요	- 희망병원놀이 - 스트레스를 유해약물로 풀려는 사람에게 처방전(해결방법) 써 주기	
	4	흡연예방	사회 -1학기	3. 사람들이 모이는 곳	-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의 모습 예상하기 -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금연해야 하는 까닭	보건
	5	흡연예방	사회 -2학기	3. 다양한 생활 모습	- 사회변화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 -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하는 문화로의 변화	
	6	흡연 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의 피해 알아보기 - 뮤지컬 시청하기	담임
	7	흡연 예방	도덕 -2학기	7. 함께 사는 세상	- 공공장소에서의 바람직한 행동 -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이유	
	8	음주 예방	국어 -1학기	5. 내용을 간추려요	-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술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 꾸며쓰기	
	9	음주 예방	도덕 -1학기	3. 사랑이 가득한 우리집	- 화목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예절 - 과음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마약 예방	도덕 -2학기	5. 내 힘으로 잘해요	- 희망병원놀이 - 마약의 사회적 피해 알기	

학년	차시	영역	관련 교과	단원	주제 및 학습내용	담당
4	1	약물오남용예방	국어 1-나	7.의견과 근거	■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글쓰기 - 마약을 법으로 단속하는 까닭과 그 근거 쓰기	담임
	2	약물오남용예방	국어 2-나	7. 의견과 근거	■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 약의 바른 사용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 만들기	
	3	약물오남용예방	국어 2-나	8. 정보를 나누어요	■ 알리고 싶은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 “카페인 중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	
	4	약물오남용예방	국어 2-나	8. 정보를 나누어요	■ 약물오남용예방 - 올바른 약의 사용법 - 약물오남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5	흡연 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의 피해 알아보기 - 뮤지컬, 골든벨 참여하기	보건
6	흡연 예방	국어 2-가	2. 제안하고 실천하고	- 읽은 이를 생각하며 담배 피는 어른에게 금연을 제안하는 글 쓰기	담임
7	흡연 예방	국어 2-나	8. 정보를 나누어요	■ 알리고 싶은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 "담배 유해성분"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	
8	음주 예방	사회 -1학기	3.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함께하는 주민자치 - 학교나 학급에 음주 학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알아보기	
9	음주 예방	국어 2-가	2. 제안하고 실천하고	- 읽은 이를 생각하며 음주하는 청소년에게 금연을 제안하는 글 쓰기	
10	마약 예방	국어 2-나	8. 정보를 나누어요	■ 알리고 싶은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 마약의 사회적 피해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	

학년	차시	영역	관련 교과	단원	주제 및 학습내용	담당
5	1	약물 오남용 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약, 바르게 사용해요 - 약물 오남용 피해 줄이는 방법	담임
	2	약물 오남용 예방	실과	2. 생활 속의 동식물 - 동식물 자원과 환경	- 폐의약품을 바르게 폐기하는 방법	
	3	흡연 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의 피해 알아보기 - 금연선포식, 문예행사 참여하기	보건
	4	흡연 예방	국어 -1학기	10. 글쓰기의 과정	-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조사하여 글쓰기 - 평생금연선언문 써보기	담임
	5	흡연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이 우리 몸 속 기관에 미치는 영향 - 뮤지컬, 골든벨 참여하기	보건
	6	흡연 예방	도덕	2. 감정, 내 안에 있는 친구	- 친한 친구의 흡연 권유를 거절하기 - 서로의 감정 손상 없이 거부하기	담임
	7	흡연 예방	도덕	7. 모두 함께 지켜요	- 금연관련 법규알기(절대금연구역) - 간접흡연의 경험 나누기	
	8	음주 예방	창체	술, 건강에 해로워요	- 생활 속의 법규, 규칙을 잘 지키기 -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하는 이유	
	9	음주 예방	과학 -2학기	1. 우리 몸	- 술이 우리 몸 속 기관에 미치는 영향	
	10	마약 예방	창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	- 마약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 알기	보건

학년	차시	영역	관련 교과	단원	주제 및 학습내용	담당
6	1	약물오남용 예방	도덕	2. 알맞은 행동으로	-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 올바른 약의 사용	담임
	2	약물오남용 예방	실과	쾌적한 주거와 생활자원의 관리	- 폐의약품을 바르게 폐기하는 방법	

3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1. 건강활동 -바르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약물 오남용의 의미 알아보기 - 약물 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보건
3	흡연 예방	국어 -1학기	11. 뉴스의 관점	- 금연구역 확대/담뱃값 인상 사안에 대해 흡연자 관점, 비흡연자 관점에서 뉴스 만들기	담임
4	흡연 예방	체육	1. 건강활동 -바르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 금연환경!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5	흡연 예방	도덕	5. 배려하고 봉사하는 우리	-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 - 간접흡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보건
6	흡연 예방	체육	1. 건강활동 -바르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흡연 유혹 거절하기	
7	흡연 예방	창체 -보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예방	- 흡연의 피해알아보기 - 금연선포식, 문예행사 참여하기	담임
8	음주 예방	도덕	2. 알맞은 행동으로	- 생활 속에서 법규, 규칙을 잘 지키기 -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하는 이유	
9	음주 예방	체육	1. 건강활동 -바르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음주 홍보대사가 될래요	보건
10	마약 예방	창체 -보건	3.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예방	- 마약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 알기	

○ 응급처치 교육 계획(예시)

- 심폐소생술[학교보건법] 제9조2 및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폭력·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응급처치 영역 내용체계안)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 체험학습(자율활동),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담임, 보건교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실시한다.

대상	대상	교육내용	실시방법
학생	1~4학년	심폐소생술 교육	유관기관 연계 및 담임교사가 실시
	5학년	기도폐쇄 응급처치	-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교과시간을 활용하여 보건교사가 실시
		상황별 응급처치	
	6학년	심폐소생술 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전교생	상황별 응급처치	보건실 방문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보건교육 예산 사용 계획(예시)

구분	품목	예산
교육자료 구입비 (1,000,000)	하임리히 트레이너	200,000원
	성교육 자료구입 (월경컵, 생리대, 생리팬티, 탐폰)	300,000원
	성교육 도서구입	300,000원
	비폭력 감정 욕구카드(자석)	100,000원
	미덕카드	1000,000원
건강증진 교육자료 구입비 (400,000)	하임리히 트레이너	400,000원
성교육 외부강사비 (2,450,000원)	6학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420,000원
	6학년 또래 성폭력 예방교육	420,000원
	1학년 경계 존중교육	700,000원
	2학년 경계 존중교육	490,000원
	3학년 경계 존중교육	420,000원

기대효과

- 건강의 가치를 알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관리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를 것이다.
-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약물의 의미와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약물 오남용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유지에 미치는 폐해를 깨달아 약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보건교육 계획(중학교)

목적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여 올바른 건강 지식과 자원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한다.
- 나. 단순히 건강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닌 적정기능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 다. 건강한 삶을 선택하고 유지하며 유용한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건강수준과 환경 개선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수행한다.

방침

- 효율적인 보건교육 실시와 보건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는 능력 신장
-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으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

근거

- 「학교보건법」제15조의 2항, 제9조, 제9조의 2항
- 「광주광역시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②

세부 추진 계획

1. 영역별 보건교육

영역	대상학년	시간	방법
성교육(성폭력 예방 포함)	전학년	15시간 이상(3시간)	창체, 보건, 관련교과 연계
흡연·음주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 포함)	전학년	10시간 이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실습	전학년	1시간 이상(실습 포함)	
개인위생, 구강보건, 비만 예방, 감염병 예방, 계절건강, 정신건강, 불균형체형 예방, 질병 예방 등 건강증진 교육	전학년	수시	

2. 흡연,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가.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

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② 중·고등학교의 음주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 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③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6.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2)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가급적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제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3)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된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 하고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나.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

다. 가정통신문, 보건소식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가정과의 연계지도 강화

■ 학년별 흡연,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예시)

학년	차시	영역	관련교과	주제 및 학습내용	비고
1학년	1	약물오남용 예방	보건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약물오남용의 이해	
	2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안전/경쟁(음주와 건강)	
	3	약물오남용 예방	보건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	
	4	약물오남용 예방	국어	4. 성장으로가는 길 (1) 문학작품을 통한 삶의 성찰	
	5	약물오남용 예방	기술·가정	1. 청소년의 이해 - 건강한 친구 관계	
	6	약물오남용 예방	음악1	5. 흥겨운 우리 음악 - 음악과 사회의 만남	
	7	흡연 예방	자율	흡연예방부스	
	8	흡연 예방	보건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예방과 대처	
	9	흡연 예방	미술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 다양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이용한 표현	
	10	마약류 예방교육	외부강사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마약류의 이해	
2학년	1	약물오남용 예방	영어	3. Ideas for Saving the Earth 올바른 거절방법	
	2~4	약물오남용 예방	기술가정	II. 가정생활과 안전	3차시
	5~6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표현 / 안전	3차시
	7	흡연 예방	과학	1. 물질의 구성	
	8	흡연 예방	미술	시각 문화로 소통하기 - 생활 속에서 시각 문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	
	9	흡연 예방	자율	- 흡연예방부스	
	10	마약류 예방교육	외부강사	- 중독예방 교육	
3학년	1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건강	
	2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경쟁	
	3	약물오남용 예방	음악	대상의 특징을 살려 - 정물, 풍경, 인물 등 다양한 대상의 특징을 살려 표현	2차시
	4	약물오남용 예방	과학	자극과 반응 -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5	약물오남용 예방	국어	4. 함께 살아가는 우리	
	6	약물오남용 예방	영어	6. Stories for All time	
	7	흡연 예방	국어	1. 문제를 해결하는 힘	
	9	흡연 예방	자율	- 흡연예방부스	
	10	마약류 예방교육	외부강사	- 중독예방 교육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학생 대상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전교직원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학년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학년	차시	영역	관련교과	단원	주제 및 학습내용	비고
1 학년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	Ⅲ. 안전과 응급처치	- 생활 속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2					
	3					
2 학년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체육	Ⅱ-1.스포츠 활동 안전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3 학년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체육	Ⅱ-1.스포츠 활동 안전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4. 성교육

<1학년>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과 관련 사항		
영역	내용요소	교과	단원명	시수
인간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성 • 생식기관과 2차 성징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체 이미지 • 청소년기의 성 심리 •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가	I. 자주적인 삶을 위한 나의 발달	4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이성교제 			
대처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건과 방법 			
성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과 출산 • 피임의 종류와 방법 			
사회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성폭력 예방과 대처 •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대단원3. 3-1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2
인간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의 성 심리 •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사회	IV.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VII. 개인과 사회생활 VIII. 문화의 이해	8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가치와 유형 • 바람직한 이성교제 •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 			
성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 			
사회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 문제 분석 •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대처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건과 방법 	국어	3단원 능동적인 언어생활 4단원 다양한 의사소통	2
사회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과 대처 		읽고 대화하고	1
인간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성 • 생식기관과 2차 성징 •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체육	•청소년기의 변화와 바람직한 성문화	2
사회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과 대처 			
사회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창체	•성폭력 예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과 대처 	창체	•디지털 성폭력 등 성폭력 예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의 이해 	창체	•성매매 예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방지법 			
총 시수				22

〈2학년〉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과 관련 사항		
영역	내용요소	교과	단원명	시수
대처기술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건과 방법	국어	• 공감하며 대화하기	1
인간관계	• 사랑의 가치와 유형		• 동백꽃	1
대처기술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건과 방법		• 담화의 개념과 특성	1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건과 방법		• 의미를 나누는 대화	1
인간관계	• 사랑의 가치와 유형 • 바람직한 이성교제 •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	음악	두도막 형식	1
성행동	•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	역사	5. 세계 대전과 사회변동 6.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2
대처 기술	• 성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도덕	• 평화적 갈등 해결 - 갈등의 의미와 특징, 원인 - 평화적 갈등 해결의 중요성	1
대처기술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건과 방법		평화적 갈등 해결	1
사회와 문화	•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평화적 갈등 해결	1
	•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폭력의 문제	1
	• 성매매의 이해		정보통신윤리	1
		도덕적 시민	1	
사회와 문화	•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창체	• 성폭력 예방	1
	• 성폭력 예방과 대처	창체	• 디지털 성폭력 등 성폭력 예방	1
	• 성매매의 이해 • 성매매 방지법	창체	• 성매매 예방	1
총 시수				16

〈3학년〉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과 관련 사항		
영역	내용요소	교과	단원명	시수
인간발달	•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가사	3-1. 성폭력과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 3-2. 가정폭력과 가정폭력의 대처 및 지원 방안	6
대처기술	• 성적 의사결정 • 성에 대한 자기주장과 거절방법 • 성 문제로 인한 위기관리			
성행동	•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 • 성 욕구의 조절			
사회와 문화	•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성폭력 예방과 대처 •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 성매매의 이해			
인간관계	•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	역사	3-1.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다	1
			4-1-(2) 혼인과 가족제도	1
사회와 문화	•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성폭력 예방과 대처	체육	1-3 청소년기의 건강과 성	2
인간관계	• 사랑의 가치와 유형	미술	5. 디자인의 탄생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2
사회와 문화	•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성건강	• 임신과 출산 • 피임의 종류와 방법	과학	5-4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	3
사회와 문화	•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창체	• 성폭력 예방	1
	• 성폭력 예방과 대처	창체	• 디지털 성폭력 등 성폭력 예방	1
	• 성매매의 이해 • 성매매 방지법	창체	• 성매매 예방	1
총 시수				18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학교보건교육을 통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 건강의 가치와 개념, 지식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와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

보건교육 계획(고등학교)

1 보건교육계획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6. 11.]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제2항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법령, 지침에 의해 반영되어야 할 보건교육·성교육>

1. 초등학교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 이수하여야 함(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20(2017.1.9.))
2. 보건교과를 선택한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성교육, 금연, 응급심폐소생술, 정신건강 등을 모두 보건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보건교육 실시
3. 보건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중·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법령에서 정한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4. 법령과 지침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
 - 가. 성교육 15시간(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법령 및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성폭력예방교육(3시간)포함,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나. 심폐소생술「학교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교직원: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학교보건법」 제9조2 ('16.12.20. 신설 '17.3.21. 시행))
 - 1) 학 생 : 보건교육, 안전교육 연계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 소생술 교육 실시
 - 2) 교직원 :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이론교육(2시간) + 실습교육(2시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 다. 질병예방, 신종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등을 편성·운영(학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 라. 보건교육의 체계적 운영(학교보건법)
 - 마. 금연·약물 오·남용예방 10시간(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별표6)
 - 바.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폭력·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응급처치영역 내용체계안) 학교 교육 계획 반영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증가 및 청소년 약물중독 정신건강 등 사회적 현안문제와 관련, 교육부 지침으로『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도록 시달림.

가 목적

건강의 가치를 알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 1)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습득한다.
- 2) 스스로를 건강의 주체로 인식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 3)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한 행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진다.
- 4)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기술을 습득한다.

나 성격

- 1) 본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 2) 본 교육과정은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 자원과 사회 문화의 총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건강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교과이다.

다 관련근거 법률

- 1)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 2) 학교보건법 제 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 오용,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등을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학교보건법 제 9조의 2(보건교육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방침

- 1) 보건교육은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 2) 보건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실시하며 성교육의 경우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

준안을 근거,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은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년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

- 3) 보건교사는 관련교과 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보건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며 지원한다.
- 4)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15시간 운영하고,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0시간은 관련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관련 교과교사가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반드시 최소 한 개 이상의 학년에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5)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닌 건강에 대한 태도,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수·학습으로 이론과 실천이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 6) 학생들이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생 건강의 기본을 다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7)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고, 전체 학습,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등의 학습모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
- 8) 건강의 위해 요인에 직면했을 때, 자기 주도적인 합리적 의사 결정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마 운영계획

영역	대상학년	시간	방법
보건교육	3학년	2단위(68차시)	선택교과(보건)
성교육 (성폭력, 성매매 예방)	전학년	15시간 (3시간, 1시간)	창체 및 범교과 연계
약물의 오남용 및 흡연, 음주, 마약류 예방	전학년	10시간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전학년	실습포함 1시간	

바 선택교과(보건) 운영 계획 - 선택과목(보건) 평가계획 및 진도표에 따름

학기	대단원명	중단원명	단원/주제	차시/누적	비고
1학기	1.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1-1. 건강증진	1. 건강의 이해와 건강 증진	2/2	
			2. 건강 지표의 평가, 건강관리계획	2/4	

학기	대단원명	중단원명	단원/주제	차시/누적	비고
2 학 기	II.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1-2. 생활 주기	1. 생애 주기별 건강요구	2/6	
		1-3. 질병 예방	1. 만성 질환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	2/8	
			2. 신체 기관별 건강문제와 건강관리	2/10	
			3. 감염병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	2/12	
		2-1. 약물·담배·술	1.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	2/14	
			2. 흡연과 음주의 문제점	2/16	
		2-2. 성과 건강	1. 건강한 성	2/18	
			2. 사랑과 성적 자기 결정권	2/20	
			3. 성희롱·성폭력·성매매	2/22	
			4. 성문화와 성의식	2/24	
			5. 성 매개 감염병	2/26	
			6. 건강한 임신과 출산	2/28	
		2-3. 정서와 정신건강	1.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인간관계	2/30	
			2. 감정의 이해와 대처	2/32	
			3. 자살과 위기관리	2/34	
	4.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4. 건강생활 기술	1. 의사소통과 건강	2/36		
		2. 공동체 건강 의사 결정과 적용	2/38		
		3. 건강 증진을 위한 옹호와 참여	2/40		
	III. 안전과 응급처치	3-1. 생활 안전	1.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2/42	
			2. 차별, 학대,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44	
			3.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과 직업병의 관계	2/46	
		3-2. 응급처치	1. 생활 속의 응급처치	2/48	
			2.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2/50	
			3. 응급 의료 체계와 안전사고 예방	2/52	
	IV. 건강 자원과 사회 문화	4-1. 건강권과 건강 자원	1.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법적 권리 및 제도	2/54	
			2. 건강 및 안전 정보와 자원	2/56	
3. 건강 윤리와 건강가치			2/58		
4. 건강의 사회적 쟁점과 건강 정책 참여			2/60		
5.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장 제도			2/62		
4-2. 건강문화		1. 건강 신념, 관행, 미디어와 건강	2/64		
		2.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화	2/66		
		3. 문화의 다양성과 건강 정책	2/68		

2 성교육계획(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가 기본방침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 내실화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 의식, 성 태도 확립

〈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목적〉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성 건강에 필요한 요소와 기능을 습득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성 건강의 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생명의 탄생과 태아의 성장과정, 남녀의 신체적 차이, 사춘기의 성과 신체·심리적 변화, 남녀의 성과 심리 특성, 출산과정의 이해, 자신의 신체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건강한 성 의식을 갖는다.
- 나. 가족의 소중함, 결혼으로 형성되는 가정과 가족의 관계, 동성 친구와 이성친구 사귀는 방법 등을 이해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 능력을 지닌다.
- 다. 올바른 몸가짐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자기주장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알며, 자기주장과 다를 때 거절하는 방법을 익혀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한다.
- 라. 남녀 생식기의 위생과 관리, 생식기의 청결한 관리와 옷차림, 사춘기 생리현상의 이해와 건강관리, 에이즈의 감염과 예방 등을 알고 건강한 성 생활을 위해 이를 생활화 한다.
- 마. 집안에서의 역할분담, 성 차이와 성역할의 이해, 성적 강요행동에 대한 대처, 성역할의 변화와 양성평등, 성폭력의 의미와 올바른 대처 방법 등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터넷의 편리성과 위험성,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 음란물의 문제점 등을 바르게 인식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나 운영계획

□ 운영방침

초·중등 교육과정, 관련법령 및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구 분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 생	성교육 15시간 (성폭력 3시간 포함)		
교직원	연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학부모		연 1시간 이상	

□ 운영계획

※ 학교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대상	방법	시기	교육시간	비고
학생(전교생)	범교과연계 창체 연계	연중	15시간	성폭력 예방교육(3시간) 성매매 예방교육(1시간) 창체시간으로 단독 운영
교직원	대면교육	3월	2시간	외부강사 초빙 통합교육형태로 2시간 진행
	원격교육	연중	3시간	교직원 원격의무연수B 의무
학부모	유인물 교육	3월		교육과정설명회, 홈페이지 활용
결과보고	여가부예방교육통합관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가부장관에 보고			

□ 상세 운영계획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적용)

-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학생 성교육 연계교과 반영 차시 (*범교과 교육과정 연계에 따라 변동 가능)

범교과 학습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담당교과(시수)		담당교과(시수)		담당교과(시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성교육 (학교안전7대표 준안 내 성폭력 3시간 인정 가능)(10) 성폭력 예방교육(3), 성매매 예방교육(1) 단독시간으로 창·체 연계	국어(2) 통합과학(1) 체육(1) 통합사회(1) 한국사(1)	국어(2) 통합과학(1) 체육(1) 통합사회(1)	문학(2) 미술창작(1) 정치와법(1) 가정과학(2)	독서(2) 미술창작(1) 가정과학(2)	미적분(1) 심화국어(1) 고전과윤리(1) 실용영어(1) 생명과학Ⅱ(2)	미적분(1) 심화국어(1) 고전과윤리(1) 실용영어(1) 생명과학Ⅱ(2)	

□ 지도상의 유의점

- 성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 표준안으로 제시된 내용체계는 보편적, 일반적, 포괄적 기준을 준거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 학교의 실태와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교과 융합을 통한 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진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과학이나 보건 등의 일부 내용으로서의 성교육이 아니라, 성교육 시간으로서 융합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교육은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찰과 면담, 개인차에 따른 요구나 궁금증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개별화 지도에 힘쓴다.
- 성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사가 학생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교육에 앞서 교사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성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는 남녀의 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 간에 조그마한 편견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성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교사는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고민이나 성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갖는다.
- 대부분 은밀한 방법으로 습득한 학생들의 성지식이 오개념(誤概念)인 것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교사는 수업 전에 학습자의 성 관련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수업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잘못 형성된 오개념에 대해서도 지도될 수 있도록 한다.
-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사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실천중심의 학습내용이 전개되도록 한다.
- 성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가치의 주입보다는 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다가치(多價値) 안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 성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중시하여 수업과정 중에도 성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수업전개의 도입부나 전개과정에서 동기유발로 활용한다.
- 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내용의 평가, 지도 방법의 평가, 성취결과의 평가를 포함하여 성교육이 전개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성교육의 평가방법은 관찰법, 질문법, 면담법,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방법, 산출물 평가법, 토의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수업현장의 개선을 위한 환류(feed-back)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 내실 있는 보건교육과정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으로 자기건강관리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을 반영한 성교육으로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 배려와 존중이 생활화되는 학교문화 정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3 흡연,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가 목적

- 1) 약물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을 증진토록 한다.
- 2) 교직원 및 학생의 금연 및 흡연예방운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흡연동기를 차단하고 정신적·신체적 발달의 저해요인을 방지한다.
- 3)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내에는 담배연기를 사라지게 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로 운영하여 교육의 목적을 높인다.

나 기본방침

- 1) 체계적인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학년별로 연간 10시간 실시한다.
- 2)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전 교육과정 영역에서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관련 내용을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3) 흡연예방교육사업(기본형)을 매 년 운영하고 다양한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흡연예방교육사업을 참고한다.)
- 4) 교육부 7대 안전교육 내용체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학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한다.
- 5)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표본집단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전 실시하여 보건교육 시 활용하고 사전 접근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시행 2019.11.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5호. 2019.11.1., 제정])

- 6) 교직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장은 교내 흡연실 설치를 금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 7) 흡연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8)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 6) 교내 흡연 관련 학칙(규정) 제정 운영한다.

다 세부 추진 계획

추진사항	추진내용	대상	시기
학교흡연예방교육 사업 운영-기본형	학교흡연예방교육 운영 계획에 의함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연중
흡연실태조사	흡연실태 설문조사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3~4월
흡연, 음주, 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창체 및 관련교과와 연계하여 흡연,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범교과 및 창체 운영계획 참고 축제기간 체험부스 운영	전교생	연중
교직원연수	금연, 금주 및 건강관리 연수	전직원	5월
가정과 연계	학부모 회의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전교생	연중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

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5분은 뇌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즉, 4분 이내에 심장이 멈춘 몸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뇌손상이 없고 일상생활로 정상적이게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호흡이 돌아와도 뇌가 손상된다면 식물인간이나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나 기본방침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한다.

다 추진방향

□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1)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적극 반영
- 2)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 범교과 교육과정과 연계 참고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생의 안전 확보

- 1) 「학교보건법」제9조의2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6.12.20.개정 '17.3.21.시행)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2)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당해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 3) 전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12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4)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교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직원의 경우: 교육청 개별 연수를 통해 이수하도록 안내함.

5)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기준 (외부교육의 경우 기준에 부합해야 인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p><비고></p> <p>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p> <p>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p> <p>* 광주시교육연수원 심폐소생술 이론 2시간 이수 조건하에 실습 2시간 인정됨(2023년)</p>			

□ 교육일정 (※학교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대상	학년	일시(시간)		방법	담당	비고
학생	전교생	연중	1시간	체육교과연계	체육교과교사	
교직원	모든 교직원 매년대상자	연중	3시간	이론교육 2시간	의무연수이수 (이론2시간포함됨)	외부기 관연계
		7월 중		실습교육 2시간	외부강사	

□ 기록관리 실시

- 1) 심폐소생술 담당자(보건교사)는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이수현황을 자세히 기록보관 (이수관련대장, 기타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록관리)
- 2)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내용, 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사항 확인 후 보관 (*보건교사에게 증빙자료제출)
- 3) 관리대장기록 후 내부결재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학교 관리 대장[예시]

번호	성명	연수과정명	연수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연수 시간
1	000	심폐소생술교육		20230000	20230000	3
2	000	심폐소생술교육				4

4) '학교 자체' 추진 연수시 심폐소생술 연수 담당자는 등록부,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록·보관

2024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					
교육 일시/장소 : 2021.00.00.. 00:00~00: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직군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2024학년도 (보건) 교과 진도 계획 (예시)

교과구분	보통교과				전문교과	지도 학급 : (3)학년 (6,7,8,9)반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교양		지도 교사 : 000 (인)	단위 수 : (2)단위			
				○			총 시수 : 17주×(2)단위=(34)			
월	주	기간	중요 행사	단원	성취 기준	참여형 수업	핵심 역량	평가 방법	계획 예정 시수	실시 실시 시수
3	1	2-3	입학식 및 개학식(2일)	I.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1. 건강중진 건강의 영향요인	[12보01-01]	강의식 발표	건강사회문화 공동체역시	자가평가	1	1
	2	6-10		2. 건강지표 이해와 활용	[12보01-02]	강의식 발표	건강정보자원 활용능력	관찰법	2	3
	3	13-17	학교설명회(16일)	2. 생활주기 건강한 생애 주기	[12보02-01]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2	5
	4	20-24	전국연합력력평가 (1,2,3년/23일)	3. 질병예방 만성질환	[12보03-01]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2	7
	5	27-31		2. 신체 기관별 건강 스마트폰 건전한 사용 방법(7대 안전)	[12보03-02]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관찰법	2	9
4	6	3-7		3. 감염병 예방관리	[12보03-03]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2	11
	7	10-14	영어듣기평가 (11-13일) 솔빛한마당(14일)	대단원 마무리		강의식 발표	문제해결 자기주도	포트폴리오	1	12
	8	17-21		II. 생활 속 건강한 선택 약물·담배·술 약물 오·남용 예방	[12보04-01]	강의식 발표	건강의사 결정능력	자기평가	2	14
	9	24-28		2. 흡연, 음주 폐해와 건강한 선택	[12보04-02]	강의식 발표	건강의사 결정능력	포트폴리오	2	16
5	10	1-5	1차 지필평가(1-4일) 어린이날(5일)						0	16
	11	8-12	체험학습 (1,2년/12일)	III. 안전과 응급처치 2. 응급처치 생활 속의 응급처치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하기(7대 안전)	[12보09-01]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2	18

5	12	15-19	수업공개일 (16-17일)	2.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12보09-02]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동료평가	2	20
	13	22-26	교육과정설명회 (25일)	3. 구조 활동 각종 재난 유형별 대응 방법 알기(7대 안전) 평화통일교육	[12보09-03]	강의식 발표	건강정보자원 활용능력	자기평가	2	22
	14	29-6/2	전국연합학력평가 (1,2,3년/1일)	Ⅲ. 안전과 응급처치 생활안전 건강·안전 위험요인 평가와 안전 문화 운동 이론치의 안전한 사용과 점검 방법 알아보기(7대 안전)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인식하기(7대 안전)	[12보08-01]	강의식 발표	건강안전위험 인식능력	자기평가	2	24
6	15	5-9	재량휴업일(5일) 현충일(6일)	2. 차별·학대·폭력 예방 아동학대 문제점 인식하기(7대 안전) 어울림 갈등 해결 방법 찾기(7대 안전) 어울림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안 찾기(7대 안전)	[12보08-02]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1	25
	16	12-16		3. 직업병의 예방과 대처 산업재해의 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7대 안전)	[12보08-03]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2	27
	17	19-23		대단원 마침표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포트 폴리오	1	28
	18	26-30	2차지필고사 (29-30일)	3. 정서·정신 건강 자아 존중감과 회복 탄력성	[12보06-01]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1	29
7	19	3-7	2차지필고사 (3-4일)	2. 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 대처	[12보06-02]	강의식 발표	건강 관리능력	자기평가	1	30
	20	10-14	전국연합학력평가 (3년/11일)	3. 자살과 위기관리	[12보06-03]	강의식 발표	건강정보자원 활용능력	자기평가	2	32
	21	17-19	방학식(19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교과융합 프로젝트 진행(3학년)	협력학습	문제해결력	관찰법	2	34
계									34	

* 참여형 수업 :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교과 간 융합 학습, 토의·토론, 발표 등 학생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배움 중심수업

* 광주 9대 핵심역량 :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생태 인문학적 감수성, 소통능력, 시민 의식

* 평가방법 : 논술, 구술,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관찰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2024학년도 3학년 1학기 보건 평가 계획 (예시)

담당교사 000 (인)

평가 목적

- 가. 보건에서 배우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건강의 기본 개념 이해, 탐구 능력, 건강한 삶 실천을 위해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는 태도를 균형 있게 평가하여 학습 지도 방법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 다. 보건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 학습 참여의 적극성, 협동성,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창의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라. 각 단계별로 작성한 활동 내용을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기본 방향

- 가.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닌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수·학습으로 이론과 실천이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 나. 건강 행위 실천 교육은 학생들이 지적인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생 건강의 기본을 다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고, 전체 학습,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등의 학습 조직을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
- 라. 기존의 강의식 교실 수업, 교사 중심의 일방향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 토론 수업, 소집단 협력 수업, 다양한 매체 이용 수업, 학생 중심의 쌍방향 의사소통 수업, 다양한 장소 이용 수업, 지역 사회 전문가와의 협력 수업과 체험 위주 수업 등으로 진행한다.
- 마. 신체 구조와 기능, 질병 예방과 치료 중심에서 탈피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즉 행위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개인의 발달 과정에 따라 건강과 안녕을 추구한다. 자신과 타인, 개인과 가족, 사회관계에서의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중시하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 방법적 지식(건강 행위 선택기술, 의사소통 기술, 의사 결정 기술, 건강 증진 참여 및 옹호 활동, 건강 정보·자원 활용 등)을 강조한다.

바. 건강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건강 위해요인에 직면했을 때, 자기 주도적인 합리적 의사결정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사. 각 단원의 평가는 단원별 학습 목표에 맞도록 평가 요소를 작성하여 미리 알려준 뒤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를 염두에 두고 총괄 평가를 하게 되면 각 단계에서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소홀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

구분	수행평가		학기말 환산총점
	영역		
	출결	수업 참여도	
배점	50	50	100
환산점 (비율)	50%	50%	
평가 시기	수시	수시	

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P(이수)'로 표시한다.

수행평가 세부 기준

1) 출결

평가 시기	평가 유형	평가 기준					반영 비율	만점	
		평가 척도 및 배점							
수시	출결	구분	A	B	C	D	E	50%	50
		기준	수업의 80% 이상 출석	수업의 70% 이상 출석	수업의 60% 이상 출석	수업의 50% 이상 출석	수업의 50% 미만 출석		
		점수	50	45	40	35	30		

2) 수업참여도

평가 시기	평가 유형	성취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척도 및 배점	반영 비율	만점					
수시	수업 참여도	[12보 01-01] ~ [12보11-03]	(가) 평가항목 1) 수업 내용에 대한 개념을 학습지에 잘 정리 하였는가? 2)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였는가? 3) 발표 및 학습지를 성실하게 제작하였는가? 4) 모둠활동 시 모둠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나) 평가방법 및 배점			50%	50			
			구분	A	B			C	D	E
			기준	위 평가항목 모두 우수함	위 평가항목 중 3개 이상 우수함			위 평가항목 중 2개 이상 우수함	위 평가항목 모두 보통임	위 평가항목 모두 미흡함
점수	50	45	40	35	30					

결시자 성적 처리 방안

- 수행평가 불참 학생은 불참 사유(공결, 병결, 기타결 등)에 관계없이 등교 후 추가로 1회 기회를 부여하여 성적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행평가에 응시하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학생의 의사에 의해 해당 영역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영역 수강학생 최하점의 차하점(-1점)을 부여한다.
- 평가의 성격상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거나 평가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해당 영역 수강학생 최하점의 차하점(-1점)을 부여한다.
- 코로나 확진 및 격리에 의해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등교시 응시 기회를 1회 부여하고 이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역 수강학생 최하점의 차하점(-1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재응시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평가 영역 전체 수강 학생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 전입생 : 학기 중 전입학생이 발생 시 전입 전 학교의 수행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전입 후 전입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점수가 없는 경우 전입 이후 얻은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전입 시점에 해당 수행평가가 종료된 경우 위의 3)항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특수학생 : 일반학생과 같이 성적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사유 등으로 수행평가 실시가 어려울 시 해당 영역 수강학생 응시생 최하점의 차하점(-1)을 부여한다.
- 기타(위탁교육 취소 등) : 위의 5)항의 전입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그 외의 기타 사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과목이수기준

이수/미이수 기준	이수	미이수
영역별 수행평가 점수의 합	60점 이상	60점 미만
<p>보건 교과는 교양 교과로서 과목명(보건), 이수 단위(2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 'P'를 각각 입력하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p>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1) 건강 증진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1-01]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건강에 대한 총체적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건강 영향 요인과 관련지어 가족·지역 사회 등 공동체의 건강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상	세 가지 관점에 따른 건강개념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	관점에 따른 건강개념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하	관점에 따른 건강개념과 건강 영향 요인을 한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12보01-02] 지역 사회, 국가 수준에서 활용되는 건강 지표의 의미를 해석하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수준별 건강 지표를 비교·분석한다.	상	건강 지표의 의미를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	건강 지표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하	건강 지표의 의미를 한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다.

(2) 생활 주기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2-01] 생애 주기별 건강 요구 및 지지 요인과 장애 요인을 탐색하여 개인, 가족, 사회 수준의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전략을 제시한다.	상	생애 주기별 건강 요구와 그에 필요한 건강 증진 활동을 세 가지 이상 세울 수 있다.
	중	생애 주기별 건강요구와 그에 필요한 건강 증진 활동을 두 가지 세울 수 있다.
	하	생애 주기별 건강 요구와 그에 필요한 건강 증진 활동을 한 가지 세울 수 있다.

(3) 질병 예방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3-01] 비만, 암 등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해 탐색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사회적 방안을 제시한다.	상	만성 질환의 의미와 예방법을 개인 및 공동체 차원의 관리 방법을 세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중	만성 질환의 의미와 예방법을 개인 및 공동체 차원의 관리 방법을 두 가지 말 할 수 있다.
	하	만성 질환의 의미와 예방법을 개인 및 공동체 차원의 관리 방법을 한 가지 말 할 수 있다.
[12보03-02] 신체 기관별 주요 질병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신체 기관별 건강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상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중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을 대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을 제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12보03-03] 감염병 발생 기전 및 증상을 탐색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병문안 예절 등 개인적, 사회적 대처 방안을 제안한다.	상	감염병 발생 경로와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감염병 발생 경로와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	감염병 발생 경로와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약물·담배·술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4-01] 약물 오·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제시한다.	상	약물 오·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세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중	약물 오·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알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약물 오·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알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04-02] 흡연·음주의 폐해와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흡연·음주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옹호한다.	상	흡연·음주의 폐해와 위험 요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흡연·음주의 예방과 대처방법을 세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중	흡연·음주의 폐해와 위험 요인 조사에 참여하며 흡연·음주의 예방과 대처방법을 두 가지 정도 제시할 수 있다.
	하	흡연·음주의 폐해와 위험 요인 조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흡연·음주의 예방과 대처방법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5) 성 건강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5-01] 섹슈얼리티의 개념과 생애 주기별 성적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섹슈얼리티를 갖기 위한 개인,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한다.	상	성의 개념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	성의 개념 두세 가지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	성의 개념 한두 가지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보05-02] 이성 간의 사랑 및 성적 자기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기준을 제시한다.	상	바람직한 이성 교제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적절한 기준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바람직한 이성 교제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적절한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바람직한 이성 교제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적절한 기준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05-03]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유발 요인 및 관련 법·정책과 관련지어 개인·공동체·국가 수준의 예방 대책을 토론한다.	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을 각각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을 각각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2보05-04] 성 문화, 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개인·공동체·국가 수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상	잘못된 성 문화, 성 의식의 개선 방안을 개인·사회·국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잘못된 성 문화, 성 의식의 개선 방안을 개인·사회·국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하	잘못된 성 문화, 성 의식의 개선 방안을 개인·사회·국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12보05-05] 성 매개 감염병의 특성과 현황을 탐색하고, 개인·사회적 측면에서 예방법을 제시한다.	상	성 매개 감염병의 예방법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성 매개 감염병의 예방법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두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하	성 매개 감염병의 예방법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12보05-06] 준비된 임신과 피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혼모, 저출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영향 요인을 탐색하며, 국가별 미혼모,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지원 대책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한다.	상	우리나라 미혼모 및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우리나라 미혼모 및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 한두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하	우리나라 미혼모 및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6) 정서·정신 건강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6-01] 자아존중감과 회복 탄력성의 관계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상	자아 존중감과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자아 존중감과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자아 존중감과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06-02] 불안·우울 등의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자원 활용, 환경 개선 등 개인·사회적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상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각각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각각 두 가지씩 설명할 수 있다.
	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설명할 수 있다.
[12보06-03] 자살을 유발하는 개인·사회적 위험 요인과 관련지어 개인·사회적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상	자살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과 대처하는 방안을 각각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자살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과 대처하는 방안을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하	자살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과 대처하는 방안을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12보06-04]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정신 건강 증진 및 편견 해소 방안을 고안한다.	상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편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세 가지 이상 설명하고 편견의 해소 방안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편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두 가지씩 설명하고 편견의 해소 방안을 두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하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편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한 가지씩 설명하고 편견의 해소 방안을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7) 건강 생활 기술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7-01] 흡연·음주, 일탈 등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협상, 거절, 갈등 관리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상	건강증진을 위한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건강증진을 위한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하	건강증진을 위한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한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12보07-02] 공동체의 건강 의사 결정 사례를 합리성을 근거로 평가하고, 공동체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 대안 탐색, 조정, 계획 수립, 실천 및 평가 등 의사 결정 방안을 제시한다.	상	공동체의 건강 의사 결정 여섯 단계를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공동체의 건강 의사 결정 여섯 단계를 모두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	공동체의 건강 의사 결정 여섯 단계를 모두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보07-03]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직면한 건강 문제를 탐색하고, 건강 정보·자원의 활용과 관련지어 건강 증진 옹호 활동에 참여한다.	상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직면한 건강 문제를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직면한 건강 문제를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직면한 건강 문제를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8) 생활 안전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8-01]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적·물리적·사회적 영향 요인 등을 평가하고, 개인·공동체·국가 수준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상	안전 문화 형성 방안을 개인, 사회,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	안전 문화 형성 방안을 개인, 사회,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씩 설명할 수 있다.
	하	안전 문화 형성 방안을 개인, 사회,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한 가지씩 설명할 수 있다.
[12보08-02] 차별, 학대, 폭력에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법 및 정책과 관련지어 공동체·국가 수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상	차별, 학대, 폭력에 대처 방안을 개인,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각각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	차별, 학대, 폭력에 대처 방안을 개인,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각각 두 가지씩 설명할 수 있다.
	하	차별, 학대, 폭력에 대처 방안을 개인,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한 가지씩 설명할 수 있다.
[12보08-03] 근로 조건, 작업 환경 등과 직업병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요 직업병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직업병의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상	직업병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직업병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두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하	직업병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9) 응급 처치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09-01] 상황별 사례와 연계하여 생활 속 응급 처치의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상황별 응급 처치 방법을 올바르게 시연한다.	상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단계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중 한두 가지가 빠지거나 순서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보09-02] 심폐소생술의 적용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을 시연한다.	상	심폐소생술의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알고 심장충격기를 적용한 심폐소생술을 정확한 순서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	심폐소생술의 개념과 원리를 대략적으로 알고 심장충격기를 적용한 심폐소생술을 대략적인 순서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	심폐소생술의 개념과 원리를 제한적으로 알고 심장충격기를 적용한 심폐소생술을 제한적인 순서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보09-03] 응급 의료 체계와 응급 의료 기관의 이용 방법을 탐색하고, 테러, 화재, 붕괴, 각종 체험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위한 안전수칙을 제시한다.	상	응급 의료체계의 개념을 알고 안전사고의 예방 및 구조를 위한 안전 수칙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응급 의료체계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안전사고의 예방 및 구조를 위한 안전 수칙을 두 가지 씩 제시할 수 있다.
	하	응급 의료체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알고 안전사고의 예방 및 구조를 위한 안전 수칙을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

(10) 건강권과 건강 자원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10-01] 헌법, 학교보건법, UN 아동권리협약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건강·안전권 보호 제도와 구제 절차를 평가한다.	상	건강권과 안전권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관련 법규를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건강권과 안전권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관련 법규를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건강권과 안전권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알고 관련 법규를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10-02] 건강 및 안전 정보 매체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 및 안전 자원을 탐색하여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을 평가한다.	상	건강관련 매체별 정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	건강관련 매체별 정보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두 가지 설명할 수 있다.
	하	건강관련 매체별 정보의 특성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다.
[12보10-03]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평가하고, 계층·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상	생명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계층, 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생명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계층, 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생명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계층, 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10-04]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공동체 건강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례와 관련지어 건강 정책 수립 시 집단 간의 관점 조정을 위한 이익 단체, 시민 단체, 언론, 전문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다.	상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해결 원리를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대략적으로 알고 해결 원리를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한적으로 알고 해결 원리를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10-05] 보건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장 제도의 특성을 비교하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여 주제적 선택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유형과 특징을 세 가지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중	보건의료 서비스의 유형과 특징을 두 가지 설명할 수 있다.
	하	보건의료 서비스의 유형과 특징을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다.

(11) 건강 문화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보11-01] 건강 신념·관행·미디어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건강증진 개선 방안에 적용한다.	상	건강 신념, 관행, 미디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건강증진 개선 방안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건강 신념, 관행, 미디어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건강증진 개선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건강 신념, 관행, 미디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알고 건강증진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11-02]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른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현행, 장기기증, 장례 문화 등의 현상을 조사·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상	현행,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현행,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현행,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12보11-03]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건강 정책 사례를 문화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건강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상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건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중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건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건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성취수준

(1) 건강 증진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총체적 건강의 측면에서 다양한 건강 영향 요인과 관련지어 공동체의 건강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 및 국가의 건강 지표를 분석하여 건강 증진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2) 생활 주기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생애 주기별로 수면, 섭식 등 생체 리듬과 건강 요구의 고려를 통해 지지 요인은 강화하고 장애 요인은 최소화하여 생애 주기별 개인, 가족, 사회의 건강 균형을 위한 건강 증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3) 질병 예방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비만, 암 등 주요 만성 질환의 현황을 탐색하고, 신체 기관별 주요 질병 및 감염병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여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근거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4) 약물·담배·술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을 탐구하며, 청소년기 흡연·음주의 폐해를 생리적, 발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위험 요인 대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5) 성 건강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간은 일생 동안 성적 존재임을 인식하며 사랑의 단계와 종류, 사랑과 책임, 성적 자기 결정권 등 성과 개인·사회적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성 매개 감염병의 현황과 문제점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탐색하며, 미혼모, 저출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 및 영향 요인과 관련지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6) 정서·정신 건강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을 강화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건강 위기와 관련지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며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자원을 평가하고 활용하여 편견에 대처할 수 있다.

(7) 건강 생활 기술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건강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 과정, 건강 증진 옹호 활동을 익혀서 발생 가능한 건강 문제 상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8) 생활 안전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일상생활에서 건강·안전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안전 문화 운동에 참여하고, 차별, 학대, 폭력, 직업병의 의미와 예방, 대처 방법을 익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9) 응급 처치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응급 처치와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응급 의료 체계와 이용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 적용할 수 있다.

(10) 건강권과 건강 자원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및 자원의 탐색과 적절한 활용을 통해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이해하고, 건강 문제의 윤리적 쟁점, 건강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 및 대안 형성 과정, 보건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장 제도 등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1) 건강 문화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P	건강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건강 정책을 이해하고 건강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

- 가.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나.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 평가 도구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다. 평가 결과에 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활용하도록 한다.

요양호학생 관리 계획

목 적

- 학기 초 학생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응급상황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방 침

- 학기 초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부모 전화상담,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요보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근 거

- 202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세부 추진 계획

1. 건강이상학생 파악

가. 기초조사

- 1) 학생 건강실태조사[붙임1] : 2024년 3월 2일 ~ 3월 8일
-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 2024년 3월 8일 ~ 3월 20일

나. 학습도움반 건강상태 현황

- 다. 건강검사를 통하여 발견되는 학생
- 라. 담임교사를 통한 건강이상 학생
- 마. 보건실 방문을 통해 발견되는 학생
- 바. 요양호학생 기준

[기준]

- 계속적으로 보호 및 관찰을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
-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완치된 난치병, 수술로 인하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 경우는 제외

[예시]

- 약이나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어 병원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 현재 면역 억제제나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있는 경우
- 심혈관계 질환(심장병,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학생.
- 신장계통의 질환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 혹은 매일 투약 중인 학생
- 간(肝)질환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B형간염 보균자
- 만성 소모성 질환(결핵, 당뇨 등)으로 규칙적인 치료 및 투약 중인 학생
- 뇌수술, 뇌전증(간질), 정서장애, 기타 심한 행동장애(틱장애)가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를 요하는 학생

2. 건강이상학생 선정

- 가. 1차 : 담임교사 면담을 통해 선별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보건실에 제출
건강실태조사서는 반드시 보호자 날인을 받도록 하며,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제출한 근거자료이므로 담임이 1년간 보관
- 나. 2차 : 보건교사는 제출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전체를 상담 후 선별하여 “요양호 학생명단” 작성 후 최종 결재권자 결재

3. 건강이상학생 관리

- 가. 기초조사 결과 선정된 요양호 학생 명단과 학생 개인별 주의사항을 교직원에게 제공하여 학습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2]
- 1) 주요 요양호 질환 대처방법 교직원 연수 : 2024년 3월 15일(수) [붙임3]
(★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강조)
- 나. 요보호자 상담 기록 -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그 치료에 따른 관리 및 교육을 제공한다.
- 다. 재발 혹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라. 학부모 상담실시 - 전화상담 및 통신문 발송. 건강관리 대상자의 학부모 및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건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건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또는 Wee클래스 등) 상담 실시 - 필요시 수시
- 바. 필요한 경우 관리학생의 진학 시, 진학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사.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결과를 가정으로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의의 검진을 받도록 하며 그 결과를 받아 지속적인 추후관리 실시한다.

기대효과

- 건강상 요보호 학생을 선별 관리하여 요양호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학교 응급상황 관리 계획

목적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방침

- 응급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피해의 최소화 및 학교 내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응급환자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교직원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 명시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신속한 이송 및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 가)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http://www.kj-emc.or.kr/>, 1339번)
 - 응급처치 요령, 병원 안내, 질병 상담
 - 나)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http://fire119.gjcity.net/>, 119)
 - 학생 및 교사 대상 응급 처치 교육 및 119구급대 출동(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 응급환자 발생 시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연락망을 사전 확보 둔다.
- 응급환자 발생 시 교직원 행동강령 비치 및 기타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근거

-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세부 추진 계획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관리

○ 응급상황 관리반 구성



○ 보건실 부재 시 직무 대행자 구성

* 예시이며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

1 순위		2 순위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0000	000	0000	000

* 직무 대행자가 부재한 경우 각 반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무사가 직무를 함께 대행한다.

* 보건실 관리 : 보건교사 부재 시 원칙적으로 내복약은 금하고, 외용약품(연고, 밴드 등)은 임시 관리자가 사용하되 사용 현황을 보건 일지에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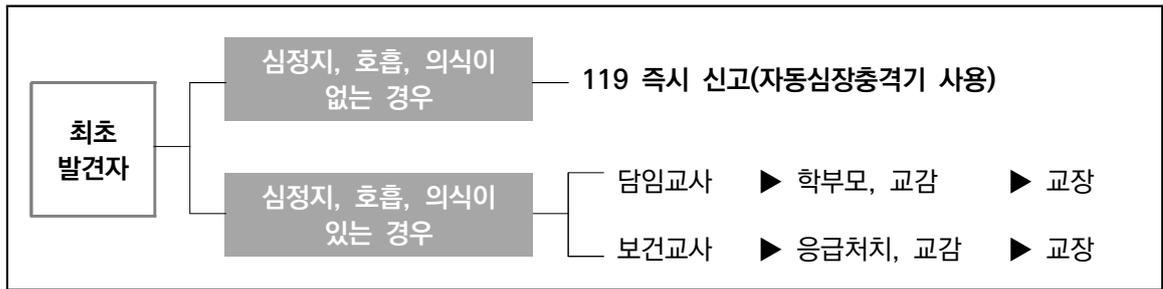
○ 응급상황 관리반 역할

응급 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또는 보건 업무 담당교사, 심폐소생술 연수 이수 교사 2인 이상 •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 담당
환자 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따라 이송담당 교직원의 부재를 예상하여 2인 이상 • 담임교사(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건교사가 응급환자이송에 동행하는 경우, 단순외상 처치의 경우 직무 대행자가 대행한다.
행정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대체인력은 보건실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숙지 • 대책반장이 명함
행정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 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 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 응급상황 시 업무분장

구 분	환자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환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 황	의식장애 · 호흡곤란 · 약한맥박 · 심정지 · 다량출혈 · 개방골절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 · 단순골절 · 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및 업무분담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파악 및 지시 · 보고 등 •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 대체 인력 배정 	
	보건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병원 이송 시 동행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담임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환자 병원 이송 • 치료 후 보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 • 필요시 병원 이송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치료 후 보상 안내
	생활 지도 (학년)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 및 생활지도 •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 	
	이송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병원 이송 •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행정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 •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응급사고 후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모든 사안은 『응급환자 기록지』 작성·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은 추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보관 • 담임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출장 처리 • 입원 등으로 학생이 학교 복귀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치료 경과에 대해 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 응급환자 신고 및 보고체계



1. 최초발견자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는 환자 상태가 심정지, 호흡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요청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 응급환자 최초발견자는 일차적으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심폐소생술 시행
- 보건교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관리, 초기 상황을 보건교사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2.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

- 보건교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조치하고, 상태여부에 따라 신속한 응급구조 요청
- ※ 심폐소생술 연수 이수교사는 보건교사를 도와 응급처치에 참여

3.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

- 담임교사는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학교나 이송 병원으로 오도록 하며 계속적인 연락을 취함

4. 담임교사(보건교사)는 교감(학교장)에게 상황 보고 후 현장 보조

- 담임교사(보건교사)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 교감에게 보고
- 교감은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할 분담·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체계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을 지휘하고, 학교장에게 상황을 보고 및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부재에 따른 조치
- 담임교사는 응급현장의 보건교사를 보조하고, 보호자 및 학교담당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이송병원 및 환자상태 변화 등에 대해 상황 전달

5. 병원이송

- 구급차에 인계하여 환자 이송
- 담임교사(또는 학년부장교사)는 의료기관까지 동행하여 학부모에게 인계 전까지 의료 기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행
- ※ 환자 상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교사 동행

6. 병원이송까지의 과정 기록 및 보고

-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을 응급환자 기록지에 따라 자세히 기록·보관
- 사고발생 최초 발견교사 (담임, 현장임장교사 등) 사안 발생 관련 내용 기록

○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현훈)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채장염 등), 광범위한 화상(신체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절단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 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산부인과계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응급상황으로 같음하여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증상

1.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의식소실이 있는 경우

-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거나, 묻는 말에 횡설수설 하는 등 의식변화가 있거나,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구토 등을 보이는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2.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얼굴이 창백하거나,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경우
3.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고, 외상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4.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5.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또는 안구 부상인 경우
6. 척추 등의 부상으로 신체 부위에 감각이상을 보이는 경우
7. 중등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 (표면적 18% 이상)
8.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이상인 경우
9. 개방골절,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

☞ 평소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사안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에 따라 신속조치

○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구축

- 주요 의료기관, 후송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긴밀한 연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명(예시)	전화번호
전남대병원 응급실	220-5555
조선대병원 응급실	220-3119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119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한 연락망 구축

1. 병원 의뢰가 필요한 경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녀의 응급 후송 및 상병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 후 인계되어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고 담임과 보건교사가 보관한다.
 - 가. 1차 연락자 및 연락번호 : 주로 학부모 및 가족
 - 나. 학부모 권한 대행자 및 연락번호 : 주로 친·인척 및 이웃(2차, 3차 연락자)
 - 다. 유질환자의 경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명
 - 라. 학부모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 인근 병원 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여도 된다는 동의서 확인 서명
3. 학년 초 가정통신을 통한 <학생 건강실태 조사>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필요 사항을 학부모로부터 받는다(응급 환자 관리 동의서 포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실시
- 보건교사 부재 시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1. 부재사유 : 연수, 출장, 보건 수업, 연가, 병가 등 기타 사유
 2. 직무대행자 : 계획서에 명시된 대행자
 3. 응급사항 발생 시 : 담임교사는 교감, 교무부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대처한다.
(귀가조치 또는 병원 후송 등)
 4. 응급상황이 아닌 단순 처치일 경우 구급함을 (예시: 교무실, 각 학년 교무실)에 비치하며 담임교사 및 직무 대행자가 보건업무를 대행한다.
 5.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시 해당 반 담임교사 또는 학교보건 인턴강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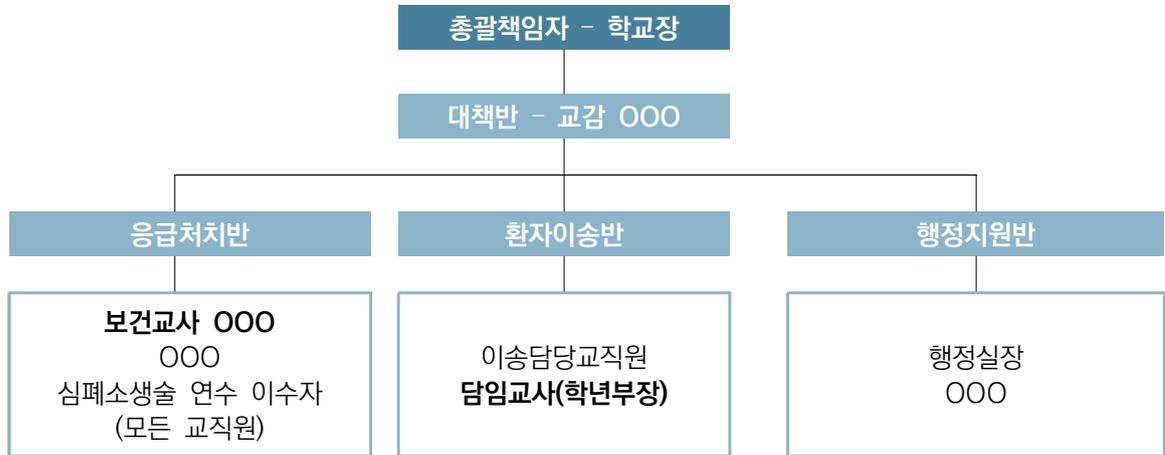
- 응급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피해의 최소화 및 학교 내 위기 관리 역량 강화
- 학교 내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참고자료1]

교내 응급관리 교직원 안내

1. 교내 응급관리체계 (2000.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의함)

○ 응급상황 관리반 구성



○ 응급상황 관리반 역할

응급 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 담당
환자 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건교사가 응급환자 이송에 동행하는 경우 보건실 관리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 보건실 대체인력은 보건실 관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
행정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 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 보건교사 부재 시 직무 대행 체제 구축 및 대책반

보건교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부재 시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 직무대행자를 학교장이 지명하여 대행하도록 한다.

- 부재 시(출장, 연가 등) : 학년 실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
- 보건교사 직무대행자

1 순위		2 순위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0000	000	0000	000

* 직무 대행자가 부재한 경우 각 반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무사가 직무를 함께 대행한다.

* 보건실 관리 : 보건교사 부재 시 원칙적으로 내복약은 금하고, 외용약품(연고, 밴드 등)은 임시 관리자가 사용하여 사용 현황을 보건 일지에 기록한다.

○ 역할 업무분담

구 분	환자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환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 황	의식장애 · 호흡곤란 · 약한맥박 · 심정지 · 다량출혈 · 개방골절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 · 단순골절 · 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및 업무분담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파악 및 지시 · 보고 등 •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 대체 인력 배정 	
	보건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병원 이송 시 동행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담임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환자 병원 이송 • 치료 후 보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 • 필요시 병원 이송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치료 후 보상 안내
	생활 지도 (학년)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 및 생활지도 •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 	
	이송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병원 이송 •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행정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 •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응급사고 후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모든 사안은 『응급환자 기록지』 작성·보관 ※ 기록은 추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보관 • 담임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출장 처리 • 입원 등으로 학생이 학교 복귀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치료 경과에 대해 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목적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한다.

방침

-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적극 반영한다.
2.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생의 안전 확보

1. 「학교보건법」제9조의2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12.20.개정 ‘17.3.21.시행)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체 가능)
2.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당해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3. 전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12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4.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 교내 연수 미이수 교직원의 경우: 교육청 개별 연수를 통해 이수하도록 안내

5.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기준 (외부 교육의 경우 기준에 부합해야 인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 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 광주시교육연수원 심폐소생술 이론 2시간 이수 조건하에 실습 2시간 인정됨			

근거

- 「학교보건법」제9조의2

세부 추진 계획

- 대상자별 교육계획 (예시안: 학교마다 창체, 범교과 연계 등 방법이 다름)

대상	학년	일시(시간)		방법	담당	비고
학생	전교생	연중	1시간	창체 또는 범교과 연계	담당 교사	
교직원	모든 교직원 매년대상자	연중	3시간	이론교육 2시간	의무연수이수 (이론2시간포함됨)	외부 기관 연계
		7월 중		실습교육 2시간	외부강사	

- 이수 대장(기록) 관리

1. 심폐소생술 담당자(보건교사)는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이수 현황을 자세히 기록 보관 (이수관련 대장, 기타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록관리)
2.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교육 내용, 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사항 확인 후 보관 (*보건교사에게 증빙자료제출)
3. 관리대장기록 후 내부결재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학교 관리 대장[서식 1 참조]

4. '학교 자체' 추진 연수 시 심폐소생술 연수 담당자는 등록부,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 카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록·보관[서식 2 참조]

기대효과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응급환자 발생 상황 시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피해의 최소화 및 학교 내 위기 관리 역량 강화
- 학교 내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보건실 운영 계획

목적

- 보건실방문을 통한 질병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학생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 보건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방침

- 보건실 이용학생의 건강상담 및 질병, 응급처치를 실시함.
- 질병 및 응급상황 악화 예상 시 학교 응급처치 체계를 가동함
- 학생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담임교사, 학부모등 협력체계를 구축함. (필요에 따라 학교 응급체계를 가동할 수 있음)

근거

- 학교보건법 제 3조, 제 11조, 제 15조의 2, 제 16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조, 제 23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2조

세부 추진 계획

- 보건실 직무 대행자 지정

보건수업 시	제1 직무대행자 (출장시)	제 2 직무대행자(출장시)
업무대행자	업무대행자	교감 (구급함을 교무실에 비치)

- 질병 치료 및 응급처치
 1. 학기초 건강상태 조사서에 기초한 문진 실시
 2. 학생들의 질병치료 및 응급처치 시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건강력 조사하기
 3. 질병 치료 및 응급처치 결과 추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4. 보건실의 치료와 처치는 입실순서에 따르나 응급상황 및 증상의 경중에 따라 처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5. 동일증상으로 반복하여 보건실을 방문하는 경우 건강상담 후 담임교사 알리기
6.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한 의료행위 실시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4)에 해당하는 의약품 투여)

○ 안정실 운영

1. 증상의 악화를 우려하여 안정이 필요할 경우 1교시(40분)을 원칙으로 함.
 - 가. 1교시 이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함.
 - 나. 발열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병원 진료 후 가정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함.
2. 안정실 이용자가 많은 경우 증상의 경중에 따라 우선 안정을 취하게 함.
3. 안정실을 이용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안정실 침구류는 필요시 세탁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
5. 학생이 안정실을 이용할 때는 건강상태를 주의하여 살핌.
6. 보건교사 부재시(보건수업, 출장 등) 원칙적으로 안정실을 이용할 수 없으나 담당교사의 지도 하에 이용가능.

○ 의약품관리

1. 의약품 수량 및 유효기관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함.
2.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사고예방.
3. 학생이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의 의약품을 사용함.

기대효과

- 보건실방문을 통한 질병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학생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기대됨
- 보건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이 기대됨

별첨[참고자료]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17.>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구분	기준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2. 환자안정용 기구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신장계·체중계·줄자·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검이경(귀보개)·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핀셋,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4. 응급처치용 기구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의료용 쟁반·가제통·소독접시·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캘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6.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

※ 비고 :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목적

-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
-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기대됨

방침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감염병 관리조직 활성화로 감염병 발생 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 감염병에 필요한 물품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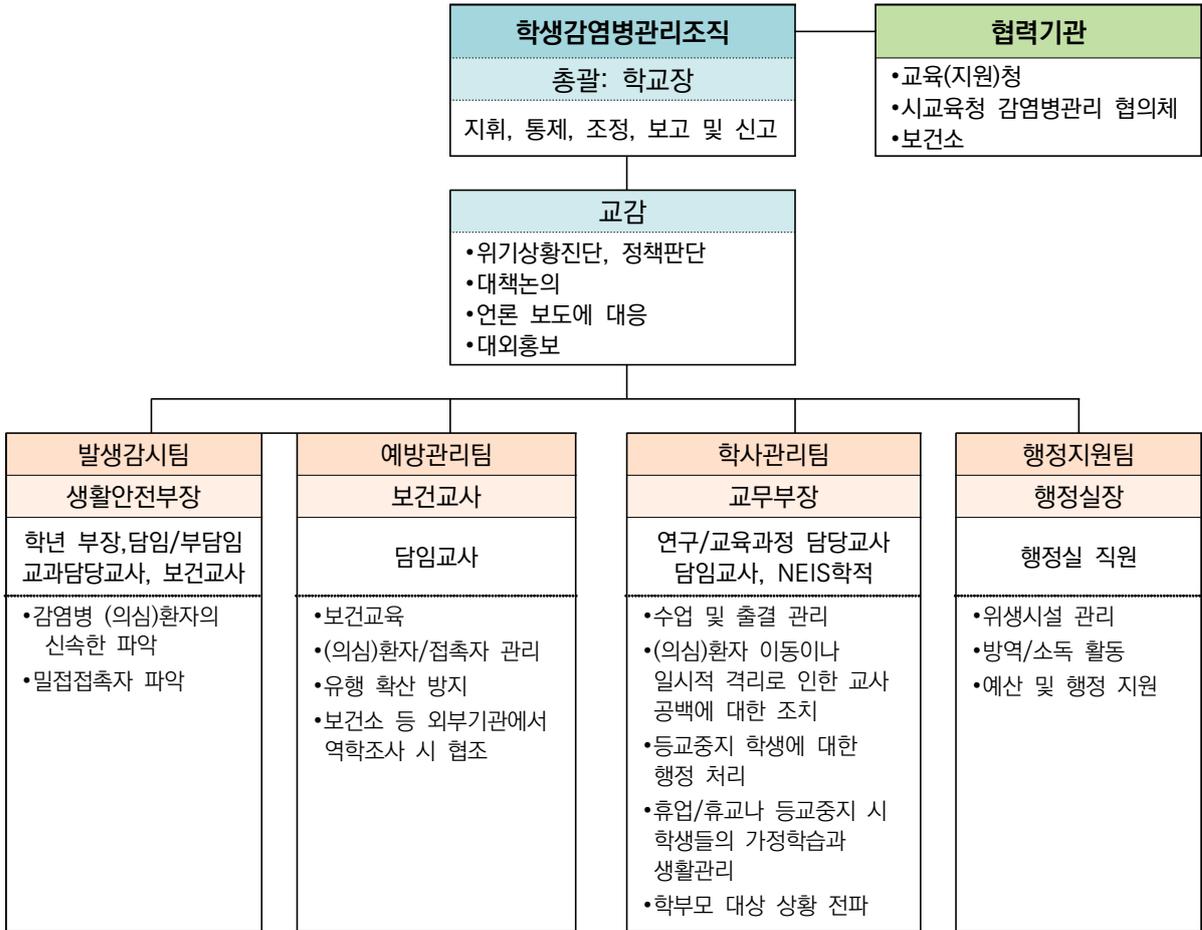
- [학교보건법] 제14조의 3(16.3.2 개정, 16.9.3. 시행)에 따라 [학생 감염병예방 1차 종합대책(16.~20)] 수립·추진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제작·배포(16년 12월)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년 5월)

1. 중점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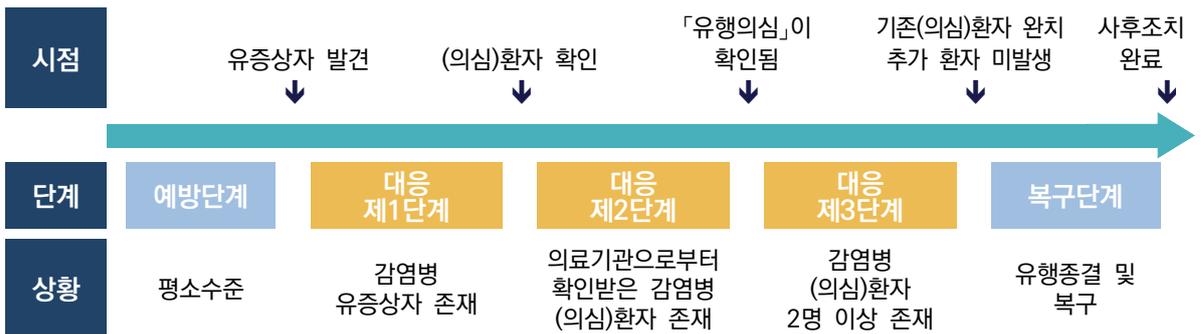
내 용	대 상	시 기	방 법	비 고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교직원	3월말까지 조직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도 -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구성	
감염병 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교직원	수시, 유행 시	가정통신문, 보건소식 등을 통해 개인위생관리 등 예방교육실시	법정 감염병 및 발생 감염병 등
감염병 학생관리	감염 학생	연중	*감염병 이환 학생 등교중지 조치 *감염 발생 현황 모니터링 (계속) *확산방지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감염병 관리 대장 관리 *neis 기록 관리	등교중지 및 수업결손 보충 (담임교사)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교직원	유행 판단시	*동일학급에 2명이상 발생시 *급성호흡기질환: 전체인원의 5%발생	*학교의 구성원은 유행종결 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
발생 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교육청에 neis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비법정감염병인 경우 학급당 2인 이상 발병한 경우 neis 보고(감염병 대응메뉴얼) - 집단으로 발병하였거나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대책 협의회를 즉시 구성하여 실태 파악 및 대책강구 - 제1군 감염병 및 홍역, 결핵 환자가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출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성질환 환자 발생: 등교중지(담임-출결처리, 학교-나이스 보고) - 출석부에 출석인정(출석인정표시:△)하고, 비교에 등교중지 사유(병명)를 입력한다. - 감염성질환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 - <나이스-학적-출결관리-출석인정-비고등록(해당일에 병명입력)>한다. 	

2. 감염병 예방 관리 조직

○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 조직 운영 시기 : 상시 조직화 및 **대응 제3단계부터 활성화**(필요시 조정 가능)



☑ **유행의심 기준

- ① 동일 학급에서 특정 감염병의 공통 증상(발열, 설사, 발진 등)을 호소하는 학생이 비슷한 시기에 2명 이상 확인 되는 경우(단, 평소에 해당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제외)
- ② 최대 잠복기 이내에 동일 학급에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③ 최초 (의심)환자와 동일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이동식 수업이나 급식 등 공통된 폭로에 노출되어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3. 주요증상에 따른 의심질환

주 증상	동반 증상	의심 질환*
구토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복통	황색포도알균감염증
기침	재채기, 맑은 콧물, 기침, 발열	감기
	2주 이상 마른 기침	결핵
	개 짖는 기침 소리, 신 목소리	급성 폐쇄성 후두염
	기침, 가래	기관지염
	2주 이상의 발작성 기침, 구토	백일해
	만성 기침, 누런 콧물, 두통	부비강염
	호흡곤란, 마른 기침, 천명	천식
	발열, 기침, 가슴 통증	하기도염(폐렴)
두통	발열, 심한 두통, 구토, 경련, 의식 저하	뇌수막염(세균성)
발열	피로감, 발열, 복부불쾌감, 오심, 구토	A형간염
	인후통, 기침, 콧물, 심한 근육통	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 인플루엔자)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주기적 반복	말라리아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족구병
	인후통, 기침, 콧물, 심한 근육통	인플루엔자
	발열, 복통, 쇠약감, 변비	장티푸스
	피부의 점상출혈,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특징적인 가피, 오한, 피부발진	쯔쯔가무시증
	설사, 쇠약감	파라티푸스
발진	전신에 수포성 발진, 가려움증	수두
	얼굴에서 급속도로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	풍진
	온몸의 홍반성 구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홍역
설사	복통, 설사, 열, 오심, 구토	살모넬라균 감염증
	고열, 복통, 설사, 혈변, 구토, 뒤무직	세균성 이질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발열, 구토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수양성 설사, 구토	콜레라
인후통	편도에 특징적인 회백색 위막	디프테리아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인플루엔자(독감)
침샘비대	주로 귀밑 통증, 발열	유행성이하선염
눈 충혈	안통, 눈곱, 눈물, 눈부심	급성출혈성결막염
	안통, 눈곱, 눈물, 눈부심	유행성각결막염

4. 주요 감염병 관리

감염병	임상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격리) 기간	잠복기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마스크 착용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등	항생제 치료 후 48시간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4일	○	○	×
감기균	발열,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중지 안함	병원체마다 다양 (보통 2~14일)	×	○	○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	○	○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권장	8~48시간	○	○	×
노로 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	○	×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발생 4주 후 전염성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	○	○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	○	○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	○	○
수막구균성 수막염	두통, 발열, 경부 경직, 오심, 구토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10일 (평균 3~4일)	○	○	○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3~7일	○	○	○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권장	5~7일	○	○	×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발생 3일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 14~18일)	○	○	○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1~4일 (평균 2일)	×	○	○
풍진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증상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긴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14~23일 (평균 16~18일)	○	○	○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반점	발진발생 4일전부터 발진발생 4일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7~21일 (평균 10~12일)	○	○	○

5. 법정 감염병 관리

※ 학생 감염병 정보 : www.schoolhealth.kr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최신판)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7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 균종(CRE)감염증 서. E형감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쓰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규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쳐.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침규곤달롬 하.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거.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러. 장관감염증 ²⁾ (노로바이러스)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³⁾ (마이코플라스마폐렴) 버.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⁴⁾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초6~중1 추가접종: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여/백신에따라 2-3회접종)

기대효과

-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이 기대됨
-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기대됨

별첨 [참고자료]

- 감염병 관리 대장
 - 나이스 감염병 관리로 대체가능, 보조장부로 활용할 수 있음.
- 교직원 연수자료
- 가정통신문(인플루엔자)

○ 감염병 관리 대장

- 나이스 감염병 관리로 대체가능, 보조장부로 활용할 수 있음.

[감염병 관리대장]

2024년도

보건실

연 번	학 년 반	성 명	질환명	발생일 (발견일)	역학조사 및 치료내용 등교중지기간(일)	완치일	연락처 (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학년도 교직원 연수자료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실시일	.
		연수자	

1. 등교중지 대상 질병

가. 법정감염병(115종- 2020.1.시행)- 뒷쪽

나. 비법정감염병 : 의사가 **전염력이 강하여 격리가 필요하다** 인정한 질병

2. 감염병 예방 및 발생대응

영역	내 용
예방	▶ 손씻기, 살균제 도포, 기침예절 교육 등 감염병 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발생시 즉각 대응	▶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서는 보건실로 보내시고, 가정에서 발견 시는, 학교에 오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도록 지도 ▶ 교육청보고: 나이스- 보건- 건강기록부관리- 감염병환자관리- 등록 ▶ 홍역,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등교 중지	등교중지: 질병발생→ 등교중지→ 완치 후 등교→ 출석인정처리 ▶ 등교중지시 학생이 수업결손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완치 후 등교시 병명, 치료, 등교중지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 제출(탑재) ▶ 등교중지 기간 동안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가지 않도록 지도.

3. 주요 감염병의 관리 방안

병 명	초 기 증 상	등교중지 기간
수두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 까지
홍역	발열, 발진, 구강점막에 좁쌀모양 흰점	열이 내리고서 3일까지 (발진 후 5일까지)
유행성이하선염	발열, 귀밑 부어오름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성홍열	발열, 딸기모양 혀	모든 증상이 없을 때까지
결핵	권태, 체중감소, 식은땀, 기침	치료시작 후 2주까지
인플루엔자	고열, 관절통, 호흡기 증상	해열제 복용없이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한 자
유행성각결막염 (법정감염병아님)	충혈, 눈부심 안구통증 (출결인정되지 않음)	의사로부터 격리 필요 소견서 필요(격리기간 명시)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최신판)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7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군중(CRE)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쓰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규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침구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PA) 감염증 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러. 장관감염증 ²⁾ (노로바이러스)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³⁾ (마이코플라스마폐렴) 버.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⁴⁾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초6~중1 추가접종: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여/백신에따라 2-3회접종)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안내	
--	------------------------	--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와 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되면서 인플루엔자(독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고, 갑작스러운 고열(38~40℃), 두통,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근육통, 전신 피로감 등 전신증상을 보이는 법정 제4급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플루엔자 질병 개요

구분	내 용
정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B, 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전파경로	•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됨 • 기침,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
주요증상	• 감염되면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남 • 갑작스러운 고열(38~40℃),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기침, 전신 피로감, 식욕 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전염기간	•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증상 발현 후 5~7일까지 • 단,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기간에 차이 발생함

2.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구분	내 용
예방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바른 손씻기 및 손소독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소독제(알코올 60% 이상) 20초 이상 비벼서 말리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적절한 환기,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휴식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진단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만으로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구별하기 어렵고, 진단검사를 통해 구별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 감염병입니다. • 등교중지 기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 -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료, 완치 후 병명, 격리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가지)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야 결석한 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격리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됨)

2022. 10. 27. 질병관리청

이맘때쯤 찾아오는 인플루엔자(독감)!

그냥 좀 아픈 감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플루엔자는 전염성 호흡기질환으로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6

2022. 10. 27.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독감) 증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며칠 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근육통

4/6

2022. 02호 오염결핵 질병관리청 KDCA

예방수칙 하나.

기침·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입과 코를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재채기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기!

4/8

2022. 02호 오염결핵 질병관리청 KDCA

예방수칙 둘.

손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3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 4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 5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 6 손을 밀: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엄지손가락 손끝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5/8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카드뉴스〉

20 . . .

초 등 학 교 장

학생 건강검사 계획

목적

-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 또는 건강상 질병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지도, 건강상담 등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한다.

방침

- 검진기관 선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학교장은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 가능. 검진 기관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또는 학교 내 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가능.
- 검진기관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며,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를 계약서류로 활용 가능.
- 건강검진 비용은 2024학년도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 후 건강기록부 NIES입력(담임교사) 및 관리(보건교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예방조치, 학부모 상담 등 적절한 보호 또는 대책을 강구한다.
- 건강조사를 통해 요양호 학생을 선정하고 개별 면담 등 꾸준히 관리한다.
- 저체중 및 비만 학생은 신체 발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파악하여, 희망자 대상으로 정상 체중 관리를 실시한다.
- 건강검진 결과 처리 및 건강검사 결과표는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 학년말 학생건강검사결과를 평가하여 학생건강증진 계획, 수립, 시행에 반영한다.

근거

- 「학교보건법」제7조 (건강검사 등),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건강검사 기록)
- 「학교건강검사규칙」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제4조, 제5조, 제6조(별도의 검사)

세부 추진 계획



○ 건강검진 추진 세부 내용 (해당 급별 사용)

검사종목	대 상 자	수수료(원)	검사기관	검사종류	실시시기 (확정일기록)	비고
건강검진	초1,4/중1/고1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지정 병원	보건복지부 고시 항목	상반기	
건강조사	전교생	·	학 교 장	자체조사표	3월	
소변검사	초2·3·5·6/ 중2,3/고2,3	단가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당, 단백, 잠혈, PH, 간기능, 케톤체	3~9월	
구강검사	초2·3·5·6/ 중2,3	단가	광주치과협회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치주질환 등	4~10월	특수학교 무료
결핵검사	고2.3	단가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디지털 흉부 X-선 촬영	3~9월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초6	단가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디지털 흉부 X-선 촬영	3~10월	
신체발달	초2·3·5·6	·	학 교 장	키, 몸무게, 체질량	3~6월	
시력검사	필요시	·	학 교 장	시력표 간이 측정	수시	학교장 판단하에 학교 자율로 시행

기대효과

○ 학생의 여러 가지 건강검사를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한다.

별첨 [참고자료]

1. 1·4학년 건강검진 기관 선정안(운영위심의)
2. 1·4학년 건강검진 기관 선정안(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 위원회의 및 회의록 양식)
3. 학생 건강기초조사 및 학생 응급 후송 관리 안내
4. 1·4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출장검진 예시)
5. 1·4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병문방문검진 예시)
6. 1·4 학년 학생건강검진 2차 검진 안내
7. 2·3·5·6학년 신체 발달 검사 결과 안내
8. 2·3·5·6학년 구강검진 결과 안내
9. 2·3·5·6학년 구강검진 미실시자 검진 안내
10. 소변검사 이상 소견자 재검사 안내

20 학년도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년 월 일

제안자 :

담당자 :

1. 제안 이유 및 근거

학생들의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지도, 건강상담 등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의거, 20 학년도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2. 제안 내용

- 가. 건강검진 기관 선정기준
- 나. 건강검진 실시방법 조사 결과
- 다. 건강검진 방법 장·단점
- 라. 건강검진 실시 방법

붙임 20 학년도 학생건강검진 기관선정(안) 1부.

1. 목적

성장기 학생에 대한 정기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 또는 건강상의 결함을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도, 건강상담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본교 학생건강검진 기관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 학년도 1·4학년 학생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근거

- 「학교보건법」제7조2(건강검사의 실시)
- 「학교보건법」제7조의3(건강검사 기록)
-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선정 기준

- 가. 건강검진 대상자 수용능력 확인 : 시설, 장비 등
- 나. 담당인력 확인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원인 경우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등
- 다. 결과처리 능력 확인 : 결과통보 등 전산처리 우수기관
- 라.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에 등록된 지역 병원
 -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에 합당한 곳 지정
- 마. 접근 용이성

4. 건강검진 비용 : 학교예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4.01.01. 시행

1학년	4학년	
일반학생	일반학생	비만학생
단가	단가	단가

5. 기관선정 심의 대상 병원 요약서

병원명	병원 분류	충족 여부	소재지	기 검진 년도	일반현황	비고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의거 건강검진기관에 등록된 지역 병원 중 본교에 제안서를 보낸 병원에 한함.

2. 1·4학년 건강검진 기관 선정안(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 위원회의)

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 위원회의

- 일시 :
- 장소 :
- 참석대상 : 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 위원
- 회의 등록부

위원명	참석유무(○,×)	확인(사인)	비고

학생건강검진기관 선정 위원 회의록

일시					
장소					
참석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간사
주제 : 1·4학년 학생건강검진 기관선정					

3. 학생 건강기초조사 및 학생 응급 후송 관리 안내

학생 건강기초조사 및 학생 응급 후송 관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강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함)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3월 일()까지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명	학년반	-	번호
응급 상황시 연락처	(1순위) (관계)	(2순위) (관계)	(3순위) (관계)

현재 건강문제로 학교생활에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록 란
<p style="text-align: center;">진단받은 질환 또는 수술</p> <p>(현재 주기적인 병원진료를 받거나 수술한 과거력을 자세히 기록) 예: 심장병, 천식, 경련이나 발작, 빈혈, 당뇨, 결핵, 암, 신장질환, 근골격계질환, ADHD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는 곳에 0표해 주세요. ㉠해당없음() ㉡완치되어 일상생활 가능함() ㉢관리요함() ※ ㉢의 경우 아래에 자세하게 기록 해주세요.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 진단명/수술명 : ▶ 진단/수술년도 : ▶ 현재 다니는 병원 : (일 에 번 진료 중) ▶ 현재 복용하는 약 이름 : ▶ 위 질병과 관련하여 학교에 반드시 알릴 주의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약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성 질환명 : 해당 질환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 알레르기 질환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 ▶ 알레르기 질환으로 지금 치료 중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알러지를 일으키는 약물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약품명이나 성분을 적어주세요. () ▶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뒷면에도 이어집니다)

4. 1·4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출장검진 예시)

1·4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출장검진)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하여 1·4학년 학생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본교는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전역에 거주함으로 인해 보호자 동반 검진 기관 방문의 어려움을 상부 기관에 호소하였는바, 이에 교육감 승인에 의해 검진기관 출장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검진 시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사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학생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한 첫 장의 <학생건강검사 결과 기록지>의 **분홍색 박스 안에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고, <문진표(초등학생용)>와 <구강검진 문진표>의 **인적사항 및 문진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작성 후 월 일까지 학교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학생건강검진 관련 내용이니 읽어보시고, 자녀의 원활한 검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검진대상 : 1·4학년 학생 전체
2. 검진일시
 - 1·4학년 : . . . () 10:30~ 종료까지
3. 검진장소 : 본교 강당
4. 검진기관 : 진경의료재단 효창병원
5. 검진비용 : 무료 (학교 예산 지출)
6. 유의사항
 - 4학년 학생 중 비만이 예상되는 경우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한 후 등교 요함.
 - 검진일 결석으로 인해 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 추후 효창병원을 개별 방문하여 검진 실시 요함.
7. 검진결과 : 출장검진 시 학교에서 학생편으로 가정에 결과 통지 예정
8. 검진항목

구 분	1학 년	4학 년		
		정 상	비만(경도비만 이상)	
검진항목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몸무게, 비만도 ▪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 능력 및 혈압 ▪ 구강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몸무게, 비만도 ▪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 및 혈압, 색각 ▪ 구강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몸무게, 비만도 ▪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 및 혈압 색각 ▪ 구강검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형 검사(ABO식, RH식) ▪ 소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검사 (요단백, 잠혈, 요당, p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검사 ▪ 소변검사
검진 당일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합니다.		비만이 예상되는 경우 금식 후 등교합니다.	
비고				

2024. . .

○○ 초 등 학 교 장

5. 1·4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병문방문검진 예시)

1학년, 4학년	
학생건강검진(구강검진) 실시 안내	

학부모님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2023학년도 1,4학년 학생들은 개인별로 학교에서 지정한 학생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록부에 기록합니다. 학생건강검진 기관은 아래 두 기관이 선정 되었으니, 다음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7월 4일(월)까지 학생건강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 대상 : 1,4학년 학생(보호자 동반)
2. 검진 기간 : 2024. . . ~ 2024. . .
3. 검진 항목 : 척추형태,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문진표 작성, 구강, 허리둘레와 혈액검사(4학년 비만아 해당)
 ※ 4학년 학생 중에서 키, 몸무게 측정 결과 비만 학생은 혈액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므로, 비만이 의심되는 학생은 검사 전 날 밤 9시부터 금식하고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4. 검진 비용 : 무료 (검진 완료 후 학교에서 부담)
5. 검진 절차 : 아래 검진기관 중에서 한 곳만 선택 방문 → 건강검진(구강검진)
 → 검사결과는 검진기관에서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6. 검진기관(※ 1,4학년 학생건강검진(구강검진)을 위해 본교와 계약된 기관임)

검진 기관명	기관 1		기관 2	
	위치			
연락처				
검진가능 시간				
참고				

2024. 4. .

○○ 초 등 학 교 장

6. 1·4 학년 학생건강검진 2차 검진 안내

1·4 학년 학생건강검진 2차 검진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1·4 학년 학생건강검진이 보호자님의 협조 덕분에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자녀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가 검진 병원에 의해 각 가정으로 송부되었으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을 줄 압니다.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까운 시일에 병원을 찾아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차 검진 및 치료는 **자비 부담**이며, 검진 결과는 아래의 회신란에 기재하여 월 일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검진결과	판정기준
종합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 :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질환의심 또는 정밀검진(2차검진)이 필요한 자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 2차 검진 또는 가정 내 실천사항 안내

□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검진결과	판정기준
종합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 : 구강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자 ■ 구강검진결과 정밀검진(2차검진) 및 치료가 필요한 자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 2차 검진 또는 정기 내원 안내

※ 건강검진결과서의 종합소견은 개인별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정상소견이 아닐 경우 반드시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초 등 학 교 장

절 취 선

2차 검진 결과 회신

학년 반 이름 보호자명 (서명)

2차 검사 소견서	
검진 결과	
치료 및 관리방안	
검진 의료기관명	

○○ 초 등 학 교 장 귀 하

7. 2·3·5·6학년 신체 발달 검사 결과 안내

2·3·5·6학년 신체 발달 검사 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 실시한 2·3·5·6학년 대상 학생 신체 발달 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는 귀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어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년 반 번 이름 :

신체발달검사 결과				귀 자녀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사항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	
cm	kg	%	저체중 <input type="checkbox"/>	▶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 정상체중관리가 필요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과체중 <input type="checkbox"/>	
			비만 <input type="checkbox"/>	

※ 비만도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함

♣ **비만**은 신체 내 지방함량이 높아 발생하며 대부분 고지혈증·동맥경화증·당뇨병·지방간·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성인병)**으로 이어지고, 아동의 성격형성·학습태도·사회생활태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체중이면 저항력이 약해져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잘 걸리며, 영양부족으로 키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 골절이 되기 쉬우며, 빈혈이 생겨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체중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자녀의 식습관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적 지도 부탁드립니다.

♣ **성조숙증**은 여아 만8세 이전, 남아 만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1년에 8cm 이상 키가 자라고, 두피에서 냄새가 나고 유방 안쪽에 몽우리가 잡히며, 생식기 주변에 털이 자라고, 여드름이 나거나 음경이 4cm 이상 커지는 등 2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병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20 년 월 일

○○ 초 등 학 교 장

8. 2·3·5·6학년 구강검진 결과 안내

2·3·5·6학년 구강검진 결과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 지난 5월 10일(수) 선치과, 17일(수) 나비치과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2·3·5·6학년 학생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드리니 귀댁의 자녀에게 우식(충치) 치아나 부정교합 및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있는 경우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시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치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월 일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로 전 생애에 걸쳐 치아 건강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년 반 번 이름 :

우식치아	우식발생 위험치아	부정 교합	구강 위생 상태	그 밖의 치아 상태
(개)	(개)	정상, 요교정, 교정중	양호, 개선요망	

♥ 치아 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

1.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꼭 이를 닦아요. (하루 4번 이상)
2. 이를 닦을 때는 올바른 잇솔질 방법으로 깨끗이 닦아요.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3. 나에게 맞는 칫솔과 치약을 사용해요.
4. 단 음식을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요.
5. 불소양치를 하여 충치를 예방해요.
6. 이쑤시개 사용, 병마개 따기 등 치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요.
7.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구강 검사를 받아요.
8.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요.
9.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치아에 불소를 발라줘요.
10. 평소 입 안을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지녀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 년 월 일

○○ 초 등 학 교 장

----- 절 취 신 -----

치과 치료 결과 회신문

학년 반 번 이름 :

치료 일시	치료 결과(검진소견)	치료 기관명
2024년 월 일		(인)

○○ 초 등 학 교 장 귀 하

9. 2·3·5·6학년 구강검진 미실시자 검진 안내

2·3·5·6학년 구강검진 미실시자 검진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 2024년 5월 일(수)과 일(수) 2·3·5·6학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나 귀 자녀의 결석 또는 체험학습 등으로 검진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래의 구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고, 월 일까지 확인서를 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학생 구강검진을 예약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검진 기관	전화번호	검진 학년

※ 보호자와 함께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진 비용 무료)

♥ 치아 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

1.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꼭 이를 닦아요. (하루 4번 이상)
2. 이를 닦을 때는 올바른 잇솔질 방법으로 깨끗이 닦아요.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3. 나에게 맞는 칫솔과 치약을 사용해요.
4. 단 음식을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요.
5. 불소양치를 하여 충치를 예방해요.
6. 이쑤시개 사용, 병마개 따기 등 치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요.
7.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구강 검사를 받아요.
8.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요.
9.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치아에 불소를 발라줘요.
10. 평소 입 안을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지녀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 년 월 일

○○ 초 등 학 교 장

----- 절 취 선 -----

학생 구강검진 결과 확인서

학년 반 번 이름 :

우식치아			우식발생 위험 치아			결손치아 (영구치만)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 교합	구강 위생 상태	그 밖의 치아 상태	건치 학생
유,무	개수		유,무	개수		유,무	개수		유	무				
	상	하		상	하		상	하						

구강검진일 : 2023년 월 일

구강검진 기관 : (인)

10. 소변검사 이상 소견자 재검사 안내

소변검사 이상 소견자 재검사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5.24.(수)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 귀 자녀에게 이상소견이 보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변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상소견이 보이는 경우 전문의 진료 및 추가 검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아래 회신문에 기재하여 월 일 까지 보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 및 검진비는 본인 부담이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재검진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 소변 검사 결과가 정상인 학생은 결과통지서를 따로 배부하지 않습니다.
(정상소견 : 당, 단백, 잠혈 등 미검출)

소변 검사 결과

학년 반 번 이름 :

구분	±	1+	2+	3+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의심되는 질환명
당					당뇨병
단백					신장 질환
잠혈					방광, 요관, 신장 이상
간기능					황달, 간염, 기타 간기능 장애

20 년 월 일

○○초등학교장

절취선

소변검사 병의원 검사 결과 회신문

학년 반 번 이름 :

검진 일시	재검사 결과(검진소견)	검진 기관명
20 년 월 일		(인)

○○초등학교장귀하

마약류 · 흡연 · 음주 포함 약물 오 · 남용 예방 계획

목 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예방교육 운영 강화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교육으로 다면적 학생 지도 활성화
- 마약류 · 흡연 · 음주 포함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형성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방 침(현황)

-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용 증가 및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 과다 · 중복처방 문제가 심각해 집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예방교육 강화
-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체계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6]에 의함.
- 현재 흡연 · 음주율을 토대로 예방교육 및 금연 · 절주 홍보를 위한 교과 간 협조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근 거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세부 추진 계획

- 연간운영계획

추진 내용	시 기	대 상	비 고
실태파악을 통한 환경조성	연중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 금연환경 조성(절대금연구역 표지 및 스티커 등), 예방교육 자료 게시 등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환경 점검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 철저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학년별 마약, 흡연, 음주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연중	전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교과, 창체시간에 운영 • 외부강사 활용 가능(유관기관 협조) • 학년별 10시간 운영
교직원, 학부모 예방교육	연중	교직원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방면 계획(연수, 가정통신, 홈페이지 활용, 교육과정설명회 등)

추진 내용	시 기	대 상	비 고
마약, 흡연, 음주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특별주간 운영	5월5주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행사, 홍보, 캠페인, 전시회 등 • 학생주도 캠페인, 방송 등 다양한 행사 • 세계금연의 날(5.31) 홍보
흡연예방 및 금연 동아리 운영	연중	동아리 전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를 위한 또래리더십 향상 • 금연교육(특별교육)
결과 및 평가	2학기말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자체 평가 •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재구상

○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 health.kr)을 통해 공유된 교육자료 적극 활용 (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게시)
- 교직원 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개설 온라인 연수과정에 적극 참여

○ 학년별 예방교육 세부주제(예시:초등학교)

2학년	시 기	교과	단원	학습내용	담당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4월	자율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외부강사
	6월 5주	바생	2. 초록이의 여름 여행	여름철 조심할 동물들, 나들이에 필요한 것들 알아보기	관련교과
	10월 4주	바생	2. 가을아 어디 있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 알아보기 -1-	관련교과
	3월 2주	바생	1. 알쏭달쏭 나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실천하기	관련교과
	3월 4주	바생	1. 알쏭달쏭 나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법 알아보고 실천 계획표 만들기	관련교과
	3월 4주	자율	자치활동	학급회의하기1	관련교과
	4월 5주	바생	2. 봄이 오면	봄맞이 청소와 봄철 건강과의 관계 알아보기	관련교과
	4월 5주	바생	2. 봄이 오면	봄철 건강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관련교과
	11월 5주	자율	보건 교육	담배의 유해 성분 알아보기	
	12월 2주	자율	마약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올바른 약물 사용법)	담임

1학년	시기	교과	단원	학습내용	담당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창체	입학 초기 적응활동	청결하게 생활하기 - 몸을 깨끗이, 물건을 제자리에	관련교과
		창체	입학 초기 적응활동	내 물건과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물건 알아보고 정리하기	관련교과
		창체	입학 초기 적응활동	올바르게 양치하는 방법 알아보기	관련교과
		창체	입학 초기 적응활동	병에 걸리지 않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기	관련교과
		창체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외부강사
		창체	마약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올바른 약물사용법)	담임
		바생	1. 내 이웃 이야기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를 바르게 사용하기	관련교과
		즐생	2. 현규의 추석	'추석날' 노래 부르고 고향가기 놀이하기	관련교과
		바생	2. 현규의 추석	맛있는 먹을거리를 준 가을에게 감사하기	관련교과
		슬생	1. 여기는 우리나라	우리 음식 살펴보고 우리 음식 상차리기	관련교과

3학년	시기	교과	단원	학습내용	담당
오·남용예방에 방교육		체육	5-1.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	집 주변과 집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아보기	관련교과
		체육	5-1.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아보기 -1-	관련교과
		체육	5-1.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아보기 -2-	관련교과
		체육	5-1.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대처 방법 알아보기	관련교과
		체육	5-1.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대처 방법 알아보기	관련교과
		체육	1-1.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요	'건강과 체력'의 의미와 가치 알아보기	관련교과
		체육	1-1.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요	건강한 생활 습관 알아보기	관련교과
		창체	흡연예방교육 및 마약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외부강사
		체육	1-1.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요	깨끗한 생활 습관 알아보기	관련교과
			약물오남용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외부강사

4학년	시기	교과	단원	학습내용	담당	
약물 오남용예방 교육		창체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외부강사	
		자율	정보통신교육	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 방법 알아보기	관련교과	
		국어	8. 이런 제안 어때요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기 -1-	관련교과	
		국어	8. 이런 제안 어때요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기 -2-	관련교과	
		미술	9.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기 -3-	관련교과	
		국어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의견이 드러나게 글쓰기1	관련교과	
		국어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의견이 드러나게 글쓰기2	관련교과	
		국어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의견이 드러나게 글쓰기3	관련교과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사회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 알기	관련교과	
			약물오남용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외부강사	
5학년	시기	교과	단원	학습내용	담당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도덕	1. 바르고 떳떳하게	일상생활에서 정직한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 기르기	관련교과	
		체육	1. 신나는 프로젝트 학습	건강 관리 계획 만들기 -1-	관련교과	
		체육	1. 신나는 프로젝트 학습	건강 관리 계획 만들기 -2-	관련교과	
		도덕	2. 내 안의 소중한 친구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고 바르게 조절하기	관련교과	
		체육	1-1. 소중한 나의 몸	약물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관련교과	
		체육	1. 마무리해요	건강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 확인하기	관련교과	
				약물오남용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외부강사
		자율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기	관련교과	
		도덕	2. 내 안의 소중한 친구	감정과 욕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알아보기	관련교과	
		창체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외부강사	

6학년	시기	교과	단원	학습내용	담당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과	1-1. 나와 가족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알아보기	관련교과
		창체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외부강사
			약물오남용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외부강사
		국어	6 내용을 추론해요	알리고 싶은 내용을 영상 광고로 만들기 -1-	관련교과
		국어	6 내용을 추론해요	알리고 싶은 내용을 영상 광고로 만들기 -2-	관련교과
		실과	3-3. 안전한 식생활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하기 -1-	관련교과
		실과	3-3. 안전한 식생활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하기 -2-	관련교과
		실과	3-3. 안전한 식생활	안전한 식생활 실천하기 -1-	관련교과
		체육	1. 마무리해요	건강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 확인하기	관련교과
		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건강 캠페인 교실을 열어 볼까요	관련교과

○ 학년별 예방교육 세부주제(예시:중등)

학년	차시	영역	관련교과	주제 및 학습내용	비고
1학년	1	약물오남용 예방	보건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약물오남용의 이해	
	2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안전/경쟁(음주와 건강)	
	3	약물오남용 예방	보건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	
	4	약물오남용 예방	국어	4. 성장으로가는 길 (1) 문학작품을 통한 삶의 성찰	
	5	약물오남용 예방	기술·가정	I. 청소년의 이해 - 건강한 친구 관계	
	6	약물오남용 예방	음악1	5. 흥겨운 우리 음악 - 음악과 사회의 만남	
	7	흡연 예방	자율	흡연예방부스	
	8	흡연예방	보건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흡연예방과 대처	
	9	흡연 예방	미술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 다양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이용한 표현	
	10	마약류 예방교육	외부강사	II-1.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 마약류의 이해	
2학년	1	약물오남용 예방	영어	3. Ideas for Saving the Earth 올바른 거절방법	
	2~4	약물오남용 예방	기술가정	II. 가정생활과 안전	3차시
	5~6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표현 / 안전	3차시
	7	흡연예방	과학	I. 물질의 구성	
	8	흡연예방	미술	시각 문화로 소통하기 - 생활 속에서 시각 문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	
	9	흡연예방	자율	- 흡연예방부스	
	10	마약류 예방교육	외부강사	- 중독예방 교육	

3학년	1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건강	
	2	약물오남용 예방	체육	경쟁	
	3	약물오남용 예방	음악	대상의 특징을 살려 - 정물, 풍경, 인물 등 다양한 대상의 특징을 살려 표현	2차시
	4	약물오남용예방	과학	자극과 반응 -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5	약물오남용예방	국어	4. 함께 살아가는 우리	
	6	약물오남용예방	영어	6. Stories for All time	
	7	흡연예방	국어	1. 문제를 해결하는 힘	
	9	흡연예방	자율	- 흡연예방부스	
	10	마약류 예방교육	외부강사	- 중독예방 교육	

기대효과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교육 운영으로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 확립
- 다면적 학생지도 활성화로 학생들의 예방의식 고취
-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

별첨 [참고자료]

- 가정통신문, 관리양식, 교직원 연수자료 등

I 흡연 예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야 하고, 동 규칙에 의한 금연구역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흡연이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

“폐암 환자 살펴보니 직접 흡연자 70%-간접 흡연는 11%대”

... (중략)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오 주임과장은 "흡연으로 인해 수많은 질병과 사망이 발생함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 정도로 높다.

흡연은 여러 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폐암이다. 기존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의 흡연율이 70% 정도였으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문진 등의 방법을 사용한 이번 연구에서는 81.3%가 흡연과 연관성을 보였고, 젊은 층에서 흡연자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더욱 금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전체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61&sc_word=%ED%9D%A1%EC%97%B0&sc_word2=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3차 흡연을 아시나요?

1차 흡연자

주류연 20%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 주류연은 필터를 통과하면서 일부 화학물질과 타르가 걸러짐

! 발생 가능한 질병

- 백내장
- 폐암
- 심장병

2차 부류연

80%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 부류연은 주류연보다 타르 (3.5배), 니코틴 (3배), 일산화탄소(5배) 및 발암물질의 함유량이 많음

연기를 마시는 사람

! 발생 가능한 질병

- 폐암 위험 20~30% 증가
- 유아의 경우 중이염, 호흡기증상
- 관상동맥 심질환 위험 25~30% 증가

☞ 몸, 옷, 가구, 집먼지 등을 통해 전달

담배부산물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물질 생성
- 유아태아에 피해 집중

3차 전달받는 주변인

니코틴과 집먼지가 결합하면?

독성물질이 21일이 지난 후에도 40%나 남아있음

출처: 미국환경보건국

! 발생 가능한 질병

-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니코틴 중독 등

2. 전자담배의 위험성

- 1) 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 담배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가열하여 피우는 원리 ex)릴, 아이코스
- 2) 액상형 전자담배 :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 및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 되고 있습니다. (19.10.15. 기준)

중증 폐 질환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

*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접수 1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 중

지금까지 확인된 중증 폐손상 사례의 공통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 이상 증상	소화기 이상 증상	기타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스꺼움 구토 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의 대다수가 **대마 성분(THC)*** 및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니코틴만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마 성분 (THC) 니코틴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현재, 미국 정부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사용 자제 권고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

오해 1위.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다?

-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해 2위.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다?

-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외에도 다양한 1급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이 검출
-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됨.
- 제도화되지 않은 액상 제조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액체를 기화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성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 담배보다 유해할 수 있음.

오해 3위. 전자담배(니코틴 함유)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전자식 흡연 욕구저해제(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은 아직 담배로 분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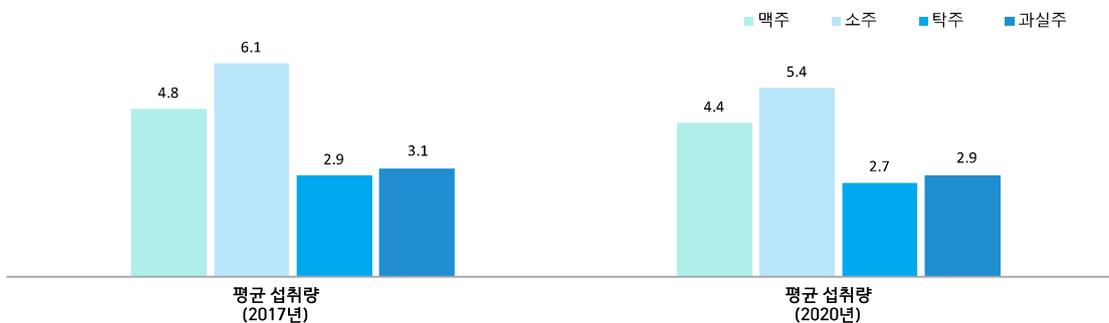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음주량 줄고 ‘혼술, 홈술’ 늘어 식약처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1.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변한 우리나라의 음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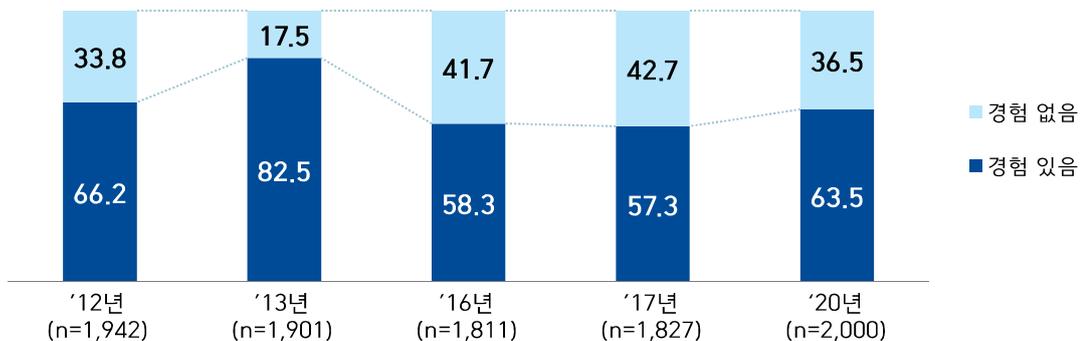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우리 국민의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 평균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감소했지만 ‘혼술(혼자 마시는 술)’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증가하는 등 음주 문화가 달라졌다고 밝히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고려하여 건전한 음주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최근 6개월 이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회 평균 섭취량 비교(단위: 잔)



□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



※ 고위험 음주량은 순수 알코올 양으로 남자 60g, 여자 40g이상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

□ WHO 제시 1일 알코올 섭취량 기준

구분	알코올 섭취량 기준(g)		소주(17도) 기준(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저 위험군(저위험 섭취량)	1~40	1~20	0.1~5.9	0.1~2.9
중간 위험군	41~60	21~40	6.0~8.8	3.1~5.9
고 위험군	61~100	41~60	9.0~14.7	6.0~8.8
매우 위험군	101+	61+	14.9+	9.0+

2. 건강한 음주 습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눈에 쓱 들어오는 술래잡기 인포그래픽

건강한 음주를 위한 주류섭취 습관

여러분은 건강한 음주문화를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한 건강한 음주 실천 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법

- 1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선택한다**


- 2 식사를 먼저 한 후 술을 마신다**


- 3 술을 마실 때 물 등을 자주 마신다**


- 4 본인의 주량을 알고 술을 마신다**


- 5 지나친 음주를 자제한다**


- 6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는다**



3. 음주와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중불법 마약류

최근 본인이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흡입하고 또래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기도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청소년 관련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중불법 마약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h3>마약류란?</h3> <p>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물질 (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불법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p>	<h3>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h3>
<h3>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p>뇌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와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손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대뇌 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 수 있다.</p>
<h3>약물(필로폰)을 사용하여 변한 얼굴</h3> <p>미국 버지니아주 타즈웰군에 거주 40대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으나 1998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갈색머리는 하얗게 세어 버렸고 얼굴은 70대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졌다.</p>	 <p>코와귀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주위가 자주 헐고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과 관련하여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p>
 <p>1998 2002 필로폰 두약후</p>	 <p>입 흡연은 이를 누렇게 하고,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진다.</p>
<h3>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h3> <p>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지로), 온라인송금 계좌번호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계좌번호 : 기업은행 327-001666-04-029</p>	 <p>심장 흡입제는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사망에 할 수도 있다. 필로폰은 다양한 심혈관문제를 야기하는데,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이 높아지고, 과도한 투여를 한다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심장이나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p>
<p>www.drugfree.or.kr Tel. 02-2677-2245 Fax. 02-2677-2247 중독재활센터 02-2679-0437</p>	 <p>폐 타르는 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남용자는 흡입할 때 유독가스가 폐의 산소를 대체하여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p>
	 <p>간 스테로이드 사용은 간의 종양이나 피가 찬 낭종을 일으킬 수 있다. 종양이나 낭종은 내부혈류를 일으켜서 간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p>
	 <p>신장 흡입제는 신장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질환에 원인을 제공한다. 엑스터시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며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p>
	 <p>피부 흡입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 농양이 온다.</p>
	 <p>뼈 흡입제는 뼈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여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핍현상이 생겨,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p>

2.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면접상담, 편지/PC상담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국 상담 대표전화는 1899-0893입니다.

* 상담, 재활문의 바로가기 ☞ <http://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4>

3. 항생제 내성 예방

2020.11.16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예방,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알아보기

1/6

2020.11.16 질병관리청

“
항생제는 우리 세균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
”

하지만,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가 생긴 사실 알고 계시나요?

2/6

2020.11.16 질병관리청

2050년이 되면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전 세계에서 1년 기준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정부 발표 Jim O'Neill 보고서)

OECD평균과 한국 항생제 사용량 비교

연도	OECD	한국
2014년	19.9	31.7
2018년	18.6	29.8

출처 : OECD Health Statistics 2020

3/6

2020.11.16 질병관리청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50년에는 무려 3초에 한명씩 사망!

그 말인 즉, 앞으로 죽는 사람 수보다 슈퍼박테리아로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영국정부 발표 Jim O'Neill 보고서)

그렇다면 이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6

2020.11.16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 1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한다.
- 2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처방받은 대로 방법,기간을 지켜 복용한다.
- 4 감염예방수칙 준수 (손씻기, 예방접종 등)

5/6

2020.11.16 질병관리청

11월 3주는 WHO에서 지정한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이제는 우리 모두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6/6

<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붙임 4] 관련 법령

1.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2016. 2. 3., 2021. 3. 2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5. 1. 20.>

2.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1.>

1. 성폭력 예방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2. 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본조신설 2007. 12. 14.][제목개정 2013. 12. 30.]

총괄	김 종 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감수	엄 길 훈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지도	김 종 화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장학관
기획	양 선 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장학사
검토(집필)위원	김 상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주무관
	양 점 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교사
	김 진 희	광주산수초등학교	교사
	안 영 순	광주효동초등학교	교사
	김 선 옥	무학초등학교	교사
	최 춘 화	매곡초등학교	교사
	서 경 미	문산초등학교	교사
	배 현 정	송정서초등학교	교사
	정 은 주	화개초등학교	교사
	임 복 임	송정중앙초등학교	교사
	이 정 아	광주서석초등학교	교사
	김 은 경	서일초등학교	교사
	김 성 미	일곡중학교	교사
	조 수 지	봉산중학교	교사
	김 건 효	주월중학교	교사
	임 규 리	천곡중학교	교사
	서 희 선	치평중학교	교사
	김 수 경	각화중학교	교사
	조 나 은	문정여자고등학교	교사
	고 유 정	성덕고등학교	교사
	기 유 진	장덕고등학교	교사
	고 경 랑	광주과학고등학교	교사
	김 은 영	광주고등학교	교사
	지 의 정	상무고등학교	교사
	정 주 희	수완고등학교	교사

본 자료의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http://www.gen.go.kr>) ⇨ 자료마당 ⇨
체육예술인성교육과 ⇨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